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보고서 2026-04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이재협 · 우지숙 · 공두현 · 김지희

김우석 · 김수지 · 전시연 · 박규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보고서 2026-04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이재협 · 우지숙 · 공두현 · 김지희

김우석 · 김수지 · 전시연 · 박규리

제 출 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귀하

본 연구보고서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 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기부한 연구기금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26. 6.

연구책임자 :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원 : 김지희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김우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시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규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제도의 현황과 관련 쟁점

1. 개관

- ▷ 응시기회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변호사시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존재.
 -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는 장기수험생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고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응시횟수를 제한할 것을 건의함(2005년 발간 백서 참조).
- ▷ 법무부는 2008년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공고하면서 로스쿨 수료 후 ‘5년 이내 3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추가적 논의 후 ‘5년 이내 5회’로 내용이 완화된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됨.
- ▷ 법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로스쿨 수료 후 ‘5년 이내 5회’의 제한방식과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제도적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2. 쟁점

(1) 제도의 정당성 논쟁 일반

- ▷ 장기수험생 양산과 국가인력 낭비의 방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의 안정적 운영 및 적정한 법조인 수급 유지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시기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현행 제도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응시제한자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제도설계의 결함 및 한계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새로운 사회적 비용과 낙인을 초래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함.

(2)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 ▷ 응시기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지에서도 그 내용 및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층위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바, 법제정 당시 국회 내부에서는 5년이라는 응시기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3) 예외사유의 적절성

- ▷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유일한 응시기한 산입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법조계 내부 및 국가기관(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음.

3.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 ▷ 헌법재판소는 응시기회제한조항(법 제7조 제1항)과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법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동 예외조항의 합헌성에 대하여는 재판관 일부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 특히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결정에서는 재판관 다수(9인 중 5인)가 동 예외조항이 임신·출산을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명함.
 - 이와 같은 반대의견은 입법단계에서 사회적 숙의가 부족했음을 반영하며 근시일 이내에 헌법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4. 입법적 논의

- ▷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응시기회 제한을 규정하는) 법 제7조에 대한 총 9건의 개정안(7건 폐기, 2건 계류 중)이 발의되었는바, 예외사유의 포섭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예외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도 세밀해지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그 내용과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5. 주요국과의 제도 비교

(1) 미국

- ▷ 2026년 1월 버몬트(Vermont)주가 응시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현재 응시기한을 제한하는 관할권역은 없는 상태.
- ▷ 1970년대 중반에는 약 3분의 2의 주(州)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과반 이상(64%)의 관할권역이 응시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바,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규율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 ▷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관할권역 중에서도 3분의 2는 추가적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추가적 기회 부여에 관대한 태도를 보임.

(2) 일본

- ▷ 2004년 로스쿨을 출범하면서 이에 연계된 新 사법시험을 도입하였는바 초기에는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3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였으나 우수 인재의 법조계 진출 기피 방지 등을 이유로 2014년 횟수 제한을 폐지함.
- ▷ 2011년 도입된 예비시험의 합격자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므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사법시험에 응시가능함.
- ▷ 응시기한이 도과하더라도 다른 자격요건을 재취득함으로써 재응시가 가능하므로 한국과 같이 응시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6. 응시제한자에 대한 선행연구

- ▷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응시제한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경험적 연구는 부재함.
- ▷ 해외의 선행연구 중 미국 변호사시험 탈락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졸업 직후의 취업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안정성, 혼인, 가정생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불이익을 초래했음.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소가 최종합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응시제한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유용한 준거로 참고 가능.

7. 소결: 평가 및 제언

- ▷ 응시제한제도는 장기수험생 문제의 방지, 법조인 수급관리와 같은 정책목표가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개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불이익과 생애경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사정에 대한 숙의가 미흡한 상태로 제도화된 채 유지되어 왔음.
- ▷ 입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제도의 현실적 효과를 응시제한자들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고 응시제한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해왔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입법 당시의 숙의 부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응시제한자 설문조사 결과

1. 연구의 개요

-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203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통제집단) 1,248명 등 총 1,4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응시 제한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 응시제한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법학전문석사학위와 그동안 축적한 법학 전문 지식이 그들의 경력 형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설문 개요]

- 조사대상: 1기 졸업생(2012년 졸업)부터 14기 졸업생(2025년 졸업)
- 조사기간: 2026년 2월 10일 ~ 2026년 4월 15일
- 문항 수: 총 167개
- 조사방식: 설문 링크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생들에게 보내 응답 확보

2.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뚜렷한 경제적 격차 대비 미세한 역량 차이

- ▷ 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응시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뚜렷한 요인으로 나타남.
- ▷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에는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에서 1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했으며, 응시제한자 집단이 학비 대출 경험 비율과 졸업 시점의 대출 잔액 모두 훨씬 더 높게 나타나, 경제적 기반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
- ▷ 반면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집단 간 학부 평균 학점 차이는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0.09점에 불과. LEET 표준점수 차이도 약 5점 정도로 개인적 역량 차이는 작았음.
※ 응시제한자의 77.9%가 학점 3.5 이상, 79.8%가 LEET 100~130점에 분포하는 최상위 인재

(2) 근로 및 돌봄 활동과 제도적 안전망 미비

- ▷ 응시제한자는 시험 직전 6개월간 경제적 사유로 근로한 비율이 29.1%로 통제집단(5.1%)의 6배에 달했으며, 이 중 91.6%가 학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함. 또한 등하

교, 유급 근로, 동거 가족 돌봄 시간(응시제한자는 기혼 및 자녀 유무 비율 높음)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업 몰입에 어려움을 겪음.

- ▷ 장학금 제도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경제적 형편에 근거한 장학금 수령 비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합격자 집단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대거 수령함에 따라 전체 장학금 수혜율(합격자 73.0% vs 응시제한자 58.6%)에서 큰 격차가 발생함. 제도의 안전망이 취약 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경제적·학업적 압박으로 인해 응시제한자의 휴학 경험 비율(24.6%)은 통제집단(8.3%)을 크게 상회함. 결과적으로 평균 1학기 정도 수학 기간이 더 소요되었고, 졸업 학점 역시 약 0.5점 낮게 나타남.

(3) 학교 생활에서의 고립과 인적 상호작용의 한계

- ▷ 응시제한자는 교수와의 면담 빈도는 높았으나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함. 이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주로 의무적 접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임.
- ▷ 통제집단에 비해 면담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제한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교수를 무관심하고, 도움이 안 되며, 만남이나 연락이 어려운 존재로 인식.
- ▷ 학우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응시제한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협력보다는 경쟁적이고 친근하지 않은 관계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행정직원 역시 도움이 되지 않고, 배려심이 없으며, 융통성이 없다고 느낌.

(4) 추가 교육비 부담

- ▷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 강의 수강률은 응시제한자(97.0%)와 통제집단(89.8%)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응시제한자의 학원 현장 강의 수강률(35.7%)은 통제집단(17.6%)의 2배에 달해 추가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 동안의 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가중.

(5) 졸업 후 취업 실태와 경제적 격차

- ▷ 응시제한자의 상근직/정규직 비율은 50.2%로 통제집단(77.2%)에 비해 현저히 낮고, 미취업/구직 중 비율이 24.1%에 달함.
- ▷ 취업을 했다고 해도 응시제한 취업자 중 34.2%는 법학과 무관한 직무를 수행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 응시제한자는 구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음. 높은 연령, 불합격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리적 위축 등이 주요 구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첫 취업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비율이 23.1%에 달함.
- ▷ 반면 소득 수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인 개인 발전 가능성, 승진, 임금 등 모든 세부적인 직무 만족도에서 통제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6) 진학 동기의 차이

- ▷ 응시제한자와 통제집단 간 차이는 학업 역량보다는 진학 동기에서 발견됨.
- ▷ 직업적 명예, 높은 연봉, 취업 전망, 주변의 권유, 공부에 대한 자신감 등 세속적·개인적 동기에서는 응시제한자와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반면,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라는 두 가지 동기에서는 응시제한자 집단이 합격자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 ▷ 이는 응시제한자들이 단순히 역량이 부족한 낙오자가 아니라, 공익적·학문적 가치 지향이 뚜렷한 ‘다른 종류의 인재’일 수 있음을 시사함.

(7)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의견

- ▷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영구 박탈이 초래한 삶의 격차는 응시제한자들의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강력한 폐지 의견으로 이어짐.
- ▷ 응시제한자의 88.2%가 ‘5년 내 5회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체 응시제한자 중 71.9%는 응시제한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
- ▷ 만약 응시제한이 풀린다면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시제한자의 71.9%가 재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조인을 향한 열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3. 정책적 함의

(1) 국가적 인적 자원 낭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우수한 역량을 검증받고 입학한 인재들이 거액의 부채를 안은 채 전공과 무관한 저소득 직무로 밀려나는 현 구조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임.
- ▷ 법학 교육의 본질을 단순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와 교육과정 정상화가 시급함.

(2)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 현재의 로스쿨 교육은 암기와 분석 등 ‘AI가 대체하기 쉬운 지식’에 편중되어 있음. 미래 Agentic AI 시대의 핵심 생존 무기인 공감, 소통, 공익적 기여 등의 가치를 기를 수 있는 내적 성장과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고등교육의 목표와 내용, 새로운 인재상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대학들은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함.

응시제한자 면접 결과

1. 연구의 개요

- ▷ 실제 응시제한자 3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제도 작동 실태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포착함.
- ▷ 매년 구조적으로 200여명씩 발생하는 응시제한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2. 면접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와 배경

- ▷ 응시제한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 경로는 사법시험·행정고시·언론고시 등 타 시험 준비, 직장생활, 취업 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각자의 이전 경력과 진로 전망 속에서 선택되었음.
- ▷ 기초생활수급, 채무 부담, 가족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응답자들에게는 장학금과 특별전형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하였음.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경험

- ▷ 응시제한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실제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에 종속되어 운영되었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음.
- ▷ 많은 응시제한자들이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학비·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적지 않은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 또한 성적 중심의 경쟁 구조가 동료 관계의 긴장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함.
- ▷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함.

(3) 변호사시험 준비 및 응시의 경험

- ▷ 응시제한자들은 초기 기수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대부분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
- ▷ 불합격 이후 학교에 다시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교육 비용, 공부 장소의 이동, n수생의 고립과 피드백 부족이 수험 지속을 어렵게 하였음.
- ▷ 수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근로가 늘어나 공부 시간과 학습의 연속성이 훼손되었고, 출산·육아, 자녀와 부모의 돌봄, 질병과 사고, 심리적 압박 등으로 특정 회차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나타났음.

(4) 변호사시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 ▷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 ▷ 상대평가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탈락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탈락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자격시험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나 합격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기능이 변호사 수의 통제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응시횟수 제한과 응시기간 제한을 결합한 방식이 질병·임신·출산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지닌다는 비판이 많았음.

(5)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의 심리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

- ▷ 응답자들은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우울감, 불안 등을 경험했으며, 심각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험도 있음. 하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 직후 좌절감에 빠져있기보다는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도 나타남.

- ▷ 인간관계 측면에서 볼 때 시험 불합격이 반복될수록 로스쿨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합격한 동기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반면, 불합격자는 이들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연락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소수의 친구들과 약한 연결 수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6)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경험

- ▷ 응답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최소 3~4년의 로스쿨 과정과 약 5년에 가까운 수험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나이가 최소한 3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채용 시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응답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채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며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7) 직장 생활 경험

- ▷ 직장이 있는 응시제한자들은 사기업의 법무팀 직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 직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으로 직업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음.
- ▷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직업적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이 많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학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경력의 불안정성과 승진 및 소득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8) 대안 경로 및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 ▷ 응답자 중 상당수는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다만 응시제한으로 인한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발전적인 장래의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9) 응시제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 ▷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매년 일정 수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
- ▷ 응시제한 제도가 5년의 응시기간 동안 오로지 수험생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다른 경로 탐색의 기회를 차단하는 봉쇄효과를 가진다는 점, 응시제한자에 대해 가해지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쉽지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

3.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 방안

(1)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

-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변호사시험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인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응시자 전체의 역량이 향상되더라도 매년 200여 명의 응시제한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 변호사시험 제도의 영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고,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유일한 목표로 두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자들은 5년의 응시기간 동안 수험생으로 살면서 일종의 유예된 삶을 살게 되고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거나 계속 수험생으로 사는 기간을 갖게 됨.
- ▷ 출산, 사고, 질병, 경제적 사유 등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횡수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존재.
- ▷ 응시제한자들은 응시기간이 그대로 경력의 공백으로 남겨져 새로운 진로의 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응시제한자’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낙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

(2) 개선 방안의 모색

-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학생들의 진로, 변호사시험 탈락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제도와 응시제한 제도의 변화 필요.

▷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아래와 같음.

① 응시제한 제도 전면 폐지

② 응시기간 제한의 폐지

(예시) 응시 횟수 제한은 남기되 5년 기간 제한을 폐지

③ 응시제한자 재교육 후 응시기회 부여

(예시) 응시제한이 된 경우, 1년 재교육 후 다시 2회 응시기회 부여

④ 임신·출산 등 예외 사유의 확대

(예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추가

▷ 예외사유 추가 방식의 경우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입법기술적으로 모든 예외적 상황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어떤 사유를 추가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형평성 있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예외 조항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어 보임.

▷ 응시기간 제한 폐지는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방안이었음. 응시 횟수(5회)는 유지하되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우선 폐지함으로써, 출산·육아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후 수험을 재개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스로 선택하여 수험을 유예할 수 있어 사회적 낙인 효과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응시횟수나 응시기간을 5회 초과, 5년 초과로 연장하는 방안은 응답자들로부터 제시되지 않았음.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

1. 연구의 개요

- ▷ 로펌, 사기업, 금융기관, 정부, 공공기관, IT 벤처 분야의 법률수요자 13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응시제한자 취업 실태와 생생한 직업현장의 목소리를 포착함.
- ▷ 응시제한자를 비롯한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JD)의 사회진출과 법률수요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 미국의 JD Advantage와 같은 취업의 기회가 국내에서도 가능할지를 가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비법률가 JD의 경력 경로를 수립할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미국의 JD Advantage

- ▷ 미국에서는 JD 학위는 있지만 변호사시험을 보지 않거나, 합격하더라도 전통적인 법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률지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JD Advantage'라고 칭하고 매년 이에 대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통계를 집산함.
- ▷ 대표적으로 준법, 계약관리, 기업지배구조, 데이터 프라이버시, 대관업무,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규제업무 등이 이에 해당함.
- ▷ JD Advantage 직종의 상당수는 장기적이고 정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나타남.

3. 면접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응시제한자 채용 경험이 거의 없음

- ▷ 면접대상 기관 중 극소수만 응시제한자 채용 사례가 있었고 별도의 채용 계획도 없음
- ▷ 과거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진출하던 법조 이외의 경로가 법전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사라졌음.
- ▷ 법무 관련 직무가 점차 변호사 자격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비법률가 JD는 기업의 변호사 트랙에도, 일반직 트랙에도 잘 들어맞지 않게 됨. 특히 그러한 현상은 법률사무소와 대기업 법무팀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JD Disadvantage가 발생하고 있음.

(2) JD Disadvantage 발생 요인

- ▷ JD 학위는 MBA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고학력 학위임에도 변호사 자격과 결부되어야만 인정되고, 취업시장에서 그 자체의 고유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 ▷ 그 결과 법률수요자들이 비법률가 JD를 어떤 직무에 배치해야 하는지,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 채용을 회피함.
- ▷ 법전원에서도 JD 소지자의 ‘전이가능한 역량’(transferable skill)이 변호사 자격 밖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고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 비법률가 JD의 취업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됨.

(3) 일부 직역에서 JD Advantage 가능성 형성 중

- ▷ 법무실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응시제한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고, 소송 대리를 제외하면 법무,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등 법률유관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자 못지않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
- ▷ 이직률이 높은 사내 변호사 대신, 능력은 변호사에 준하면서 충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채용가능한 비법률가 JD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
- ▷ 특히 전통적으로 법학 학위가 있는 일반직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법전원 체제로 전환 후 법학부가 축소되어 법률지식이 있는 인력수급이 어려워졌다고 말함.
- ▷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자격증이 아닌 역량,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고 있고, 법제연구, 입법지원, 유권해석, 정책 리서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비법률가 JD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임.
- ▷ 따라서 국내에서도 JD Advantage가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소송비중이 낮고 사업지원형 업무가 많은 조직, ②비용 민감 조직, ③비법률가 JD 채용경험이 있는 조직, ④정부 및 공공기관(공채)에서 채용 가능성이 높음.

4. 시사점 및 제언

(1) JD Advantage 직역의 제도화

- ▷ 국내 JD Advantage 직군을 조사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직무명, 역량표, 채용모델을 제시함.
- ▷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JD 소지자를 적극 채용하는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채용공고와 같이 응시자격 요건에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선택하게 하는 등 응시제한자도 법전원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동일 직군에 지원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기업 및 공공부문에서 법무직 채용공고를 낼 때 ‘법과대학원 수료’만 요구할 뿐 사법시험의 합격 여부는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법전원 교육과 진로 지원의 방향 전환

- ▷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제의 방향은 비법률가 JD 인력을 단순히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과 법학교육의 가치를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경로와 제도적 연결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음.
- ▷ 법전원이 변호사만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적 사고와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재브랜딩되어야 함.
- ▷ 이를 위해 비법률가 JD 경력 경로, 비즈니스/정책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스킬, AI 시대에 필요한 공감 능력과 조정 능력을 법전원 교육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노력을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공공기관 채용담당자 및 사회 일반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노동 시장에서 JD 학위의 독자적 가치를 제고하여야 함.
 - 비법조 직군 취업통계와 취업 가이드 북 발간
 - 법전원협의회와 한국경제인협회, 인사혁신처와의 JD 졸업생 취업분야 확대 협력 (일본 법과대학원협회가 경제단체, 일본변협, 법무성, 문부과학성, 인사원 등과 함께 구성한 ‘법과대학원 수료자 취업분야 검토위원회’ 사례 참조)
- ▷ 법전원 교육의 성과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로만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진출에 성과를 보인 법전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위한 정책 제언

-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제한자 문제의 완화와 법전원 졸업생의 사회적 활용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법전원협의회가 시도할 정책 제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 본 연구는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의 적정성이나 법조인력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응시제한자의 경험과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 변호사시험 시행횟수 증대 등의 논의는 응시제한 제도 완화와 관련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직접 도출하기 어려움.
- ▷ 따라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법전원협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두 트랙(two track)으로 제시함.
 - 향후 법전원협의회는 ‘응시제한 제도의 완화(트랙 1)’와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의 경력 경로 구축(트랙 2)’를 상호 대체적인 선택지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함.

1. 트랙 1(응시제한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 ▷ 응시제한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아래와 같음.
 - ① 응시제한 제도 전면 폐지
 - ② 응시기간 제한의 폐지
(예시) 응시 횟수 제한은 남기되 5년 기간 제한을 폐지
 - ③ 응시제한자 재교육 후 응시기회 부여
(예시) 응시제한이 된 경우, 1년 재교육 후 다시 2회 응시기회 부여
 - ④ 임신·출산 등 예외 사유의 확대
(예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추가

-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응시제한 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응시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기회의 제한 방식이 응시제한자로 하여금 다른 경력과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다는 것임.
- ▷ 응시제한자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업 경로를 탐색하거나 경력을 형성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응시제한 제도의 설계 자체가 경력 형성과 시험 준비를 양립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 ▷ 따라서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 중 ‘②응시기간 제한의 폐지’와 ‘③응시제한자 재교육 후 응시 기회 부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②응시기간 제한의 폐지’ 안을 **최우선적으로 권고**하고, ‘③응시제한자 재교육 후 응시 기회 부여’는 이미 응시제한이 된 사람들에게 대한 현실적이고 보완적인 구제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
- ▷ ‘④예외 사유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①응시제한 제도 전면 폐지’는 사회적 합의 형성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검토 과제로 남김.
- ▷ 이와 별도로 응시기간 완화(예컨대 5년 기한을 10년 기한으로), 혹은 응시기간과 응시 횟수 완화(예컨대 10년 10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기간과 횟수의 설정은 경험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지 않음.

2. 트랙 2(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의 경력 경로 구축)

- ▷ 본 연구의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하는 정보와 제도적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 따라서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JD Advantage 직군을 조사·분석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직무명, 요구역량, 채용사례 및 경력발전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졸업자의 다양한 경력 경로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JD 학위의 독자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중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비법조 분야 취업통계의 정기적 조사 및 공표
 - 한국형 JD Advantage 취업 가이드북 발간
 - 기업·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대상 홍보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법전원 졸업자의 다양한 진로 사례 발굴 및 확산
- ▷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 문제가 단순히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고급 전문인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
- ▷ 이러한 노력은 비단 응시제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법전원 졸업생 전체의 다양한 경력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법학교육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변호사 시장의 구조적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Contents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2
(1)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력 형성	2
(2)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2
(3) 법학교육 및 제도의 개선 방향	2
3.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의의	3
4. 연구방법과 연구구성	4

제2장 한국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제도의 현황과 관련 쟁점

1. 개관	5
2. 쟁점	9
(1) 응시제한제도의 정당성 논쟁 일반	9
(2)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문제	10
(3) 예외사유 인정규정의 적절성 문제	12
3.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13
(1) 개관	13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응시기회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4
(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5
(4) 정리 및 평가	17
4. 입법적 논의	19

5. 주요국과의 제도비교	22
(1) 미국	22
(2) 일본	25
6. 응시제한자에 대한 선행연구	28
7. 소결: 평가 및 제언	32
(1) 정책목표의 편중적 우선화 및 사회적 숙의의 부족	32
(2)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33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연구 목적과 조사 방법	34
2.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과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태도	42
3. 직업과 경력	45
4. 교육 기간 중 요인	55
(1) 법학 교육 전반	55
(2) 법학 교육 및 학업	64
(3) 상호작용 및 관계	72
(4) 경제적 여건	75
(5) 개인 역량	83
(6) 인구통계학적 특성	86
5. 소결	91

Contents I

제4장 응시제한자 면접 결과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와 배경	97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의 희망 진로 또는 사회 경력	97
(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	99
(3)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의 희망 진로	104
(4)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의 가구 경제 상황이나 경제적 지원	105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경험	108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의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도	108
(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 희망 진로의 변화	109
(3) 교육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110
(4)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	111
(5) 재학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등록금, 생활비 등의 충당 방식	113
(6) 재학 중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및 학내 네트워크	114
(7) 재학 중 임신·출산·휴학 등의 영향	115
(8)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와 문화	116
(9) 학교의 진로지도, 상담, 장학금 등 지원 시스템의 활용과 인식	117
(10) 개선 필요성	118
3. 변호사시험 준비 및 응시의 경험	120
(1) 시험 제도 및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인지	120
(2) 시험 준비에 대한 지원 및 지지	124
(3)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의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	124
(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	126
(5) 5년의 응시 기간 중 응시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와 그 이유	132
(6) 시험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 및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한 소득활동	136
(7) 결혼·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등	140

(8)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압박 여부	143
(9) 시행되는 응시 기간에 경험한 어려움	145
4. 변호사시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149
(1)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149
(2)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인식	150
(3) 응시제한 제도(5년 내 5회)에 대한 인식	152
(4) 응시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154
5.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의 심리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	157
(1) 응시제한이 확정된 직후의 감정적 경험	157
(2)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경험	160
(3)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161
(4) 법학전문대학원 동료와의 관계	162
(5) 대인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	165
(6)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상호지원 경험	168
6.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경험: 취업준비와 취업과정	173
(1) 응시제한 이후 진로 선택의 계기	173
(2) 구직 활동 기간과 구직 방식	178
(3)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	181
(4)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185
7. 직장 생활 경험	189
(1) 현재의 직업	189
(2) 직장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191
(3) 현재의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195
(4) 법학 관련 전공지식의 활용 정도	195
(5) 직장 내에서의 전문성 인정 정도	197
(6) 응시제한 사실이 직무 과정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198

Contents I

8. 대안 경로 및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200
(1) 경로 재선택 여부	200
(2) 시험 추가 응시 여부	202
(3)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달라졌을 것으로 상상하는 삶의 모습	204
(4) 미래에 대한 기대	205
9. 응시제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208
(1) 응시제한자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208
(2)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의견	210
(3)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	213
10. 소결	215
(1) 연구 내용의 정리	215
(2)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과 개선 방안 논의의 필요성	219

제5장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

1. 서론	222
2. 응시제한자 채용 경험 및 평가	222
(1) 제한적인 채용 경험	222
(2) 채용 경험이 없는 이유	223
3. 비법률가 JD에 대한 수요 가능성	233
(1) 비법률가 JD에 대한 잠재적 수요	233
(2) 법률수요자들이 높게 평가한 역량	235
(3) 한국형 JD Advantage의 형성 가능성	238

4.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40
(1) 민간 부문의 JD Advantage 직역 확대	240
(2) 공공 부문 활용 확대와 법전문협회의 역할	241
(3) 로스쿨 교육의 방향전환 및 진로지원 개편	243
5. 소결	246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47
2. 정책적 함의	248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249
참고문헌	25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 체제가 야기하였던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시험에 반복적으로 불합격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새로운 사회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응시제한자” 또는 “오탈자”로 불리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5회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일정 수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2026년 현재 그 누적 규모는 약 2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응시제한 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의 합헌성, 변호사 인력 수급,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작 응시제한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이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반대로 어떠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응시제한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학업 실패나 낙오의 결과가 아닌, 법학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전문직 진입 제도의 배제 메커니즘이 낳은 중대한 사회적 사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이 법전문 교육을 통해 축적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국가 자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력 형성 과정,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경험, 경제적·심리적 상태 및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응시제한자의 삶과 경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력 형성

응시제한자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응시제한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응시제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2)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응시제한자 채용 경험과 평가는 어떠한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존재하는가?

응시제한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 경로는 무엇인가?

(3) 법학교육 및 제도의 개선 방향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3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법사회학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전문직 이론(professional theory), 낙인 이론(labeling theory), 그리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논의를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먼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field) 이론은 법조지역이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응시 제한자가 어떠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지, 그리고 법학전문석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이라는 상징 자본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또한 베커(Howard Becker)의 낙인 이론은 “오탈자”라는 사회적 범주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낙인이 응시제한자의 정체성과 경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 문제를 단순한 시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 진입제도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배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응시제한자 집단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응시제한자 문제를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법학교육의 가치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넘어 사회적 활용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넷째, 응시제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한국형 JD Advantage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과 연구구성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첫째, 제도분석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와 관련 법제,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입법 동향을 고찰하고, 응시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응시제한자 203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통제집단) 1,248명 등 총 1,45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 경험, 취업 현황 및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응시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수험 과정에서의 고립, 경제적 부채, 실질적 구직 장벽 등 생생한 질적 데이터를 포착하였으며, 응시제한 제도가 개인의 삶과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로펌,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채용 담당자 및 관리자 13명을 인터뷰하여 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시장 인식과 잠재 수요를 탐색하였다.

제2장

한국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제도의 현황과 관련 쟁점

1

개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기회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의 초입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였다.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제도가 개혁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5가지 기본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즉,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이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5년 그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백서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몇 번이라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으로 인하여 국가인력의 낭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하였다.¹⁾

사법개혁위원회는 동 백서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에 대한 건의문을 포함시켰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변호사시험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문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 백서'의 제4장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中]

1.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2005, 법원행정처. p.147.

3.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절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제도는 그 도입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응시가능했던 사법시험 제도의 병폐로 자주 지목되던 이른바 고시낭인 양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이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연동하여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경우 비교적 합격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입법안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법무부는 2008년 6월 10일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공고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당시 법무부는 동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바 있다.

법무부가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하자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 11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법안에 대한 수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하였다.²⁾ 이와 같은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2009년 12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 응시가능”이라는 법무부가 마련한 응시제한제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재석의원 218인 중 78인 만이 이에 찬성하였고, 반대표를 던진 재석의원이 100인으로 찬성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40인은 기권표를 던졌는바 부결되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3회 응시가능”이라는 엄격한 응시제한 제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당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산하에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2) 연합뉴스,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없애야”, 2008. 11. 3.
(<https://www.yna.co.kr/view/AKR200811031006000004>)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친 후, 당초 법무부가 마련한 응시제한 제도의 내용에서 응시기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응시횟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5회 응시가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와 같은 수정안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공포되었다.

■ 표 1 ■ 변호사시험법의 응시기회제한조항 조건표: 법무부의 국회제출안과 최초제정법률의 비교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의안번호 1559, 2008. 10. 20. 국회제출)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 5. 28. 제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회제출안을 포함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초 시행 법률부터 현행법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소요된 기간은 응시기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응시제한 기한산입에 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로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신분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응시제한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근거를 결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28일 관련 부분이 개정되어 현행법률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 표 2 ■ 「변호사시험법」의 응시기회 제한조항 개정 전후 조건표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 5. 28. 제정)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159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쟁점

(1) 응시제한제도의 정당성 논쟁 일반

앞서 소개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서 볼 수 있듯 변호사시험은 그 도입 배경에서부터 응시자격 및 응시기회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이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변호사시험 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일정한 기한 및 횟수 내에서만 응시를 허용하는 구조를 채택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³⁾

응시기회 제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조인 양성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부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응시자의 권리침해 국면을 강조한다. 예컨대,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타 자격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응시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응시자격에 이미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제한이라는 논거도 제시된다.

한편,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의 해소, 즉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 내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재응시를 허용할 경우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나타났던 장기 수험생 문제와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응시기회 제한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오고 있는 주요한 논거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인력 낭비 방지는 변호사 자격검증과 연관이 없는 상이한 정책목표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아울러, 응시제한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선택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응시제한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문제를 밀어내어 비가시화할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점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면, 교육성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합

3)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볼 수 있는 신문기사로서 다음을 참고: 황운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2008. 6. 2. <<https://www.segye.com/newsView/20080602002670>>
신하영, 「“로스쿨 출신·5년내 3회 제한은 위헌”」, 한국대학신문, 2008.05.3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63>>
오경진, 「다섯 번 떨어지면 끝... 로스쿨 나와 ‘오탁자’ 낙인만 남았네요」, 서울신문, 2019.07.10.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0020001>> 등

격률을 통제하면서 채용시를 제한하는 구조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나아가, 현행 응시제한제도는 응시기회의 영구적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 역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정된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로스쿨 수료자에 대한 별도의 인력 활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제도설계의 한계 내지 결함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문제

한편, 응시기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지에서도 그 내용 및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층위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3회 응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응시”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횟수와 응시기한을 함께 제한하는 구조인바, 응시횟수 제한의 경우 법무부가 처음 제시했던 3회에서 5회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이 완화되었으나, 5년이라는 응시기한 제한의 내용은 법무부가 최초로 제안했던 5년이라는 기한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응시기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아무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2009년 4월 22일 제28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중 이루어진 박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사이의 질의응답은 당시 국회 내부에서도 5년이라는 기한 설정이 적절한 것인에 상당한 문제의식이 존재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제28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中]

(일시: 2009년 4월 22일,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박영선 국회의원:** 그리고 5년 5회 제한의 경우도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이것이, 지금 법사위 소위 내에서는 이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합니대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로스쿨을 아주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 5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세월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몸이 아파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두 해 시험 보다가 이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가보다 해서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가 다시 '아, 그래도 내가 로스쿨 나왔는데 변호사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5년은 너무 짧은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한 법무부장관:** 병에 걸린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 전직 후에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그런 경우, 경우라는 것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예상해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용이한 일이 아니고, 또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취지를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고시낭인이,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니만큼 다소 개인적인 사정까지 전부 고려해서 입법하기는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략)

○ **박영선 국회의원:** 그래서 저는 이 5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 놓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5년을 고집하셨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이 법무부 현역을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장관으로 돌아오셨는데 만약에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현역을 떠난 뒤에 5년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겠습니까?

○ **김경한 법무부장관:** 그런 법이 있으면 제가 장관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3) 예외사유 인정규정의 적절성 문제

변호사시험법이 응시기한 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8년 7월 12일 및 2023년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2023년 9월 6일 변호사시험 응시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⁵⁾ 응시기한제한 예외인정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가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8년 임신·출산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25년 다시 법무부에 이를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출산’에 대한 명시적 예외 규정신설이 시급하다고 보아 1단계 조치사항으로 이번해 9월까지 출산 시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2단계 조치사항으로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인정 규정도 신설할 것을 별도의 조치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권고한 상태이다.

4) 이장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사유에 ‘임신·출산 등’ 추가하라」, 법률신문, 2018.07.1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68>〉

박도하, 「여성변회 “변호사시험 응시유예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법조신문, 2023.08.30.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

5) 이성진, 「새변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 법률저널, 2023.09.07.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100>〉

3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1) 개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은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정책적·입법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최초의 결정⁶⁾을 선고하였다.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병합된 사건 중에는 동법 제7조 제2항(이하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있었으나, 청구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는바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응시기회제한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합헌결정을 내려오고 있다.⁷⁾

한편,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20년 11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선고 2018헌마733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동 조항에 대한 뒤따르는 결정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대하여는 재판관 소수가 계속하여 반대의견을 밝혀오고 있던 중⁸⁾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등 결정에서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명하면서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 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기회제한조항과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결정

7)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87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733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1헌마392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67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113등 결정

8)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733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1헌마392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67등 결정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응시기회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쟁점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에 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응시기회제한조항”)이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⁹⁾

○ **헌법재판소의 결정(소극):**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운영방식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약 4분의 3이 변호사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쟁점2:** 응시기회제한조항이 변호사시험에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재취득하더라도 응시기회를 재부여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소극):**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응시기회제한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쟁점3:** 응시기회 제한이 없는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위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소극):**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9) 당시 청구인들은 응시기회제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판사 검사 등 공무원의 임용조건에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공무담임권과 응시기회제한 조항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는 보다 밀접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 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쟁점1:**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병역의무 이행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소극):**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에 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당시에 고려하여 응시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재판관 일부가 밝혀온 반대의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반대의견:**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의 논거:** 병역의무 이행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예측할 수 없거나 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정의견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할수록

오히려 응시기회·합격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사유를 어떻게 입법하고 운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입법자는 변호사시험에 정상적으로 준비·응시할 수 없었던 준비생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 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등 결정에서는 응시기회 예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권 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응시기회 예외조항이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재판간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2: 응시기회 예외조항이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각 주장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람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 응시기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의 논거:** 응시기회 예외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호사시험의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많은 경우 정상적인 변호사시험의 준비 및 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임신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위와 같이 임신·출산 그 자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응시한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수험에 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신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하여 정서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다. 그에 더하여 긴 수험생활과 5월에 걸친 시험 일정은 태아의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단 5회만이 허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중 한 번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임신·출산 시기가 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변호사시험과 겹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준비생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나아가, 임신·출산을 준비·계획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예의 임신·출산 여부와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으로 하여금 사실상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 중 최소 한 번을 포기하거나 임신·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임신·출산을 준비·계획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받는 불이익 또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임신·출산의 과정에 있거나 임신·출산을 준비·계획 중에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예외도 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 임신 또는 출산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고 시기와 종기도 분명하므로 이를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그 예외의 지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신·출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응시횟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경우, 개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모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적어도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예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나 시험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을 그 예외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임신·출산의 사유가 있는 여성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사실상 축소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외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4) 정리 및 평가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응시기회제한조항’과 제2항의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 모두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유지해 왔다. 응시기회제한조항에 관하여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견해를 보여 왔다.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관하여서도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사실상 그 침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관한 법정의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재판관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어왔다. 우선, 최근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판관 소수가 계속하여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밝혀온바 있다. 동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입법의 곤란성’이나 ‘형평성 훼손의 우려’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집단과 그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집단 사이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본 사안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예외사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하고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입법자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를 전제로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병역의무 이행자만을 예외로 삼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결정이 내려지면서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 대립은 해소된 반면 동 조항이 임신·출산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게 되었다. 동 결정에서 재판관 9인 중 5인은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명하면서 응시기회 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응시기회 예외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 조항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을 한 다거나 임신출산을 준비 및 계획하는 경우와 같은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이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관 다수의 위헌의견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입법단계에서 사회적 숙의가 부족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근시일 이내에 헌법적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입법적 논의

그동안 국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현행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7개 의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으며 2개 의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부터 살펴보면, 최초로 발의된 개정안은 ①2017년 11월 17일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1회의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되 응시기한 산입 개시일로부터 6년 이내에만 응시하도록 단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②2018년 2월 19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신·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 도과에 미산입하도록 시도하였고, ③이듬해 4월 12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시원서 제출 후 임신을 한 경우 1회당 1년의 응시기한을 공제하면서, 유산 및 사산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20년 11월 20일 각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④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안은 임신한 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⑤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은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⑥2021년 10월 7일에는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로 응시기한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⑦2023년 8월 2일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에 대하여도 응시기한 산입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들 법안들 또한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현행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두 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바, ⑧이재정 의원이 2025년 1월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출산 시 자녀 1명 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⑨김선교 의원이 2025년 12월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출산 시(다태아를 포함) 1회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고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가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미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표 3 ■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법률개정안 발의 추이 및 현황

법안발의정보	법안내용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220 발의일자: 2017. 11. 17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간개시일부터 6년 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한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986 발의일자: 2018. 2. 1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787 발의일자: 2019. 4. 12.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취득에 정자로서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임신 중인 경우(임신 이후 출산한 경우 및 유산·사산(死産)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1항의 기간 산정 시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공제한다. 다만, 임신 중인 사실을 알고도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357 발의일자: 2020. 12. 10.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328 발의일자: 2020. 12. 10.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

법안발의정보	법안내용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00 발의일자: 2021. 10. 7.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 ----- -----5회만----- -----5회만----- <삭 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33 발의일자: 2023. 8. 2.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은----- -----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질 병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 다만, 치료에 소요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1년으로 본다. 3.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634 발의일자: 2025. 1. 20 회의결과: 계류중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607 발의일자: 2025. 12. 24 회의결과: 계류중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 3. 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논의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안에서 다루는 응시기회제한 예외사유의 포섭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예외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도 세밀해지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다만,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응시기회제한 예외사유의 확충 및 보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는바,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그 내용과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요국과의 제도비교

(1) 미국

1) 개관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단일한 연방기관이 아닌 각 관할권역(jurisdiction)의 대법원 및 변호사시험위원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 관할권역별로 상이한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1931년 설립된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NCBE)는 변호사시험의 개발, 관리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관할권역의 변호사시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가 개발한 통일변호사시험(Uniform Bar Examination, 이하 “UBE”)이 널리 차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States) 및 Washinton, D.C를 포함한 총56개 권역이 자체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42개 권역은 각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가 개발한 UBE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권역은 자체적인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 각 권역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내용

미국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대한 사항 또한 각 관할구역의 대법원 및 변호사시험위원회에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응시횟수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다. 미국은 외국변호사나 타 관할권역 변호사 등에 대한 변호사자격취득 조건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 경로가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기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응시제한 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응시횟수 제한은 독립된 분류기준의 하나로 조사 및 집계되고 있으나 응시기한 경과 등에 대한 분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버몬트(Vermont) 주의 경우 과거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면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기한에 대하여도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2026년 1월 「버몬트주 대법원 변호사 자격인정 규칙(Rules of Admission to the Bar of the Vermont Supreme Court)」을 개정하면서 응시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동 규칙의 개정문에 부기된 위원회 주석(Board's Note)은 미국의 다른 관할권역에서 로스쿨 졸업 후 일정기간 내로 응시기한에 제한을 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가 집계하여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행 자료 기준으로 총 21개 관할구역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¹⁰⁾ 이들 21개 관할구역 중 7개 관할구역은 응시횟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규정상 법원이나 변호사시험위원회 등에 의한 추가적 응시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

UBE를 채택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먼저 살펴보면, ①캔터키(Kentucky) 주의 경우 총 5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면서, UBE를 채택한 다른 관할구역에서 응시한 횟수도 아울러 제한하고 있다. ②뉴햄프셔(New Hampshire) 주는 총 4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캔터키주와 마찬가지로 UBE를 도입한 다른 관할구역에서 응시한 변호사시험 횟수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③노스 다코다(North Dakota) 주는 총 6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데, 다른 관할구역에서 응시한 UBE는 물론 다주공동변호사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횟수도 아울러서 제한하고 있다. MBE는 UBE를 구성하는 객관식 시험으로 UBE는 채택하지 않은 채 MBE만 차용하고 있는 관할권역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스다코다주는 앞서 소개한 두 주(州) 보다 응시횟수의 산입에 대하여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의 경우 시험의 종류 및 형태를 특정하지 아니한채 미국 전역에서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통틀어 총 5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UBE를 도입하지 아니한 관할구역 중 ⑤미시시피(Mississippi) 주의 경우 총 4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⑥루이지애나(Louisiana) 주는 총 5회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 ⑦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경우 총 6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험응시 도중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시험위원회에 증빙을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해당 시험응시를 횟수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단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10) 이중 UBE를 채택하고 있는 관할권역은 16 곳이고 채택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권역이 5곳이다.

또한, 다음의 14개 관할권역은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시험위원회나 주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이들 중 다수의 주가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Iowa) 주의 경우 2회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7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주에서 최근 9년간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가 거부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어떤 응시자의 총13회에 이르기 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한다.¹¹⁾

■ 표 4 ■ 응시횟수를 제한하되 추가적 응시기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 내 관할권역 현황

No.	관할권역 명칭	응시허용횟수
①	아리조나(Arizona) 주	4회
②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4회
③	아이다호(Idaho) 주	6회
④	아이오와(Iowa) 주	2회
⑤	몬태나(Montana) 주	3회
⑥	네브래스카(Nebraska) 주	4회
⑦	오클라호마(Oklahoma) 주	5회
⑧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주	3회
⑨	텍사스(Texas) 주	5회
⑩	유타(Utah) 주	6회
⑪	버몬트(Vermont) 주	4회
⑫	버지니아(Virginia) 주	5회
⑬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	4회
⑭	와이오밍(Wyoming) 주	4회

한편, 직접적으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반복적 응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할권역도 있다. 예컨대, 메릴랜드(Maryland)주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시험위원회가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의 경우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다음 응시까지 1년의 휴지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Jeffrey S. Kinsler, Is Bar Exam Failure a Harbinger of Professional Discipline?, St John's Law Review 91(4), pp.901-902.

3) 경향성 및 추이

미국의 경우 현재 총 56개 관할권역 중 21개 권역, 즉 전체관할 권역 중 8분의 3에서만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 주(州) 중 약 3분의 2 정도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바, 미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규율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완화의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권역으로 테네시(Tennessee)주가 자주 언급된다. 테네시주는 과거 총 4회만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허용하는 엄격한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가 지금은 아무런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¹³⁾

다만, 2022년부터 4회의 응시기회 부여라는 엄격한 제한을 도입한 미시시피(Mississippi)주나, 2025년 7월부터 5회의 응시횟수 제한을 도입한 오클라호마(Oklahoma)주처럼 최근들어 몇몇 관할구역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을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관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응시횟수 제한을 강화하는 몇몇 주의 움직임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인증기준의 주요구성 요소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¹⁴⁾ 이와 같은 일부의 움직임이 응시횟수 제한에 대한 미국 전역의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미국 내 과반 이상(64%)의 관할권역이 응시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가장 큰 법률시장인 뉴욕(New York)과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도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¹⁵⁾

(2) 일본

1) 로스쿨의 출범과 신사법시험의 도입

일본에서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 즉, 로스쿨 제도의 설립은 사법개혁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1999년 7월 일본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년에 걸친 논의 결과를

12) Id at pp.909-910.

13) Ibid.

14) 참고로, Mississippi주 변호사자격시험위원회는 2022년 5월 6일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반복적으로 재응시하는 지원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시시피주의 전체 합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여러 차례 시험을 반복 응시하는 지원자들은 이후 응시에서 합격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변호사시험을 네 차례(4회) 이상 치른 응시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응시하는 행태는 Mississippi주 로스쿨들의 인증 지위(ABA 인증 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5) 미국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25 ABA Profile of the Legal Profession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약 137만명)의 4분의 1 이상이 뉴욕(약 18만명)과 캘리포니아(약 17만명)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정리하여 2001년 6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점수”에 중점을 둔 사법시험을 대신하여 로스쿨을 통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¹⁶⁾ 같은 해 12월 정부가 설치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법제정비 등 로스쿨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고, 문부과학성 산하의 ‘중앙교육심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학교 설치기준, 학위 및 입학자 선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이듬해 8월 로스쿨 설치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¹⁷⁾ 이와 같은 각 정부부처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04년 4월 68개교의 로스쿨이 개교하면서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에 연계된 시험인 “신(新) 사법시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응시기회 제한방식의 변경과 예비시험의 도입

일본에서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장기간 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이를 고려하여 의견서에서 로스쿨에 연계하여 새로 도입할 시험의 응시횟수에 제한을 둘 것을 제언하였다. 이에 따라, 신사법시험이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3회 이내만 응시를 허용하도록 응시기한과 응시횟수에 모두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시제한 제도를 리스크로 인식하는 인재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이 초기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고,¹⁸⁾ 2014년 10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횟수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로 응시기한을 제한하는 규정만 유지되고 있다.

구사법시험은 신사법시험의 도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함께 운영되며 병존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같은 해에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였다. 예비시험의 당초 도입취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정부 등에서 법무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전문적인 소양을 쌓은 사람들에게도 신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⁹⁾ 그러나, 예비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실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자들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못하였는데, 이를 판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²⁰⁾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예비시험

16) 양만식, “일본에서의 법조양성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법조양성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 법학논총 39(3), 2015, pp.472-473.

17) 김창록,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법과사회 24, 2003, pp.13-16.

18) 국종환, 日,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폐지, 뉴스1, 2014. 5. 28.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1697324?utm_source=copilot.com〉

19) 이노우에 마세히토, ‘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서울대학교 法學 52(3), 2011, p.610

은 로스쿨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 및 그 응용 능력,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 가를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규정되게 되었고, 사실상 응시자격의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²¹⁾

3)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변화추이

예비시험이 도입되면서 일본 신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 수료자 뿐만 아니라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부여되게 되었다. 한편, 2019년부터 「사법시험법」이 개정되면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해당 대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고 1년 이내에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의 법개정을 반영하여 현재 구사법시험부터 현행 사법시험에 이르기까지 응시자격 및 응시기회제한 규정이 변화되어온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5 ■ 일본 新舊 사법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기회제한 비교

구분	(구)사법시험	(신)사법시험
응시자격	○ 제1차시험: 제한없음 ○ 제2차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자	○ 예비시험: 제한없음 ○ 본시험: 1. 로스쿨 수료자 2. 예비시험 합격자 3. (2019년부터) 로스쿨 재학생 중 해당 대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1년 이내에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응시기회제한	제한없음	○ 2014년 사법시험법 개정 이전: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3회에 한하여 응시 허용 ○ 2014년 사법시험법의 개정 이후: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에만 응시 허용(응시횟수 제한 규정 삭제) * 단, 2019년 사법시험법 개정에 따라 로스쿨 재학 중 응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사법시험에 응시한 해로부터 5년 이내에만 응시 허용

한편, 일본의 경우 5년의 응시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의 근거가 되었던 자격요건이 아닌 다른 자격요건을 재취득함으로써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

20)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선발제도의 비교연구, 2011, p.41

21) 한국행정연구원, 같은 보고서, p.74

고 있는바, 한국과 같이 응시횟수나 응시기회를 도과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응시제한자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이루어진 적 있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²⁾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정형근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정형근은 2019년 발표한 두편의 논문²³⁾에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현행 응시기회 제한 제도가 로스쿨 졸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자기운명결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행제도가 응시기한제한의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임신·출산 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삭제가 바람직하나 유지하더라도 응시기한에 대한 제외를 폐지하거나 재교육을 통한 재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응시기회제한 조항에 대한 최초의 합헌결정인 헌법재판소의 2016. 9. 29.자 2016헌마47등 결정에 대한 비판의견도 제시하였는데, 응시기한의 제한은 응시횟수의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점, 해당 조항이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점, 변호사시험법 제6조의 응시결격사유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의 재취득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점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²⁴⁾

22) 여성가족부가 2017년 실시한 특성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바, 그 과정에서 경험적 자료가 일부 수집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사는 응시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정부조사를 학술적 연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3) 정형근.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2). 2019.
정형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현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 원광법학 35(2), 2019.

24) 정형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현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 원광법학 35(2). 2019.

현행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연구의 하나로 김은경의 2018년도 연구를 찾아볼수 있다. 동 연구는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서 임신·출산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한국이 가입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위반 및 동 협약에 따라 도출되는 재생산권의 침해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은 단지 출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산, 사산, 인공수정 등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진행됨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²⁵⁾

한편, 한국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 대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박종현이 2016년 발표한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경험 및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가 발견된다.²⁶⁾ 동 연구는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난이도가 높지 않고 출제경향이 안정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식을 망라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기에 적절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변호사시험이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그와 같은 법적 사고력이라는 점에서 동 연구는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하였다면 합격이 보장되는 ‘통과의례적 자격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한국의 변호사시험은 대체로 이미 선별된 집단 내에서 다시 한번 경쟁과 탈락을 발생시키는 ‘이중적 선발구조’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연구는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응시자 집단의 인식과 경험을 미국과 한국의 제도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져주는 또 다른 경험적 연구로 이안진이 2025년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생에 대한 질적연구가 있다.²⁷⁾ 동 연구는 로스쿨 진학 준비생과 로스쿨재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출신학부, 성별, 소득, 부모의 직업, 법무전문직 친족 유무 등을 중심으로 로스쿨 진학 준비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 준비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시험과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5) 김은경.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화젠더법학 10(2), 2018.

26) 박종현.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법과사회 61, 2019.

27) 이안진. “서울 4년제 대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 경험과 계층 불평등” 교육사회학연구 35(2), 2025.

학생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경험되고 있었다. 예컨대, 로스쿨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상위권 학부 출신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와 주변 지인을 통해 입시 정보를 비교적 쉽게 획득하고, 로스쿨 진학을 자연스럽고 접근 가능한 진로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 반면 그러한 정보망이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제한된 정보와 자원 속에서 진학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로스쿨의 진학동기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고소득층이 아닌 참여자들에게는 로스쿨 진학이 경제적 안전이 보장된 직업을 보유하는 경로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명예, 사회적 인정, 직업적 자율성의 획득이 주요한 동기를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로스쿨 제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가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게 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조인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로 ‘안전성의 추구하고 불확실성의 회피’를 꼽았는데, 로스쿨 진학이 절반 이상의 확률로 전문직 자격증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상위권 로스쿨 진학은 보다 높은 확률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의미했다.

로스쿨 진학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원의 격차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 연구의 결과는 변호사시험 준비와 반복 응시 과정도 온전히 개인의 능력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진입 과정의 첫 관문인 로스쿨 진학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의 반복적 실패와 응시기회박탈 역시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 연구는 변호사시험 불합격 및 응시기회박탈을 로스쿨 입학 준비단계에서부터 입학 및 수료를 거쳐 재응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누적적인 영향의 결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응시제한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한편, 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e Yakowitz의 2010년도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동 연구는 반복적인 변호사 시험 불합격 끝에 결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을 “최종탈락자(never-passers)”로 개념화하고 이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면서 Law School Admission Council(LSAC)의 Bar Passage Study(BPS),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NSCG), 각종 Bar Study Reports, After the J.D. 프로젝트 및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변호사시험 실패 경험이 이들의 삶의 궤적에 미친 영향을 다층적으로 검토하였다.²⁸⁾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졸업 직후의 취업과 소득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탈락자 집단은 초시합격자 집단에 비해 정규

직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상당수의 취업이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패 이후 곧바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초기 연봉 수준 역시 현저히 낮았으며, 인터뷰에서는 “삶이 멈춰 있다”, “경력지옥”, “나를 죽이고 있다”와 같은 강한 정서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동 연구는 변호사시험 최종탈락이 재응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와 교육 환경 등의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바,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재응시와 최종합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실패의 영향은 단기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탈락자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소득 회복을 경험하고 법률 관련 직종이나 관리자 및 임원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고용 안정성, 혼인율, 가정생활 등에서는 변호사 집단이나 일반 대학졸업자 집단에 비해 지속적인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로스쿨 진학 자체가 다른 경력 경로와 대학원 진학 기회를 차단하고 특히 최종탈락자에게는 학자금 부채와 경력지연과 같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종탈락자의 장기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로스쿨 교육 수요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고, 나아가 로스쿨 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 연구에서 “최종탈락자”를 연구 및 분석함에 있어 활용된 제반 변인과 지표들은 국내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 연구는 국내의 응시제한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설계의 준거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선행연구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8) Jane Yakowitz, Marooned: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aw School Graduates Who Fail the Bar Exam, *Journal of Legal Education* 60(1). 2010.

7

소결: 평가 및 제언

(1) 정책목표의 편중적 우선화 및 사회적 숙의의 부족

응시제한제도는 그 정당성, 제한의 내용과 방식 및 예외사유의 범위 등 여러 층위에서 논란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당시 이와 같은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무부가 처음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쳤을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법시험 및 로스쿨 준비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²⁹⁾ 2009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도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³⁰⁾ 이후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이 최초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응시횟수 제한의 내용만 3회에서 5회로 완화되었을 뿐, 5년이라는 응시기한제한의 기본구조 및 예외인정사유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응시횟수와 기한을 함께 제한하는 방식의 타당성, 5회·5년이라는 수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법이 처음 입법될 당시부터 이미 국회 내부에서는 5년이라는 기한 제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제28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박영선 의원은 경제적 형편, 질병,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가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은 모든 예외적 사정을 입법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장기 수험생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데 그쳤을 뿐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국회 회의록의 한 장면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 변호사시험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국회 내부에서 개별 응시자의 생애경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거나 이를 예외사유로 반영하는 등의 추가적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29) 법률저널, 「‘변시법 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 2008. 6. 20.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3>>

30) 법률저널, 「변호사시험법, 왜 부결됐을까?」, 2009. 2. 13.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1>>

한편, 변호사시험법의 시행 이후에도 임신·출산, 질병, 사고 등 병역의무 이행 외의 사유를 응시기간 산입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 또한 최초 입법 당시의 논의가 응시기회 제한 제도의 현실적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생각건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 제한제도는 장기수험생 문제의 방지, 법조인 수급관리와 같은 정책목표가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불이익과 생애경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미흡한 상태로 제도화된 채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정당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일정 정도 축적되어 왔으나, 응시제한자를 경험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생애사적 경로와 제도적 경험을 조사 및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법조항의 문언과 내용에 대한 규범적 접근만으로는 제도가 사회 속에서 작동하면서 불러오는 현실적 효과를 포착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부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남긴다. 현행 응시제한제도 아래에서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 자격 취득의 경로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응시제한자들의 생애경로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학술적으로도 간과하기 어려운 연구상의 공백에 해당할 것이다. 응시제한자들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이와 같은 학술적 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응시제한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가 최초 입법 당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도입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당시 응시기회 제한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장기수험생 발생의 방지, 법조인 수급관리와 같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응시제한제도가 개별 응시자의 생애경로, 건강상 사정, 임신·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현실적 조건과 결합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응시제한제도의 현실적 효과를 개별 응시제한자들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고, 응시제한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해 왔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경험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입법당시의 숙의부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연구 목적과 조사 방법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응시제한자들의 법학전문석사학위와 그동안 축적한 법학 전문 지식이 그들의 경력 형성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 1)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어떠한 진로 경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들의 법학전문석사 학위와 전문성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취업 및 이직 여부, 직종, 급여, 소득 수준 등)
- 2) 응시제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2-1)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기타 개인 역량, 사회경제적 배경,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취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장학금제도/진로지도/생활비 지원 등 교육 내적 요인 등의 영향은 어떠한가?
 - 2-2) 응시제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 중 겪었던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제도적, 실질적 지원 방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응시제한자들의 인식과 제언은 무엇인가?
- 3) 응시제한자의 경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3-1)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기타 개인 역량, 사회경제적 배경,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취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장학금제도/진로지도/생활비 지원 등 교육 내적 요인 등의 영향은 어떠한가?
 - 3-2)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에서 어떠한 경제적, 심리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언은 무엇인가?

위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조를 얻어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2012년 졸업)부터 14기 졸업생(2025년 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팀에서 만든 설문조사의 링크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였고, 설문 문항의 숫자는 총 167개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윤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승인번호: IRB No.2601/003-020), 설문 및 면접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자는 응답 도중 언제든지 응답을 거부하거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또한 설문 및 면접 자료는 개인 및 기관이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하여 처리하였고, 원자료(녹음파일·전사자료 등)는 접근 권한을 제한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설문 항목과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표 3-1 ■ 설문 항목과 측정

구분	설문 항목	측정	척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제도에 대한 태도	응시제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현황 /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응답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연도(2012년~2026년)	복수응답 (최대 5개), 미응시 옵션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의견	현행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	4점 척도, 무응답 옵션
	응시제한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현행 응시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방안	복수응답, 명목 척도, 자유 기입 옵션
	응시제한제도가 없을 경우 향후 응시 의향	응시제한자가 만약 응시제한제도가 없었다면 향후 추 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횟수	4점 척도
직업과 경력	현재 고용 상황	응답자의 현재 고용 상황(상근 정규직/비정규직, 비상 근직, 군복무, 구직 중 등)	명목 척도
	비상근직 근로 이유	현재 비상근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응시제한자의 비상 근직 근로 이유	복수응답, 명목 척도
	비상근직 근로 응시제한자의 1주일 근무 시간	비상근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응시제한자의 1주일 평균 근무 시간	자유 기입
	상근직 종사자의 직종 현황	상근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현재 직종	명목 척도
		상근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현재 직장과 직책	자유 기입
	현 직장 근속 기간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연도 및 월)	자유 기입
	졸업 후 직장 변동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현재 직장에 이르기까지 거처 온 총 직장의 횟수	4점 척도
	직장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는 정도	5점 척도

구분	설문 항목	측정	척도
	직무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세부 19개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5점 척도
	전공-직무 일치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법학과 관련되어 있는 정도	4점 척도
	연소득	2025년 기준, 성과금과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직장에서 받은 세전 연봉 총액	자유 기입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마지막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또는 6개월 실무 수습 종료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	5점 척도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	응시제한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복수응답, 명목 척도, 자유 기입 옵션
법학 교육 전반	학업 연속성 (입학 전 공백)	학부 졸업,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졸업 연도	자유 기입
	학업 연속성 (입학 전 공백)	학사 학위 취득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까지 총 직장 경력	구간형 서열척도 (8개 구간)
	전공(법학전문대학원) 선택 동기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5점 척도
	입학 당시 희망 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점에 응답자가 가장 희망했던 진로 유형	명목 척도
	특별전형 입학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	이분형 명목 척도
	특별전형 유형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세부 특별전형 유형	명목 척도
	휴학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유무	명목 척도
	휴학 기간	휴학 경험이 있는 경우, 휴학한 학기의 수	4점 척도
	휴학 사유	휴학 경험이 있는 경우, 휴학 사유	복수응답, 명목 척도, 자유 기입 옵션
	로스쿨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 평균 학점(4.3 만점)	자유 기입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려웠던 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적성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의 정도	5점 척도
	전공 충성도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진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진로(법학전문대학원)를 다시 선택할 의향 정도	4점 척도, 무응답 옵션
교육 및 학업	교육 만족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5점 척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5점 척도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5점 척도
	교수 학습의 중점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암기, 분석, 통합, 판단, 응용, 공감 등 활동이 강조된 정도	4점 척도
	주관적 교육 성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응답자의 지식, 기술, 개인적 발전에 기여한 정도	4점 척도
	교육 참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수업 또는 학업 활동에 참여한 정도	4점 척도

구분	설문 항목	측정	척도
	재학 중 참여 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학생 자율 활동 또는 외부 활동에 참여한 정도	복수 응답, 명목 척도
	학습 및 생활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일주일 동안 세부 일상 활동에 할애한 시간	7점 척도
	학년별 하루 평균 학습 시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년별 학기 중 강의 수강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 시간	자유 기입
	교육 경험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에 대한 평가	4점 척도
	사설 변호사시험 강의 수강 여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설 강의의 유형	복수응답, 명목척도 무응답 옵션, 자유 기입 옵션
상호작용 및 관계	교수 및 학우와의 상호작용	교수 또는 학우와의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한 빈도	4점 척도
	교수와의 주관적 친밀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	5점 의미분화척도
	친구와의 주관적 친밀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우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	5점 의미분화척도
	행정직원과의 주관적 친밀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직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	5점 의미분화척도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장학금이나 성적 우수 장학금의 유형	복수응답, 명목 척도, 자유 기입 옵션
	학비조달경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학비 및 생활비 조달 방법	복수응답, 명목 척도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간 근로 시간	변호사시험 응시 직전 6개월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경험 유무	이분형 명목 척도
		변호사시험 응시 직전 6개월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한 경우, 1주일 평균 근로 시간	자유 기입
	근로 경험이 시험에 미친 부정적 영향	근로활동으로 인해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은 정도	4점 척도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조달을 위한 대출 차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조달을 위한 대출 이용 여부	이분형 명목 척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액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응답자에게 발생한 총 대출금의 규모	구간형 서열 척도 (7개 구간)
	졸업 시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점 교육 관련 대출금의 규모	구간형 서열 척도 (7개 구간)
	현재 남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관련하여 응답자에게 남아 있는 대출금의 유무	이분형 명목 척도

구분	설문 항목	측정	척도
	대출 상환 계획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방법 또는 앞으로의 상환 계획	복수응답, 명목척도
	변호사시험 당시 혼인상태 차이	변호사시험 준비 당시 혼인상태	이분형 명목 척도, 자유 기입 옵션
	변호사시험 당시 자녀 유무	변호사시험 준비 당시 자녀의 수	구간형 서열 척도 (3개 구간)
	자녀 출산과 양육이 변호사시험에 미친 영향	자녀 출산과 양육이 응시자의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미친 영향	5점 척도
개인 역량	LEET 표준점수	응답자가 응시한 LEET 시험의 표준점수	구간형 서열척도 (13개 구간)
	학부 평균 학점	응답자의 학부 평균 학점	자유 기입
인구통계학적 특성	출신지역	응답자가 대학 입학 전 주로 성장한 곳	명목 척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세전 월 평균 가구 소득	구간형 서열 척도
	부모님 학력	응답자 부모님의 최종 학력	구간형 서열 척도, 자유기입 옵션
	현재 혼인 상태	응답자의 현재 혼인상태	이분형 명목 척도
	현재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응답자가 현재 속한 가구의 세전 월 평균 가구 소득	구간형 서열 척도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451명이고, 이 중 응시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응답자의 수는 203명이다(표 3-2). 응시제한자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31명(64.5%)으로 여성(71명, 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96명(47.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0대가 90명(44.3%)으로 뒤를 이어 30대와 40대가 전체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및 50대 이상 응답자는 총 17명(8.4%)이었다. 주로 성장한 지역을 보면 서울 출신이 85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 지역 출신(19명, 9.4%)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51.3%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비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출신 52명(25.6%), 비수도권 시 지역 출신 39명(19.2%)의 분포를 보였으며, 군·읍·면 지역 및 해외 출신은 각각 4명(2.0%)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고용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근직 또는 정규직 종사자가 102명(50.3%)으로 응시제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인 상태가 49명(24.1%), 비상근직 또는 아르바이트가 20명(9.9%), 상근직 비정규직이 15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 상태에 대해서는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124명(61.1%)으로 기혼자 79명(38.9%)보다 높았다.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44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이 42명(2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소득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34명(16.8%),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24명(11.8%)으로 집계되었다.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22명(10.8%)이었으며, 가구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도 12명(5.9%)으로 집계되었다.

■ 표 3-2 ■ 응시제한자 특성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자	131(64.5)
	여자	71(35.0)
	기타	1(0.5)
연령	20대	-
	30대	90(44.3)
	40대	96(47.3)
	50대	16(7.9)
	50대 이상	1(0.5)
성장 지역	서울	85(41.9)
	인천·경기	19(9.4)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시	52(25.6)
	비수도권 시(천안, 전주, 포항 등)	39(19.2)
	군·읍·면 지역	4(2.0)
	해외	4(2.0)
	기타	-
고용상 지위	상근직/정규직	102(50.3)
	상근직/비정규직	15(7.4)
	비상근직 또는 아르바이트	20(9.9)
	군복무 중	-
	직업 없음/구직 중	49(24.1)
	기타	17(8.4)
현재 혼인 상태	기혼	79(38.9)
	혼인 상태가 아님	124(61.1)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	200만 원 미만	22(10.8)
	200~400만 원 미만	44(21.7)
	400~600만 원 미만	42(20.7)
	600~800만 원 미만	34(16.8)
	800~1,000만 원 미만	24(11.8)
	1,000~1,200만 원 미만	8(3.9)
	1,200~1,400만 원 미만	5(2.5)

구분	빈도(비율%)
1,400~1,600만 원 미만	1(0.5)
1,600~1,800만 원 미만	7(3.5)
1,800~2,000만 원 미만	4(2.0)
2,000만 원 이상	12(5.9)
응시제한자 합계	203(100)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1,248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석을 위한 통제그룹으로 사용하였다. [표 3-2-1]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남성이 720명(57.7%)으로, 여성(526명, 4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730명(5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0대가 371명(29.7%)으로 뒤를 이어 30대와 40대가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응답자는 총 39명(3.1%)이었다.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서울 출신이 411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 지역 출신(205명, 16.4%)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616명, 49.3%) 차지한다. 이 외에 비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가 362명(29.0%), 비수도권 시 지역이 207명(16.6%)인 분포를 보였으며, 군·읍·면 지역 52명(4.2%), 그리고 해외 출신 10명(0.8%)으로 집계되었다.

고용상 지위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상근직 또는 정규직 종사자가 964명(77.2%)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상근직 비정규직이 108명(8.7%), 기타 응답이 84명(6.7%)였는데 기타 응답자의 상당수가 개업 변호사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군복무중인 응답자가 51명(4.1%),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인 상태가 30명(2.4%), 비상근직 또는 아르바이트가 1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693명(55.5%)으로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555명, 44.5%)보다 더 많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을 살펴보면 600~800만 원 미만, 800~1,000만 원 미만, 1,000~1,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94명(15.5%), 187명(15.0%), 187명(15.0%)으로 가구 소득 600~1,200만 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2명(13.8%), 1,200~1,400만 원 미만이 115명(9.2%) 순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3-2-1 ■ 통제그룹(변호사시험 합격자) 특성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자	720(57.7)
	여자	526(42.1)
	기타	2(0.2)
연령	20대	106(8.5)
	30대	730(58.5)
	40대	371(29.7)
	50대	39(3.1)
	50대 이상	-
	무응답	2(0.2)
성장 지역	서울	411(32.9)
	인천·경기	205(16.4)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시	362(29.0)
	비수도권 시(천안, 전주, 포항 등)	207(16.6)
	군·읍·면 지역	52(4.2)
	해외	10(0.8)
	기타	1(0.1)
고용상 지위	상근직/정규직	964(77.2)
	상근직/비정규직	108(8.7)
	비상근직 또는 아르바이트	11(0.9)
	군복무 중	51(4.1)
	직업 없음/구직 중	30(2.4)
	기타	84(6.7)
현재 혼인 상태	기혼	693(55.5)
	혼인 상태가 아님	555(44.5)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	200만 원 미만	8(0.6)
	200~400만 원 미만	40(3.2)
	400~600만 원 미만	115(9.2)
	600~800만 원 미만	194(15.5)
	800~1,000만 원 미만	187(15.0)
	1,000~1,200만 원 미만	187(15.0)
	1,200~1,400만 원 미만	115(9.2)
	1,400~1,600만 원 미만	103(8.3)
	1,600~1,800만 원 미만	73(5.8)
	1,800~2,000만 원 미만	54(4.3)
	2,000만 원 이상	172(13.8)
변호사시험 합격자 합계		1,248

2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과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최대 5회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6년까지의 응시 연도에 대해 최대 5개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표 3-3]은 변호사시험이 진행된 회차별 응답자가 응시한 연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연도별 응시 현황에 관한 분포는 역대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연락 가능 범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8회(2019년)~11회(2022년)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8회(2019년) 84명(9.8%), 9회(2020년) 89명(10.4%), 10회(2021년) 96명(11.2%), 11회(2022년) 101명(11.8%)으로 나타난다.

■ 표 3-3 ■ 응시제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현황

빈도(비율 %)	
구분	응시 현황
1회(2012년)	3(0.4)
2회(2013년)	14(1.6)
3회(2014년)	28(3.3)
4회(2015년)	45(5.3)
5회(2016년)	55(6.4)
6회(2017년)	67(7.8)
7회(2018년)	72(8.4)
8회(2019년)	84(9.8)
9회(2020년)	89(10.4)
10회(2021년)	96(11.2)
11회(2022년)	101(11.8)
12회(2023년)	72(8.4)
13회(2024년)	57(6.7)
14회(2025년)	45(5.3)
15회(2026년)	25(2.9)
응시한 적 없음	3(0.4)
합계	856(100)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총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표 3-4]에 따르면 5회 모두 응시한 경우는 128명(63.1%)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4회 응시한 응답자가 27명(13.3%)이었으며, 3회 응시한 응답자가 24명(11.8%)으로 집계되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3명(1.5%) 이었다.

■ 표 3-4 ■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5회 응시	128(63.1)
4회 응시	27(13.3)
3회 응시	24(11.8)
2회 응시	12(5.9)
1회 응시	9(4.4)
응시한 적 없음	3(1.5)
합계	203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른 ‘5년 내 5회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에 해당하는 179명(88.2%)이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를 보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46명(71.9%)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명(16.3%)이었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명(6.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명(5.4%)으로 확인되었다.

■ 표 3-5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에 대한 의견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응시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79(88.2)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146(71.9)
		폐지해야 한다	33(16.3)
응시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13(6.4)	유지해야 한다	10(4.9)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3(1.5)
잘 모르겠다	11(5.4)	잘 모르겠다	11(5.4)
합계			203(100)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물은 결과(복수 응답), [표 3-6]과 같이 ‘응시 횟수 제한 폐지’(168건, 38.0%)와 ‘응시 기간 제한 폐지’(166건, 37.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 입대 외의 예외 사유 추가’는 94건(21.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개선할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은 6건(1.4%)에 불과했다. 응시제한제도 개선 의견에 ‘기타’ 입장을 제시한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절대 평가로의 전환”, “실질

합격률 높이기”, “자격시험화(합격률 80% 이상으로 상향)”, “합격률 대폭 조정 또는 로스쿨 정원 대폭 축소, 학년별 진급시험 활성화”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 표 3-6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복수 응답)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응시 횟수 제한 폐지	168(38.0)
응시 기간 제한 폐지	166(37.6)
군입대 외의 예외 사유 추가(예: 출산 및 육아, 질병 등)	94(21.3)
개선할 필요 없음	6(1.4)
기타	8(1.8)
합계	442(100)

만약 변호사시험 응시에 제한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응시제한자 중 상당수인 146명(71.9%)이 추가 응시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표 3-7). 추가 응시 의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회 더 응시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9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1회 더 응시할 것이다’가 37명(18.2%), ‘3회 이상 더 응시할 것이다’가 30명(14.8%) 순이었다. 반면, 제도적 제한이 없더라도 ‘더 이상 응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명(28.1%)으로 확인되었다.

■ 표 3-7 ■ 응시제한제도가 없을 경우 향후 응시 의향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더 이상 응시하지 않겠다.	57(28.1)
1회 더 응시할 것이다.	37(18.2)
2회 더 응시할 것이다.	79(38.9)
3회 이상 더 응시할 것이다.	30(14.8)
합계	203(100)

3

직업과 경력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상근직/정규직 근무자가 102명(50.2%)으로 약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8). 다음으로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인 상태인 경우가 49명(24.1%)으로 나타났으며, 비상근직(part-time)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가 20명(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근직(full-time) 비정규직 근무자는 15명(7.4%)으로 확인되었다.

■ 표 3-8 ■ 현재 고용 상황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상근직(full-time)/ 정규직 근무	102(50.2)
상근직(full-time)/ 비정규직 근무	15(7.4)
비상근직(part-time)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20(9.9)
군복무 중	-
직업 없음/구직 중	49(24.1)
기타	17(8.4)
합계	203(100)

현재 비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20명에게 ‘상근직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13건(54.2%)이 상근직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라고 답하여 응시제한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5건(20.8%)이 육아를 위해, 2건(8.3%)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다(표 3-9).

■ 표 3-9 ■ 비상근직 근로 이유(복수 응답)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n=20)
상근직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13(54.2)
육아를 위해	5(20.8)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2(8.3)
신체적 장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1(4.2)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의 간호 및 돌봄을 위해	1(4.2)
창업 준비를 위해	-
기타	2(8.3)
합계	24(100)

현재 비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명에게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을 질문한 결과 주 20~30시간 근무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30~40시간 근무와 주 40~50시간 근무자, 10시간 미만 근무자가 각각 4명이었다(표 3-10).

■ 표 3-10 ■ 비상근직 근로 응시제한자의 1주일 근무 시간 분포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10시간 미만	4(20.0)
10~20시간 미만	1(5.0)
20~30시간 미만	6(30.0)
30~40시간 미만	4(20.0)
40~50시간 미만	4(20.0)
50시간 이상	1(5.0)
합계	20(100)

비상근직 근로를 하고 있는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주일 간 평균 근무 시간을 비교하였다(표 3-10-1). 응시제한자의 경우 평균 24시간 54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평균 13시간 30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해, 응시제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0-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상근직 근로 시 1주일 간 평균 근무 시간 비교(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		합격자(n=10)		t
	주당 평균 근로시간	표준편차	주당 평균 근로시간	표준편차	
비상근직 근로 시 1주일 간 평균 근무 시간	24 시간 54 분	14 시간 30 분	13 시간 30 분	8 시간 44 분	2.275***

* $p < .05$, ** $p < .01$, *** $p < .001$

응시제한자 중 현재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는 117명의 현재 직장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직이 22명(1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15명(12.8%),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사무행정 직원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재직자가 각각 12명(10.3%)으로 나타났다(표 3-11).

■ 표 3-11 ■ 상근직 종사자의 직종 현황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공공기관 및 공기업	22(18.8)	공무원(경찰 등 사법관련)	4(3.4)
공무원(일반직)	15(12.8)	대학 또는 연구기관	4(3.4)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사무·행정 직원	12(10.3)	법조 외 전문직(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	2(1.7)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2(10.3)	개인사업 및 자영업	2(1.7)
중견기업	11(9.4)	외국계 기업	2(1.7)
비영리기관	7(6.0)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	1(0.9)
국내 대기업	7(6.0)	언론/방송/미디어 분야	-
공무원(국회 등 입법관련)	5(4.3)	기타	6(5.1)
교직, 교육업(사교육 등)	5(4.3)	합계	117(100)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시제한자들이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30명(27.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1년 미만은 24명(21.6%),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명(18.9%)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하고 있는 응답자는 4명(3.6%), 20년 이상은 2명(1.8%)이었다.

■ 표 3-12 ■ 응시제한자의 현 직장 근속기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1년 미만	24(21.6)
1~3년 미만	30(27.0)
3~5년 미만	30(27.0)
5~10년 미만	21(18.9)
10~20년 미만	4(3.6)
20년 이상	2(1.8)
합계	111(100)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현재의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인지 질문하였다. 첫 번째 직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명(39.3%), 두 번째 직장인 경우가 36명(30.8%)으로, 직장 이동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3-13). 현 직장이 세 번째 직장인 응답자는 23명(19.7%), 4번째 혹은 그 이상인 응답자는 12명(10.3%)이었다.

■ 표 3-13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직장 변동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첫 번째 직장	46(39.3)
2번째 직장	36(30.8)
3번째 직장	23(19.7)
4번째 혹은 그 이상	12(10.3)
합계	117(100)

응시제한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직장 변동(이직)을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3-13-1).

■ 표 3-13-1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직장 변동 차이(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직장 변동	첫 번째 직장	46(39.3)	321(29.9)	7.713
	두 번째 직장	36(30.8)	298(27.8)	
	세 번째 직장	23(19.7)	267(24.9)	
	네 번째 혹은 그 이상	12(10.3)	186(17.4)	
	합계	117(100)	1,072(100)	

* $p < .05$, ** $p < .01$, *** $p < .001$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0명(4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보통이 29명(24.8%), 매우 만족한다 18명(15.4%) 순으로 나타났다(표 3-14). 반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명(12.0%)과 6명(5.1%)로 나타났다.

■ 표 3-14 ■ 응시제한자의 직장 만족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만족한다	68(58.1)	매우 만족한다	18(15.4)
		만족한다	50(42.7)
보통이다	29(24.8)	보통이다	29(24.8)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불만족한다	20(17.1)	불만족한다	14(12.0)
		매우 불만족한다	6(5.1)
합계			117(100)

응시제한자의 직장 만족도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직장 만족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표 3-14-1). 응시제한자의 만족도($M=3.51$)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만족도($M=3.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응시제한자의 직장 만족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 표 3-14-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직장 만족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17$)		합격자($n=1,07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장 만족도	3.51	1.06	3.84	0.81	-3.237**

* $p<.05$, ** $p<.01$, *** $p<.001$

응답자들의 세부적인 직무관련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시제한자들은 본인이 현재 속한 직장 에서 ‘근무 시간’($M=3.59$), ‘물리적 근무 환경’($M=3.58$), ‘하고 있는 일의 직무 내용’($M=3.56$), ‘고용의 안정성’($M=3.56$)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표 3-15). ‘개인 라이프스타일과의 조화’($M=3.45$),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M=3.44$), ‘업무의 다양성’($M=3.41$) 등이었고, 다음으로는 ‘공공 봉사 및 공익 기여의 기회’($M=3.36$), ‘조직 문화와 분위기’($M=3.35$), ‘지적인 자극과 성취’($M=3.34$),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의 정도’($M=3.34$) 등이 뒤를 이었다. 여러 가지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인사체계(승진제도)’($M=2.85$)와 ‘임금 또는 급여’($M=2.97$)인데, 이 두 가지 항목만이 평균 3점 미만을 받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 표 3-15 ■ 응시제한자의 직무 만족도 세부 항목

구분	응시제한자(n=117)	평균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 내용)	3.56	
지적인 자극과 성취(Intellectual Challenge)	3.34	
업무의 다양성	3.41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의 정도	3.34	
임금 또는 급여	2.97	
복리후생	3.18	
직장의 대외적 평판 및 명성	3.32	
물리적 근무 환경(시설, 안전 등)	3.58	
조직 내 제도/행정 수립의 기회	3.26	
지속적인 직무 교육 또는 훈련	3.20	
근무 시간	3.59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	3.44	
개인 라이프스타일과의 조화	3.45	
고용의 안정성	3.56	
개인의 발전 가능성	3.02	
인간관계 및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3.50	
인사체계(승진제도)	2.85	
조직 문화와 분위기	3.35	
공공 봉사 및 공익 기여의 기회	3.36	

직무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과 관련하여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하였다(표 3-15-1).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 내용)’, ‘지적인 자극과 성취(intellectual challenge)’, ‘업무의 다양성’,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임금 또는 급여’, ‘직장의 대외적 평판 및 명성’, ‘물리적 근무 환경(시설, 안전 등)’, ‘고용의 안정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간관계 및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인사체계(승진제도)’, ‘조직 문화와 분위기’ 등 전체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응시제한자의 직무 만족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직무 만족도 보다 통계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특히 ‘개인의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적인 자극과 성취’, ‘인간관계 및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순으로 집단 간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업무의 다양성’,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 ‘임금 또는 급여’, ‘조직 문화와 분위기’ 등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장의 대외적 평판 및 명성’, ‘물리적 근무 환경(시설, 안전 등)’, ‘고용의 안정성’ 역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여러 직무 만족도 항목에서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유의하게 낮다는 것은 일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 한 개의 직무만족도 조항에서도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응시제한자가 직장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표 3-15-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세부 직무 만족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17)		합격자(n=1,07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 내용)	3.56	1.09	3.92	0.76	-3.436***
지적인 자극과 성취 (Intellectual Challenge)	3.34	1.22	3.79	0.90	-3.904***
업무의 다양성	3.41	1.17	3.76	0.89	-3.176**
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의 정도	3.34	1.15	3.82	0.88	-2.844**
임금 또는 급여	2.97	1.10	3.28	1.04	-2.968**
복리후생	3.18	1.12	3.32	1.05	-1.406
직장의 대외적 평판 및 명성	3.32	1.22	3.60	0.91	-2.466*
물리적 근무 환경(시설, 안전 등)	3.58	1.08	3.81	0.90	-2.170*
조직 내 제도/행정 수립의 기회	3.26	1.15	3.41	1.00	-1.372
지속적인 직무 교육 또는 훈련	3.20	1.15	3.39	0.98	-1.753
근무 시간	3.59	1.00	3.57	1.17	0.152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	3.44	1.18	3.50	1.21	-0.506
개인 라이프스타일과의 조화	3.45	1.24	3.55	1.19	-0.843
고용의 안정성	3.56	1.30	3.82	1.02	-2.029*
개인의 발전 가능성	3.02	1.25	3.65	0.96	-5.298***
인간관계 및 조직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3.50	1.10	3.87	0.89	-3.441***
인사체계(승진제도)	2.85	1.19	3.23	0.99	-3.393***
조직 문화와 분위기	3.35	1.19	3.65	1.00	-2.656**
공공 봉사 및 공익 기여의 기회	3.36	1.09	3.50	1.10	-1.364

* $p < .05$, ** $p < .01$, *** $p < .001$

전공-직무 일치도를 보기 위해 현재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법학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매우 관련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2명(35.9%), 조금 관련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5명(29.9%)였다(표 3-16). 하지만 40명(34.2%)의 응답자가 법학과 관련 없는 직무

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16 ■ 전공-직무 일치도(4점 척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법학과 관련 있다	77(65.8)	매우 관련 있다	42(35.9)
		조금 관련 있다	35(29.9)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법학과 관련 없다	40(34.2)	별로 관련 없다	20(17.1)
		전혀 관련 없다	20(17.1)
합계			117(100)

전공-직무 일치도를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응시제한자 집단(M=2.85)의 전공-직무 일치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3.82)의 전공-직무 일치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시제한자의 경우 법률과 관련한 직무를 찾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표 3-16-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전공-직무 일치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17)		합격자(n=1,07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공-직무 일치도	2.85	1.10	3.82	0.45	-9.545***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2025년을 기준으로 성과금과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연봉을 조사하였다.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응답값의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총 연 2,000만 원~4,000만 원 미만부터 연 12,000만 원 이상까지, 2,000만 원을 급간으로 하는 총 6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3-17). 응답자의 45.1%에 해당하는 50명의 응답자가 연 4,000~6,0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을 보고하였으며, 연 6,000~8,000만 원 미만이 22명(19.8%), 연 2,000~4,000만 원 미만이 18명(16.2%), 연 8,000~10,000만 원 미만이 15명(1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표 3-17 ■ 연소득(2025년 기준, 세전, 성과금과 상여금 포함)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n=111)
연 2,000~4,000만 원 미만	18(16.2)
연 4,000~6,000만 원 미만	50(45.1)
연 6,000~8,000만 원 미만	22(19.8)
연 8,000~10,000만 원 미만	15(13.5)
연 10,000~12,000만 원 미만	2(1.8)
연 12,000만 원 이상	4(3.6)
합계	111(100)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의 연소득 평균을 계산하였다. 응시제한자의 평균 소득은 약 5,976만 원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51.9%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3-17-1). 중앙값 역시 응시제한자는 5,000만 원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소득인 9,900만 원보다 4,900만 원 낮았다.

■ 표 3-17-1 ■ 연소득(2025년 기준, 세전, 성과금과 상여금 포함) 비교

단위: 만 원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응시제한자(n=111)	5,975.66	3,443.53	5,000	2,000	30,000
합격자(n=1,007)	11,504.63	7,797.98	9,900	2,500	120,000

다음으로는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였다(표 3-18). 응시제한자 중 가장 많은 46명(39.3%)이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3개월 이하의 시간이 걸렸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27명(23.1%)의 응답자들이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는 3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 바로 취업하였으나 또 다른 일부는 취업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응시제한자의 취업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3-18 ■ 응시제한자의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3개월 이하	46(39.3)
3~6개월	18(15.4)
6~9개월	7(6.0)
9~12개월	19(16.2)
1년 이상	27(23.1)
합계	117(100)

한편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을 비교해 보면(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6개월 실무수습 종료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물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응시제한자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응시제한자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53명(45.3%)이 취업에 이르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여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1,010명(94.2%)이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였고, 40명(3.7%)의 합격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으며, 그보다 오랜 기간 후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 표 3-18-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첫 직장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 비교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3개월 이하	46(39.3)	1,010(94.2)
3~6개월	18(15.4)	40(3.7)
6~9개월	7(6.0)	7(0.7)
9~12개월	19(16.2)	7(0.7)
1년 이상	27(23.1)	8(0.7)
합계	117(100)	1,072(100)

응시제한자가 구직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응시제한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항목은 ‘다른 지원자보다 많은 나이’였다(표 3-19). 복수응답으로 측정된 378개의 응답 중 86건(22.8%)이 취업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적 인식’이 19.3%를 차지하였다. ‘심리적 위축’이라는 응답이 63건(16.7%), ‘법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군이 부족한 데서 오는 어려움’을 고른 응답이 54건(14.3%)이었다.

■ 표 3-19 ■ 응시제한자의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복수 응답)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은 나이	86(22.8)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73(19.3)
심리적 위축	63(16.7)
법학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군 부족	54(14.3)
취업 준비 경험 부족	44(11.6)
법학전문석사학위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적 인식	43(11.4)
기타*	10(2.6)
없음	5(1.3)
합계	378(100)

※ 기타 의견으로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어려움과 강제로 응시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 타격, 수험기간 동안 갖추지 못한 사회적·직무적 감각, 취업 방향에 대한 고민, 법전문 학벌에 따른 취업 어려움, 법학석사학위의 애매함, 불확실성, 생계 및 가족 부양을 하면서 시험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변호사 자격 없음으로 인한 취업군 제한 등이 있다. 이외 직장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했거나 응시제한 이전에 취업에 성공해 구직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도 각각 1명씩 존재하였다.

4

교육 기간 중 요인

(1) 법학 교육 전반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수행과 관련된 지표로서 학부 졸업 연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졸업 연도를 조사함으로써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걸린 기간(수학 기간)을 확인하였다(표 3-20).

응시제한자들이 학부를 졸업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62명(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2년~5년 미만’ 47명(23.3%), ‘5년~10년 미만’ 39명(19.3%), ‘1년~2년 미만’ 31명(1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11.4%에 해당하는 23명의 경우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는데, 긴 수험 생활을 경험했거나, 직장을 다닌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0년~15년 미만 6.9%, 15년 이상 4.5%).

응시제한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기간은 정규 교육과정인 ‘3년’ 내에 졸업한 응답자가 111명(58.7%)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3년 초과~4년 이하’가 47명(24.9%), ‘4년 초과~5년 이하’가 22명(11.6%)을 차지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까지 6년을 초과한 응답자는 4.8%로 나타났다.

■ 표 3-20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소요 기간 및 로스쿨 수학 기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소요 기간	1년 미만	62(30.7)
	1년~2년 미만	31(15.4)
	2년~5년 미만	47(23.3)
	5년~10년 미만	39(19.3)
	10년~15년 미만	14(6.9)
	15년 이상	9(4.5)
	합계	202(100)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기간	3년	111(58.7)
	3년 초과 ~ 4년 이하	47(24.9)
	4년 초과 ~ 5년 이하	22(11.6)
	5년 초과 ~ 6년 이하	-
	6년 초과	9(4.8)
	합계	189(100)

※ 학부 졸업 연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졸업 연도를 부정확하게 응답한 사례들은 분석에서 제외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에 입학 소요 기간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0-1]를 보면 응시제한자 집단($M=3.65$)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2.71$)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소요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한편 로스쿨 수학 기간 역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응시제한자 집단의 평균 수학 기간($M=3.67$)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3.14$)보다 0.5년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학부 졸업 후 더 오랜 시간 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평균 한 학기 이상 늦게 졸업하는 등의 시간적 지연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 표 3-20-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소요 기간 및 수학 기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t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소요 기간	3.65	4.86	202	2.71	3.75	1,241	2.640**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기간	3.67	1.07	189	3.14	0.46	1,205	6.727***

* $p < .05$, ** $p < .01$, *** $p < .001$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직장경력을 살펴보면, 응시제한자의 111명(54.7%)이 직장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표 3-21).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의 64.2%가 직장 경험이 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응답하여, 응시제한자 집단에 직장 경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직장 경력 비교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없음	111(54.7)	801(64.2)
6개월 이내	14(6.9)	61(4.9)
6개월 ~ 1년	10(4.9)	61(4.9)
1년 이상 ~ 2년	20(9.9)	78(6.2)
2년 이상 ~ 4년	20(9.9)	115(9.2)
4년 이상 ~ 6년	10(4.9)	61(4.9)
6년 이상 ~ 10년	10(4.9)	45(3.6)
10년 이상	8(3.9)	26(2.1)
합계	203(100)	1,248(100)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동기를 살펴보면, 응시제한자들의 경우 ‘직업적 명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M= 4.11)이라는 답변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M= 3.81),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M= 3.75) 순으로 나타났다(표 3-2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동기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는데(표 3-22), 두 집단 모두 ‘직업적 명예’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꼽았고,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부모님, 친구 등 주변의 권유,’ ‘법학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 ‘법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의 동기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 항목에 대한 응답 정도는 응시제한자 집단(M=3.81)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3.36)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항목 역시 응시제한자 집단(M=3.75)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3.55)에 비하여 중요한 진학 동기로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시제한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크고,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22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동기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3.75	1.12	3.55	1.10	2.424*
법학에 적성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	3.70	1.13	3.53	1.12	1.939
법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3.41	1.16	3.31	1.15	1.160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	3.81	1.19	3.36	1.13	5.282***
부모님, 친구 등 주변의 권유	3.22	1.25	3.07	1.23	1.675
졸업 후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3.53	1.12	3.52	1.08	0.204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3.59	1.16	3.65	1.04	-0.706
직업적 명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4.11	0.91	4.00	0.91	1.627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본인이 가장 희망했던 진로를 질문한 결과 응시제한자 집단의 경우 변호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167명(82.3%)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23). 반면 검사(15명, 7.4%) 또는 판사(6명, 3.0%)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희망진로에 있어 두 집단의 응답 분포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의 경우 변호사를 희망한 경우가 807명(64.7%)으로 가장 많았지만 응시제한자보다 그 비율이 낮았으며, 검사(186명, 14.9%) 또는 판사(178명, 14.3%)를 희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23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희망 진로 비교(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희망 진로	변호사	167(82.3)	807(64.7)
	검사	15(7.4)	186(14.9)
	판사	6(3.0)	178(14.3)
	교수 및 연구자	8(3.9)	49(3.9)
	기타※	7(3.5)	28(2.2)
	합계	203(100)	1,248(100)
		χ^2	
		33.831***	

* $p < .05$, ** $p < .01$, *** $p < .001$

※ 기타: 학위 취득, 공직, 정계 입문, 사내 변호사, 세무사, 회사원, 경찰, 감사원, 공무원, 국제기구, 시민활동가, 개인 사업, 재판연구원 등

응답자들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두 집단 간 특별전형 입학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 표 3-24 ■ 특별전형 입학 여부 비교(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특별전형 입학 여부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11(5.4)	59(4.7)	0.182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다	192(94.6)	1,189(95.3)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응답자 70명에게 추가적으로 특별전형의 유형을 확인하였다(표 3-25).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신체적 배려’, ‘경제적 배려’, ‘사회적 배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다. 특별전형의 유형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 표 3-25 ■ 특별전형 유형 비교(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특별전형 유형	신체적 배려	-	8(14.0)	1.780
	경제적 배려	9(81.8)	39(68.4)	
	사회적 배려	2(18.2)	10(17.5)	
	합계	11(100)	57(10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휴학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시제한자의 24.6%에 해당하는 50명이 휴학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표 3-26). 응시제한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비중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응시제한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24.6%가 휴학을 경험한 데 반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은 휴학을 했었다는 비율이 8.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 표 3-26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경험	휴학했다	50(24.6)	104(8.3)	48.881***
	휴학하지 않았다	153(75.4)	1,144(91.7)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휴학 경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휴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시제한자 50명에게 휴학한 기간을 질문하였다(표 3-27). 29명(58.0%)의 응답자가 두 학기 동안 휴학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13명(26.0%)이 한 학기라고 응답했다. 3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도 8명(16.0%)로 나타났다. 휴학 기간에 있어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7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기간(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휴학 기간	빈도(비율 %)			
	1학기	13(26.0)	22(21.2)	0.797
	2학기	29(58.0)	66(63.5)	
	3학기	1(2.0)	1(1.0)	
	4학기 이상	7(14.0)	15(14.4)	
	합계	50(100)	104(100)	

* $p < .05$, ** $p < .01$, *** $p < .001$

휴학했던 사유를 질문한 결과, 응시제한자의 경우 ‘학업의 어려움’ 25건(36.2%)과 ‘경제적 어려움’ 15건(21.7%)의 두 가지 사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의 경우, 과반 이상(52.7%)이 기타를 선택하여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휴학 사유에 있어 응시제한자들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시제한자는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휴학한 경우가 합격자에 비해 더 많았으며, 합격자의 경우는 기타 사유로 휴학한 경우가 더 많았다.

■ 표 3-28 ■ 휴학 사유 비교(복수 응답)

빈도(각 항목당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휴학 사유	학업의 어려움	25(12.3)	30(2.4)	47.033***
	경제적 어려움	15(7.4)	13(1.0)	37.172***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8(3.9)	13(1.0)	10.289**
	인간관계(교수, 동료) 문제	5(2.5)	6(0.5)	9.119**
	기타*	16(7.9)	69(5.5)	1.753

* $p < .05$, ** $p < .01$, *** $p < .001$

※ 기타: 질병 및 건강상 사유, 출산 및 양육, 간병, 우울증 등 정신적 사유, 반수, 군 복무, 부모님의 사망 등 가족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부담, 진로탐색, 졸업 시험 탈락, 직장 문제 등

※ 본 문항은 복수응답을 허용한 경우로, 통계적 비교를 위해 각 항목을 독립적인 더미변수(Yes/No)로 처리한 후 각 항목에 따라 집단 간 비율의 차이를 분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학점을 자유 기입 방식으로 질문하였다(표 3-29, 4.3점 만점 기준). 응시제한자 중 76명(38.2%)이 3.0~3.3 미만의 학점을 받았으며, 43명(21.6%)이 2.7~3.0 미만의 학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41명(20.6%)의 응답자가 3.3~3.7 미만의 학점을, 15명(7.5%)의 응답자가 3.7~4.0 미만의 학점을 받았다. 4.0 이상의 학점을 받은 응답자와 2.0 미만의 학점을 받은 응답자가 각각 4명(2.0%)씩을 차지하였다.

■ 표 3-29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학점(4.3점 만점)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4.0~4.3	4(2.0)	180(14.4)
3.7~4.0 미만	15(7.5)	362(29.0)
3.3~3.7 미만	41(20.6)	427(34.2)
3.0~3.3 미만	76(38.2)	185(14.8)
2.7~3.0 미만	43(21.6)	72(5.8)
2.3~2.7 미만	13(6.5)	19(1.5)
2.0~2.3 미만	3(1.5)	1(0.1)
2.0 미만	4(2.0)	2(0.2)
합계	199(100)	1,248(100)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학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3-29-1).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응시제한자 집단($M=3.05$)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M=3.55$)보다 학점이 0.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9-1 ■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99)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학점	3.05	0.58	3.55	0.41	-11.636***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겪었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적성에 맞지 않음’, ‘경제적 어려움’,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표 3-30). 응시제한자들은 ‘학업의 양을 소화하기 어려웠다’(M= 3.36)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M= 3.15)에 있어 보통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커리큘럼의 제한 및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었다’(M= 2.84), ‘법학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M= 2.63), ‘교우 관계가 어려웠다’(M= 2.25)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정도에 응시제한자들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5개의 측정 항목 중 ‘커리큘럼의 제한 및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었던 4개 항목에서 응시제한자 집단의 평균값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 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어 ‘학업의 양을 소화하기 어려움’, ‘법학 적성 불일치’, ‘교우 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업의 양을 소화하기 어려움’, ‘법학이 적성에 맞지 않음’, ‘교우 관계가 어려움’ 등의 항목에 있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3-30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학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2.63	1.21	2.27	1.09	4.231***
학업의 양을 소화하기 어려웠다.	3.36	1.22	2.90	1.26	4.849***
커리큘럼의 제한 및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었다.	2.84	1.29	2.72	1.21	1.288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3.15	1.42	2.48	1.23	6.325***
교우 관계가 어려웠다.	2.25	1.18	2.04	1.06	2.321*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로 돌아가서 진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진로(법학전문대학원)를 선택할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응시제한자 중 106명(5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75명(36.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응시제한자의 과반수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다시 선택하겠다고 답하였다(표 3-31). 한편 잘 모르겠다의 응답도 10.8%로 나와, 진로에 대해 미정 상태에 있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31 ■ 전공 충성도(법학전문대학원 진로 재선택 여부)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진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할 것이다	106(52.2)	매우 그렇다	50(24.6)
		그렇다	56(27.6)
진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75(36.9)	그렇지 않다	34(16.7)
		전혀 그렇지 않다	41(20.2)
잘 모르겠다	22(10.8)	잘 모르겠다	22(10.8)
합계			203(100)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로 돌아갔을 때 동일 진로(법학전문대학원)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과 응시제한자 집단의 응답 패턴을 비교해 보니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합격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데 긍정적인 응답자가 1,018명(88.2%)이고, 부정적인 응답자가 137명(11.8%)에 불과하여 응시제한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1-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 전공 충성도(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전공 충성도	매우 그렇다	50(27.6)	561(48.6)	139.180***
	그렇다	56(30.9)	457(39.6)	
	그렇지 않다	34(18.8)	102(8.8)	
	전혀 그렇지 않다	41(22.7)	35(3.0)	
합계		181(100)	1,155(100)	

* $p < .05$, ** $p < .01$, *** $p < .001$

※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115명(응시제한자 22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의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

(2) 법학 교육 및 학업

응답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22명의 응시제한자가 ‘불만족’(34.0%)과 ‘매우 불만족’(26.1%)을 선택하여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2). 교육 만족에 있어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시제한자도 63명(31.0%)이었으며,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10% 미만이었다.

■ 표 3-32 ■ 교육 만족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18(8.9)	매우 만족한다	1(0.5)
		만족한다	17(8.4)
보통이다	63(31.0)	보통이다	63(31.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	122(60.1)	불만족한다	69(34.0)
		매우 불만족한다	53(26.1)
합계			203(100)

교육 만족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간의 교육 만족도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한 결과, 응시제한자의 교육 만족도(M=2.23)는 합격자의 교육 만족도(M=3.19)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2-1).

■ 표 3-32-1 ■ 교육 만족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만족도	2.23	0.95	3.19	0.96	-13.162***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표 3-33), 응시제한자들은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내용’(M= 2.35), ‘교수진의 능력과 열의’(M= 2.34), ‘교육 및 복지 시설’(M= 2.75) 등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프로그램 세부 만족도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한 결과, 세 가지 항목 모두 응시제한

자의 만족도 평균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만족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내용'에 있어 만족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표 3-33 ■ 교육 프로그램 세부 만족도 비교(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내용	2.35	0.97	3.23	0.96	-12.039***
교수진의 능력과 열의	2.34	1.04	3.16	1.09	-10.046***
교육 및 복지 시설	2.75	1.09	3.24	0.98	-6.1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응시제한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진로 관련 지원제도'(M= 2.23), '변호사시험 준비 지원 프로그램'(M= 2.22), '선후배 멘토링'(M= 2.37), '장학금 제도'(M= 2.94), '개인상담(학업 및 심리)'(M= 2.22, 2.19) 등 6개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표 3-34).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항목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준비 지원 프로그램', '선후배 멘토링', '학업 개인상담' 항목에 대한 두 집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표 3-34 ■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t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진로 관련 지원제도	2.23	1.05	198	2.77	1.01	1,213	-6.965***
변호사시험 준비 지원 프로그램	2.22	1.03	199	3.21	1.12	1,213	-11.686***
선후배 멘토링	2.37	1.02	196	3.07	1.06	1,211	-8.593***
장학금 제도	2.94	1.22	194	3.35	1.19	1,182	-4.423***
개인상담(학업)	2.22	0.99	196	2.86	0.98	1,190	-8.413***
개인상담(심리)	2.19	1.05	193	2.72	0.99	1,167	-6.823***

* $p < .05$, ** $p < .01$, *** $p < .001$

※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분석에서 제외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암기, 분석, 통합, 판단, 응용, 공감과 관련한 활동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은 암기(M= 3.47), 분석(M= 3.53), 통합(M= 3.42), 판단(M= 3.36), 응용(M= 3.33)에 대해 보통 이상의 점수를 주었지만, 공감(M= 2.92)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표 3-35).

■ 표 3-35 ■ 교수학습의 중점 방향

구분		평균
		응시제한자(n=203)
암기:	수업 내용이나 읽기 자료에 제시된 사실, 방법, 개념, 조문, 학설, 판례 등을 외워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7
분석:	특정 사건이나 상황, 판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그 구성 요소를 고찰하는 등 아이디어나 경험, 이론 및 법리의 기본 요소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3.53
통합:	생각이나 정보, 경험, 사실 관계를 한데 모으고 정리함으로써, 이를 더 깊이 있는 새로운 해석이나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3.42
판단:	정보나 방법, 학설, 판례 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증거가 어떻게 수집·해석됐는지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도록 하였다	3.36
응용:	학습한 이론과 개념, 판례를 실제 사례에 대입하거나,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도록 하였다	3.33
공감:	인권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였다	2.92

교수학습의 중점 방향에 대한 평가에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 항목 중 통합, 판단, 응용, 공감 등 네 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35-1). 4개 항목 모두 응시제한자의 평균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공감’ 항목에 있어 응시제한자(M= 2.92)와 변호사시험 합격자(M= 3.59)의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5-1 ■ 교수학습의 중점 방향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암기	3.47	1.03	3.53	0.83	-0.772
분석	3.53	1.45	3.57	0.99	-0.427
통합	3.42	1.69	3.68	1.22	-2.067*
판단	3.36	1.68	3.65	1.27	-2.333*
응용	3.33	1.61	3.67	1.25	-2.912**
공감	2.92	1.80	3.59	1.57	-5.005***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주관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제시된 각 분야에 대한 본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은 17개의 세부 항목 중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M= 2.64),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M= 2.51), ‘인적 네트워크 형성’(M=2.34)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표 3-36). 반면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M= 1.86), ‘리더십’(M= 1.87),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M= 1.92)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응답자들은 법학 지식 및 역량의 향상 면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다룬 항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6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경험의 주관적 성과

구분	응시제한자(n=203)	평균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	2.64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2.51	
명확하고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	2.32	
명확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2.07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2.31	
법률 연구(legal research) 역량	2.32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1.86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1.92	
인적 네트워크 형성	2.34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	2.17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2.31	
다른 출신 배경(지역, 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	2.08	
리더십	1.87	
복잡한 현실문제 해결 능력	2.19	
명확한 진로 목표 설정	2.14	
개인적 가치관 및 윤리 의식 정립	2.03	
지역사회 복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1.95	

주관적 교육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 검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시제한자들의 평균값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M= 2.17),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M= 2.64),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M= 2.51)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응시제한자의 평균이 합격자 집단의 평균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6-1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 주관적 교육 성과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	2.64	0.76	3.08	0.67	-8.563***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2.51	0.82	2.95	0.74	-7.697***
명확하고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	2.32	0.91	2.70	0.78	-6.326***
명확하고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2.07	0.84	2.24	0.83	-2.618**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2.31	0.90	2.69	0.79	-6.278***
법률 연구(legal research) 역량	2.32	0.84	2.58	0.81	-4.181***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1.86	0.79	2.18	0.82	-6.257***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1.92	0.85	2.23	0.80	-4.843***
인적 네트워크 형성	2.34	0.90	2.75	0.82	-6.090***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	2.17	0.80	2.89	0.77	-12.006***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2.31	0.95	2.70	0.83	-6.123***
다른 출신 배경(지역, 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	2.08	0.89	2.34	0.88	-3.829**
리더십	1.87	0.80	2.16	0.81	-4.718***
복잡한 현실문제 해결 능력	2.19	0.89	2.51	0.82	-4.843***
명확한 진로 목표 설정	2.14	0.88	2.54	0.86	-5.993***
개인적 가치관 및 윤리 의식 정립	2.03	0.86	2.40	0.82	-5.699***
지역사회 복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1.95	0.87	2.24	0.83	-4.420***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스스로 교육에 참여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였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 토론에 참여하거나 과제를 작성하였다’(M= 2.40)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였다’(M=1.82)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3-37).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참여 정도에서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수업 외 시간에 학교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우들과 함께 활동하였다’(M=1.89)는 항목에서 응시제한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학우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표 3-37 ■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간 교육 참여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하였다	1.82	0.98	1.82	0.93	-0.039
교수의 기준이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였다	1.88	0.94	1.79	0.96	1.169
수업 자료(교과서 등)를 읽지 않거나 과제(숙제)를 해오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2.18	1.07	2.13	1.07	0.600
다양한 관점(지역,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치적 견해 등)에서 수업 토론에 참여하거나 과제를 작성하였다	2.40	1.20	2.35	1.12	0.598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1.94	1.08	1.95	1.01	-0.123
수업 외 시간에 학교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우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1.89	0.97	2.20	0.99	-4.181***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질문하였다(복수 응답). 응시제한자들은 ‘교내 동아리 및 학회 활동’(33.0%), ‘학내 리걸 클리닉’(17.0%),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변론경연대회’(10.4%), ‘학생회 집행부 또는 임원’(8.4%)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8).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시민단체’ 활동과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변론경연대회’였다. ‘시민단체’ 활동의 경우 응시제한자 집단의 응답 비율이 16명(4.1%)으로 합격자 집단(26명, 1.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변론경연대회’의 경우 합격자 집단의 참여 비율이 355명(14.4%)으로 응시제한자 집단(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38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참여 활동(복수 응답)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법학 학술지(Law Review)	32(8.1)	187(7.6)
논문공모 응시	15(3.8)	69(2.8)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변론경연대회	41(10.4)	355(14.4)
학내 리걸 클리닉(무료 법률 상담)	67(17.0)	448(18.2)
학생회(집행부 또는 임원)	33(8.4)	209(8.5)
교내 동아리 또는 학회 활동	130(33.0)	811(32.9)
법조 동문회	22(5.6)	170(6.9)
시민단체	16(4.1)	26(1.1)
정당	2(0.5)	5(0.2)
없음	36(9.1)	184(7.5)
합계	394(100)	2,464(100)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각 항목에 1주일(7일) 동안 할애한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0시간부터 주 1~7시간, 주 8~14시간과 같이 7시간의 급간을 두어 주 35시간 이상까지 총 7개의 항목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후 각 급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1주일에 각 활동에 할애한 평균적인 생활 시간을 구하였다. 응시제한자의 경우 1주일 평균 25시간 이상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자발적인 법학 공부’에 할애하였으며, ‘수업 관련 자료 읽기’에 약 21시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난다. 1주일 동안 ‘휴식 및 사교활동’에 쓴 시간은 약 7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시간 51분의 시간을 ‘동거 부양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 돌봄’에 활용했으며, ‘유급 근로(법률과 무관한 직종)’에는 2시간 46분, ‘유급 근로(법률 관련 직종)’에는 1시간 42분을 할애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생활 시간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검정을 한 결과 총 12개 항목 중 5개의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39). 응시제한자 집단은 ‘동아리, 교내 학회, 학생회’(M= 5시간 13분), ‘유급 근로(법률 관련 직종)’(M= 1시간 42분), ‘유급 근로(법률과 무관한 직종)’(M= 2시간 46분), ‘동거 부양가족 돌봄(부모, 자녀, 배우자 등)’(M= 5시간 51분), ‘등하교(통학) 시간(운전, 도보 등)’(M= 5시간 44분)에 있어 합격자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중에서도 ‘동거 부양가족 돌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응시제한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와 비슷한 시간을 공부에 할애했지만, 동아리와 학생회, 유급 근로, 돌봄노동, 통학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볼 수 있다.

■ 표 3-39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생활 시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업 관련 자료 읽기 (지정된 교과서 및 기타 강의 자료 등)	20시간 56분	11시간 21분	19시간 35분	11시간 48분	1.519
(수업 이수율의 일환이 아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자발적인 법학 공부	25시간 1분	11시간 45분	24시간 11분	11시간 38분	0.954
(과제가 아닌) 자발적인 독서(개인 소양 이나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한)	4시간 50분	7시간 56분	3시간 46분	6시간 5분	1.835
(의무 과정이 아닌) 자발적 공익 법률 봉사(pro bono)	2시간 2분	5시간 14분	1시간 29분	4시간 4분	1.472
동아리, 교내 학회, 학생회	5시간 13분	6시간 43분	3시간 52분	4시간 22분	2.745**
유급 근로(법률 관련 직종)	1시간 42분	6시간 31분	0시간 41분	3시간 47분	2.182*
유급 근로(법률과 무관한 직종)	2시간 46분	7시간 50분	1시간 1분	4시간 1분	3.112**
운동 또는 건강 관리	4시간 52분	5시간 36분	4시간 59분	4시간 31분	-0.313
휴식 및 사교 활동(TV 시청, 모임 등)	7시간 38분	6시간 48분	8시간 32분	6시간 32분	-1.791
동거 부양가족 돌봄 (부모, 자녀, 배우자 등)	5시간 51분	9시간 42분	1시간 59분	5시간 36분	5.526***
등하교(통학) 시간(운전, 도보 등)	5시간 44분	5시간 38분	4시간 16분	3시간 47분	3.602***
지역사회 단체 활동 (정치, 종교 단체 등)	0시간 50분	5시간 20분	0시간 31분	2시간 32분	1.656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강의 수강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을 알아보았다. 응시제한자는 1학년 때 평균 5시간 23분, 2학년 때 6시간 4분, 3학년 때 7시간 22분을 학습시간에 할애하였다. 일일 학습 시간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1~3학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40). 즉 하루 학습 시간에 있어 두 집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표 3-40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하루 평균 학습 시간 차이(통계 분석)

학년	응시제한자			합격자			t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1학년	5시간 23분	3시간 5분	194	5시간 15분	2시간 46분	1,199	0.578
2학년	6시간 4분	2시간 49분	192	5시간 54분	2시간 43분	1,197	0.781
3학년	7시간 22분	2시간 51분	191	7시간 39분	2시간 39분	1,191	-1.285

* $p < .05$, ** $p < .01$, *** $p < .001$

※ 하루 학습 시간을 물었음에도 24시간 이상으로 답한 사례들은 결측 처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설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수강하였다면 어떠한 형태의 강의를 들었는지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97.0%) 응답자가 사설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불과 6명(3.0%)만이 사설 강의 수강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표 3-41). 강의 수강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온라인 강의였으며(57.6%), 다음으로 학원 현장강의(35.7%)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몇 년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응시제한자들은 사설 강의를 수강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역시 1,121명(89.8%)이 사설 강의 수강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시제한자들의 사설 강의 수강 경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컸을 것임을 시사한다.

■ 표 3-41 ■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 강의 수강 여부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사설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		6(3.0)	127(10.2)
사설 강의를 수강했다		197(97.0)	1,121(89.8)
합계		203(100)	1,248(100)
사설 강의 수강 유형 (복수 응답)	온라인 강의	189(57.6)	1,107(72.6)
	학원 현장 강의	117(35.7)	268(17.6)
	개인 과외	14(4.3)	16(1.0)
	기타	2(0.6)	7(0.5)
	합계	328(100)	1,525(100)

(3) 상호작용 및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교수 및 학우들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상호작용에 관한 항목 7개에 대한 응시제한자의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개인적 가치관이 매우 다른 학우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M= 3.10), ‘교수 또는 상담사와 향후 진로 계획이나 구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M= 3.04) 등의 항목에서 가장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업 외 시간에 교수에게 수업 관련 질문을 하였다’(M= 2.49), ‘수업 시간 외에 타인(학우, 가족 등)과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였다’(M= 2.52)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교수 및 학우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는데,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응시제한자들은 통계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교수와 이메일로 소통하였다’(M= 2.85), ‘학업 성취도에 대해 교수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피드백을 받았다’(M= 2.66), ‘교수 또는 상담사와 향후 진로 계획이나 구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M= 3.04), ‘수업 시간 외에 타인(학우, 가족 등)과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였다’(M= 2.52) 등의 항목에서 응시제한자 집단의 응답값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 표 3-42 ■ 교수 및 학우와의 상호작용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수와 이메일로 소통하였다	2.85	0.78	2.56	0.75	5.042***
수업 외 시간에 교수에게 수업 관련 질문을 하였다	2.49	0.71	2.39	0.76	1.804
학업 성취도에 대해 교수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피드백을 받았다	2.66	0.79	2.33	0.74	5.785***
교과 과정 외의 활동(동아리, 교내 학회, 학생회 등)을 교수와 함께 하였다	2.82	0.88	2.77	0.85	0.852
교수 또는 상담사와 향후 진로 계획이나 구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04	0.81	2.82	0.81	3.656***
수업 시간 외에 타인(학우, 가족 등)과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2.52	0.92	2.36	0.92	2.296*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개인적 가치관이 매우 다른 학우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3.10	0.87	3.10	0.87	-0.098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수와의 만남과 연락, 도움 여부, 관심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단어는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쌍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시제한자들은 세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은 교수에 대하여 ‘만남/연락이 쉽다’기 보다는 ‘만남/연락이 어렵다’(M= 2.46), ‘기꺼이 도움이 되어 준다’기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M= 2.46), ‘공감해준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M= 2.32)고 응답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교수와의 관계에서 친근함을 느끼지 못함에 조금 더 가깝고, 도움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친밀도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3).

■ 표 3-43 ■ 교수와의 주관적인 친밀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남/연락이 어렵다 - 만남/연락이 쉽다	2.46	1.15	3.02	1.15	-6.433***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기꺼이 도움이 되어 준다	2.46	1.17	3.30	1.15	-9.532***
무관심하다 - 공감해준다	2.32	1.07	3.12	1.16	-9.203***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느낀 학우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근함, 협력, 응원, 소속감과 같은 단어를 통하여 주관적 느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단어들은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시제한자들은 학우들과의 '친근함'에 있어 $M = 3.32$ 라고 응답했으며, '경쟁적 - 협력적 관계'에 있어 $M = 2.78$ 정도로 경쟁적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꼈다. '서로 응원한다'는 단어에서는 $M = 3.11$ 로 보통보다는 서로 응원한다에 조금 더 가까웠으며, '고립감과 소속감'의 감정에 대해서는 $M = 2.89$ 로 고립감을 느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학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표 3-44). 특히 '서로 응원하지 않는다 - 응원한다'의 항목에서 응시제한자($M = 3.11$)는 합격자($M = 3.83$)에 비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고립감을 느낀다 - 소속감을 느낀다'의 항목에서도 응시제한자($M = 2.89$)와 합격자($M = 3.56$)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응시제한자들이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4 ■ 친구와의 주관적 친밀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근하지 않다 - 친근하다	3.32	1.27	3.80	1.06	-5.108***
경쟁적이다 - 협력적이다	2.78	1.42	3.26	1.23	-4.994***
서로 응원하지 않는다 - 서로 응원한다	3.11	1.38	3.83	1.04	-7.107***
고립감을 느낀다 - 소속감을 느낀다	2.89	1.25	3.56	1.07	-7.197***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행정직원과의 주관적 친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움 여부, 배려심, 융통성 등의 단어를 통해 응답자의 의견을 측정하였다(표 3-45). 각각의 단어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시제한자들은 세 항목에서 평균이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나 행정직원과의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응시제한자들은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M= 2.83), ‘사려 깊다’기 보다는 ‘배려심이 없다’(M= 2.76), ‘융통성이 있다’기 보다는 ‘융통성이 없다’(M= 2.73)고 응답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응시제한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행정직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 표 3-45 ■ 행정직원과의 주관적 친밀도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도움이 된다	2.83	1.31	3.20	1.14	-3.724***
배려심이 없다 - 사려 깊다	2.76	1.16	3.11	1.02	-4.101***
융통성이 없다 - 융통성이 있다	2.73	1.17	3.01	1.02	-3.250**

* $p<.05$, ** $p<.01$, *** $p<.001$

(4) 경제적 여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3년동안 적지 않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 생활을 원만하게 보내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다.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령한 장학금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시제한자 중 119명(58.6%)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장학금 유형 중 ‘소득분위 등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비중(68건, 33.5%)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성적우수 장학금’(38건, 18.7%), ‘기타 장학금’(31건, 15.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학금으로 동문회 장학금, 학생회 임원에게 주는 장학금, 지역기반 장학금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911명(73.0%)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545건, 43.7%)가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분위 등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장학금’을 수령(432건,

34.6%)하였고 ‘기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150건(12.0%) 있었다.

장학금 수령과 관련하여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46). 합격자의 장학금 수령 비율은 응시제한자 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장학금의 종류별로 살펴볼 때에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비율이 응시제한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장학금과 기타 장학금 수령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46 ■ 장학금 수령 비교(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빈도(비율 %)
장학금을 받았음		119(58.6)	911(73.0)	17.520***
장학금을 받지 않았음		84(41.4)	337(27.0)	
합계		203(100)	1,248(100)	
장학금 유형 (복수 응답)	성적우수 장학금	38(18.7)	545(43.7)	45.222***
	소득분위 등 경제적 형편에 따른 장학금	68(33.5)	432(34.6)	0.097
	기타 장학금※	31(15.3)	150(12.0)	1.691

* $p < .05$, ** $p < .01$, *** $p < .001$

※ 기타: 동문회 장학금, 학생회(봉사) 장학금, 지역 출신 및 주소지 지자체 장학금, 조교 및 근로 장학금, 외부 장학재단 장학금, 기업 장학금, 기혼자 장학금 등

※ 수령한 장학금 유형은 복수응답을 허용한 경우로, 통계적 비교를 위해 각 항목을 독립적인 더미변수(Yes/No)로 처리한 후 각 항목에 따라 집단 간 비율의 차이를 분석

응답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한 방법을 7가지로 질문하였는데, 응시제한자의 비용 조달 방법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가족, 친족, 배우자로부터 지원’ 145건(71.4%)이었고, ‘한국장학재단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84건(41.4%)과 ‘본인의 예금 및 자산’ 71건(35.0%)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표 3-47).

학비조달 경로에서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응시제한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장학금’(30.1%)이나 ‘교외 및 민간 장학금’(3.9%)을 받았다는 비율이 합격자에 비해 더 낮았다. 반면 응시제한자들은 ‘한국장학재단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41.4%)과 ‘금융권 대출’(15.9%)을 받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기 중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15.8%)을 통해 조달했다는 비율 역시 합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47 ■ 학비 조달 경로(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빈도(비율 %)
			χ^2
법학전문대학원 교내 장학금	61(30.1)	566(45.4)	16.663***
교외 및 민간 장학금	8(3.9)	102(8.2)	4.4636*
한국장학재단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	84(41.4)	379(30.4)	9.743**
금융권 대출	49(24.1)	198(15.9)	8.459**
본인의 예금 및 자산	71(35.0)	374(30.0)	2.059
학기 중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유급 인턴십 포함)	32(15.8)	112(9.0)	9.003**
가족, 친족, 배우자로부터 지원	145(71.4)	935(74.9)	1.118

* $p < .05$, ** $p < .01$, *** $p < .001$

※ 수렴한 장학금 유형은 복수응답을 허용한 경우로, 통계적 비교를 위해 각 항목을 독립적인 더미변수(Yes/No)로 처리한 후 각 항목에 따라 집단 간 비율의 차이를 분석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직전 6개월 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근로를 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 보았는데, 응시제한자 59명(29.1%)의 응답자가 근로를 했다고 응답했다(표 3-48). 반면 합격자 집단이 근로한 경우는 64명(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여부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검정을 수행한 결과,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근로를 경험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표 3-48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여부	근로 하였다	59(29.1)	64(5.1)	128.935***
	근로하지 않았다	144(70.9)	1,184(94.9)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 간 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응시제한자 59명, 합격자 64명)를 대상으로, 근로할 당시 1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질문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주 12시간 10분, 두 번째 시험에서 주 15시간 43분, 세 번째 시험에서 주 18시간 2분간 근로했다고 응답했다. 1주일 당 근로시간에서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검정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의 근로시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번째~5번째 시험 모두 응시제한자의 근로시간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표 3-49 ■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 간 근로 시간(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t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1번째 시험	12시간 10분	13시간 32분	58	11시간 24분	13시간 13분	64	0.320
2번째 시험	15시간 43분	14시간 52분	57	13시간 15분	15시간 41분	24	0.672
3번째 시험	18시간 2분	14시간 52분	53	13시간 51분	14시간 22분	13	0.869
4번째 시험	19시간 7분	16시간 18분	46	13시간 23분	12시간 23분	8	0.945
5번째 시험	16시간 26분	15시간 5분	39	10시간 0분	10시간 0분	3	0.722

* $p < .05$, ** $p < .01$, *** $p < .001$

변호사시험 응시 전 근로를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응시제한자 중 근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다수인 54명(91.6%)이 근로로 인해 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네 개의 척도별로 살펴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도 없었음을 볼 때,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간 근로 경험은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표 3-50 ■ 근로 경험이 시험 준비에 미친 부정적 영향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근로 활동으로 인해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	54(91.6)	매우 그렇다	29(49.2)
		그렇다	25(42.4)
근로 활동으로 인해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5(8.5)	그렇지 않다	5(8.5)
		전혀 그렇지 않다	-
합계			59(100)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 조달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응시제한자 125명(61.6%)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1).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에서는 529명(42.4%)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조달을 위한 대출 여부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검정을 한 결과 응시제한자들이 대출을 받은 비율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 표 3-51 ■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조달을 위한 대출 차이(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조달을 위한 대출 여부	대출을 받았다	125(61.6)	529(42.4)	25.967***
	대출을 받지 않았다	78(38.4)	719(57.6)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발생한 대출금액을 조사하였는데, 1,000만 원 미만부터 6,000만 원 이상까지 1,000만 원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대출 경험이 있는 응시제한자 중 절반(49.6%)에 가까운 응답자가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의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3,000만 원~4,000만 원이 22명(17.6%)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2,000만 원~3,000만 원이 21명(16.8%), 4,000만 원~5,000만 원이 19명(15.2%) 순으로 나타났다. 6,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도 25명(20.0%)이 있다.

■ 표 3-52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액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1,000만 원 미만	7(5.6)	
1,000만 원~2,000만 원 미만	17(13.6)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21(16.8)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22(17.6)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19(15.2)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14(11.2)	
6,000만 원 이상	25(20.0)	
합계	125(100)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액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하였는데, 대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각 구간의 중앙값을 응답자의 대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의 평균값이 약 3,868만 원, 합격자의 평균값이 약 2,912만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표 3-52-1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액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25)		합격자(n=52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액	3,868.00	1,873.14	2,912.10	1,728.86	5.470***

* $p < .05$, ** $p < .01$, *** $p < .001$

※ 각 구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급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균 비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시점에 교육 관련 대출금이 얼마였는지 질문하였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미만부터 6,000만 원 이상까지 1,000만 원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50.4%)가 졸업 시점에 1,000만 원~4,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53). 구체적으로 3,000만 원~4,000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20.0%)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2,000만 원~3,000만 원이 22명(17.6%), 1,000만 원~2,000만 원이 16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6,000만 원 이상 대출금이 남아있다는 응답자도 28명(22.4%)이 있다.

■ 표 3-53 ■ 졸업 시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금액

구분	응시제한자(n=125)
1,000만 원 미만	8(6.4)
1,000만 원~2,000만 원 미만	16(12.8)
2,000만 원~3,000만 원 미만	22(17.6)
3,000만 원~4,000만 원 미만	25(20.0)
4,000만 원~5,000만 원 미만	14(11.2)
5,000만 원~6,000만 원 미만	12(9.6)
6,000만 원 이상	28(22.4)
합계	125(100)

빈도(비율 %)

졸업 시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금액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의 평균값이 약 3,852만 원, 합격자의 평균값이 약 2,976만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갖고 졸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표 3-53-1 ■ 졸업 시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금액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125)		합격자(n=52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졸업 시점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금액	3,852.00	1,918.74	2,976.37	1,793.27	4.844***

* $p < .05$, ** $p < .01$, *** $p < .001$

※ 각 구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급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균 비교

현재(조사시점 기준)에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관련하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남아있는지 질문하였는데, 대출 경험이 있는 응시제한자의 상당수가 대출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응답했다. 95명(76.0%)의 응답자는 현재에도 대출금액이 남아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합격자 집단에서는 313명(59.2%)이 대출금이 남아있었다.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한 결과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대출금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4).

■ 표 3-54 ■ 현재 남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현재 남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관련 대출	대출금 있음	95(76.0)	313(59.2)	12.207***
	대출금 없음	30(14.0)	216(40.8)	
	합계	125(100)	529(100)	

* $p < .05$, ** $p < .01$, *** $p < .001$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7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복수응답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대출이 있는 응시제한자들은 ‘취업 후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겠다는 응답이 78건(4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환유예’ 27건(15.1%), ‘가족, 친족, 배우자로부터 지원’ 25건(14.0%)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55).

■ 표 3-55 ■ 대출 상환 계획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정부의 상환 지원 프로그램	22(12.3)
다른 대출을 통한 상환	18(10.1)
상환 유예	27(15.1)
직장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프로그램	3(1.7)
가족, 친족, 배우자로부터 지원	25(14.0)
취업 후 본인의 소득	78(43.6)
기타	6(3.4)
합계	179(100)

변호사시험 당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응시제한자 중 37명(18.2%)가 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133명(10.7%)가 기혼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56).

■ 표 3-56 ■ 변호사시험 당시 혼인상태 차이(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변호사시험 당시 혼인상태	혼인 상태였다	37(18.3)	133(10.7)	9.769**
	혼인 상태가 아니었다	165(81.7)	1,112(89.3)	
	합계	202(100)	1,245(1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의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응시제한자 중 30명(14.8%)의 응답자에게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75명(6.0%)이 유자녀였다.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변호사시험 준비 시기의 자녀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7 ■ 변호사시험 당시 자녀 유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빈도(비율 %)
변호사시험 당시 자녀 유무	자녀가 있었다	30(14.8)	75(6.0)	19.999***
	자녀가 없었다	173(85.2)	1,173(94.0)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출산과 양육이 학업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30명 중 26명(86.7%)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10.0%)에 불과했다.

■ 표 3-58 ■ 자녀 출산과 양육이 변호사시험에 미친 영향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구분	응시제한자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10.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10.0)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3.3)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3.3)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6(86.7)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4(46.7)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40.0)
합계			30(100)

(5) 개인 역량

응답자의 개인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학적성시험(LEET) 시험의 표준점수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다수가(79.8%) 100~130점 사이의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105 이상 110 미만’이 38명(18.7%), ‘120 이상 125 미만’ 32명(15.8%), ‘115 이상 120 미만’ 28명(1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표 3-59).

■ 표 3-59 ■ 응시제한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LEET 표준점수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응시제한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LEET 표준점수	90 미만	4(2.0)	9(0.7)
	90 이상 95 미만	4(2.0)	21(1.7)
	95 이상 100 미만	13(6.4)	63(5.1)
	100 이상 105 미만	24(11.8)	99(7.8)
	105 이상 110 미만	38(18.7)	122(9.8)
	110 이상 115 미만	19(9.4)	124(9.9)
	115 이상 120 미만	28(13.8)	151(12.1)
	120 이상 125 미만	32(15.8)	184(14.7)
	125 이상 130 미만	21(10.3)	182(14.6)
	130 이상 135 미만	7(3.4)	137(11.0)
	135 이상 140 미만	7(3.4)	78(6.3)
	140 이상 145 미만	4(2.0)	45(3.6)
	145 이상	2(1.0)	33(2.6)
	합계	203(100)	1,248(100)

LEET 시험 표준점수에서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평균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구간의 중앙값을 응답자의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3-59-1).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의 평균 점수는 약 115점,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약 120점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표 3-59-1 ■ LEET 표준 점수 비교(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EET 표준 점수 비교	114.84	12.41	119.98	13.24	-5.166***

* $p < .05$, ** $p < .01$, *** $p < .001$

응답자의 대학 학부과정 학점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가 만점 기준(4.0/4.3/4.5/100점)을 한 가지 선택한 후 자신의 학점을 적을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응답값의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0.5점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1,451명 중 36명(2.5%)이 4.0 만점, 599명(41.3%)이 4.3 만점, 801명(55.2%)이 4.5 만점, 15명(1.0%)이 100점 만점 스케일을 선택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4.5 스케일($M = 3.88$, $SD = 0.40$)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z-score(표준점수) 공식을 이용하여 모든 응답자의 학점을 4.5점 만점 스케일로 변환하였으며, 이때 응답자의 학점이 최대값이 4.5를 넘지 않도록 보정하여 전체 응답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GPA_{new} = \left(\frac{x - m}{sd} \right) \times \left(\frac{4.5 - m}{z_{\max}} \right) + 3.88$$

응시제한자의 학부 학점은 4.5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4.0~4.5 이하라는 응답이 84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4.0 미만인 74명(36.5%), 3.0~3.5 미만 37명(18.2%) 순으로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좋은 학점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응답자의 학부 학점은 대체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3-60 ■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부 평균 학점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4.0~4.5 이하	84(41.4)	631(50.8)
3.5~4.0 미만	74(36.5)	458(36.9)
3.0~3.5 미만	37(18.2)	120(9.7)
2.5~3.0 미만	7(3.4)	30(2.4)
2.5 미만	1(0.5)	4(0.3)
합계	203(100)	1,243(100)

학부 학점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M= 3.80)의 학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M= 3.89)의 학점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 표 3-60-1 ■ 학부 평균 학점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부 평균 학점	3.80	0.42	3.89	0.38	-3.378***

* $p < .05$, ** $p < .01$, *** $p < .001$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시제한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성장한 지역을 질문하였는데, 서울 출신이라는 응답이 85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 지역 출신(19명, 9.4%)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과반(51.3%)을 차지하였다(표 3-61). 이 외에 비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가 52명(25.6%), 비수도권 시 지역이 39명(19.2%)의 분포를 보였으며, 군·읍·면 지역 및 해외 출신은 각각 4명(2.0%)으로 집계되었다.

■ 표 3-61 ■ 출신지역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서울	85(41.9)
인천·경기	19(9.4)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시	52(25.6)
비수도권 시(천안, 전주, 포항 등)	39(19.2)
군·읍·면 지역	4(2.0)
해외	4(2.0)
합계	203(100)

출신 지역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는데, 서울·인천·경기 출신을 ‘수도권’으로, 광역시·비수도권 시·군읍면 등의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코딩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출신 지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61-1).

■ 표 3-61-1 ■ 출신지역 차이(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출신지역	수도권	104(52.3)	616(49.8)	0.416
	비수도권	95(47.7)	621(50.2)	
	합계	199(100)	1,238	

* $p < .05$, ** $p < .01$, *** $p < .001$

응시제한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평균 가구 소득(세전)을 측정하기 위해 200만 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여 총 11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45.4%)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3-62). 구체적으로 '200~400만 원 미만'과 '400~6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46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이 35명(17.2%), '600~800만 원 미만'이 23명(11.3%)이었다.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37명(18.2%)이었는데, 그 중 2,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12명(5.9%)으로 집계되었다.

■ 표 3-62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200만 원 미만	35(17.2)
200~400만 원 미만	46(22.7)
400~600만 원 미만	46(22.7)
600~800만 원 미만	23(11.3)
800~1,000만 원 미만	16(7.9)
1,000~1,200만 원 미만	15(7.4)
1,200~1,400만 원 미만	3(1.5)
1,400~1,600만 원 미만	2(1.0)
1,600~1,800만 원 미만	3(1.5)
1,800~2,000만 원 미만	2(1.0)
2,000만 이상	12(5.9)
합계	203(100)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하였는데, 평균 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구간의 중앙값을 응답자의 가구 소득으로 환산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약 638만 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약 743만 원으로 추정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법전원 재학 중 응시제한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더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표 3-62-1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	637.93	541.81	742.79	529.21	-2.609***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모님의 학력을 비교하였는데, 사회조사에서 부모 학력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변수 중 하나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출신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각각 질문하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5개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응시제한자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7명(37.9%), ‘대학원 이상’ 62명(30.5%)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답한 응답자는 45명(22.2%)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응시제한자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89명(43.8%), ‘고등학교 졸업’이 66명(32.5%)으로 아버지의 학력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22명(10.8%)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도 15명(7.4%) 있었다.

■ 표 3-63 ■ 부모님 학력

구분	응시제한자(n=203)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0.0)	15(7.4)
고등학교 졸업	45(22.2)	66(32.5)
전문대학 졸업	9(4.4)	10(4.9)
4년제 대학 졸업	77(37.9)	89(43.8)
대학원 이상	62(30.5)	22(10.8)
미상/기타	10(4.9)	1(0.5)

부모님의 학력 수준에 있어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는데,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집단 모두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3-63-1 ■ 부모님 학력 비교(통계 분석)

빈도(비율 %)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중학교 졸업 이하	-	-	6.810	15(7.4)	111(8.9)	5.031
고등학교 졸업	45(22.2)	258(20.7)		66(32.5)	405(32.5)	
전문대학 졸업	9(4.4)	81(6.5)		10(4.9)	96(7.7)	
4년제 대학 졸업	77(37.9)	510(40.9)		89(43.8)	465(37.3)	
대학원 이상	62(30.5)	300(24.0)		22(10.8)	162(13.0)	
미상/기타	10(4.9)	99(7.9)		1(0.5)	9(0.7)	
합계	203(100)	1,248(100)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응시제한자 중 79명(38.9%)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693명(55.5%)가 기혼으로 나타나, 응시제한자의 기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3-64).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현재 혼인 상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변호사시험 준비 중인 시점의 혼인 상태의 경우 응시제한자의 기혼 비율(18.3%)이 합격자의 기혼 비율(10.7%)보다 높았지만, 현재의 혼인 상태는 그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4 ■ 현재 혼인 상태(통계 분석)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합격자	χ^2
현재 혼인 상태	기혼	79(38.9)	693(55.5)	19.354***
	혼인 상태가 아님	124(61.1)	555(44.5)	
	합계	203(100)	1,248(100)	

* $p < .05$, ** $p < .01$, *** $p < .001$

응시제한자의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세전)을 질문하였는데, 소득(금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만 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여 총 11개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월 가구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53.2%)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400만 원 미만'이 44명(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600만 원 미만'이 42명(20.7%), '600~800만 원 미만'이 34명(16.7%)로 집계되었다. 응시제한자 중 현재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37명(18.2%)인데, 그 중 '2,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12명(5.9%)으로 나타났다.

■ 표 3-65 ■ 현재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빈도(비율 %)

구분	응시제한자
200만 원 미만	22(10.8)
200~400만 원 미만	44(21.7)
400~600만 원 미만	42(20.7)
600~800만 원 미만	34(16.7)
800~1,000만 원 미만	24(11.8)
1,000~1,200만 원 미만	8(3.9)
1,200~1,400만 원 미만	5(2.5)
1,400~1,600만 원 미만	1(0.5)
1,600~1,800만 원 미만	7(3.4)
1,800~2,000만 원 미만	4(2.0)
2,000만 이상	12(5.9)
합계	203(100)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에 응시제한자 집단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평균 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구간의 중앙값을 응답자의 가구 소득으로 환산하여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검정 결과 응시제한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약 706만 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가구 소득은 약 1,18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 표 3-65-1 ■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 차이(통계 분석)

구분	응시제한자(n=203)		합격자(n=1,2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	705.91	533.96	1,179.49	536.97	-11.663***

* $p < .05$, ** $p < .01$, *** $p < .001$

5

소결

설문조사를 통해 총 1,451명의 응답자 중 203명의 응시제한자와 1,248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통제집단)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본 조사에서는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응시 제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응시 제한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뚜렷한 요인은 개인 역량과 경제적 기반의 차이로 나타났다. 학업 역량을 비교해 보면 학부 평균 학점과 LEET 표준점수에서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집단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편차는 매우 작았다고 할 수 있다. 양 집단 간 학부 학점의 차이는 0.09점 이었고, LEET 표준 점수의 차이는 약 5점 정도였다. 반면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에 100만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고, 학비 대출 경험 비율도 훨씬 더 높았으며, 졸업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훨씬 더 많았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출발선에서 미세한 개인 역량의 차이와 뚜렷한 경제적 기반의 차이를 안고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재학 기간 동안 제도적 도움으로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학금 수령 경험의 비율을 보면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집단이 경제적 형편에 근거한 장학금을 받은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합격자들은 응시제한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장학금 수혜 비율은 응시제한자가 58.6%, 합격자가 73.0%로 합격자가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전망은 성적에 연동되어 응시제한자 집단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응시제한자 집단은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 동안 경제적 사유로 근로한 비율이 29.1%로, 5.1%인 통제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시험 직전 근로를 경험한 응시제한자의 91.6%가 근로 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계형 근로의 여파는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응시제한자들의 일일 학습 시간과 주간 학습 시간은 합격자의 학습 시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응시제한자들은 등하교 시간, 유급 근로 시간, 동거 부양가족 돌봄 시간을 합격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다. 변호사시험 당시 기혼 상태였던 비율도, 자녀가 있었던 비율도 응시제한자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으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인해 학업 몰입이 방해받았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누적된 경제적, 시간적 압박은 결국 잦은 휴학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응시제한자의 휴학 경험 비율은 24.6%로서 통제 그룹의 8.3%보다 훨씬 더 많았다. 주요 휴학 사유 역

시 응시제한자의 경우 학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통제집단의 휴학 사유는 질병, 정신적 건강 등 개인적 사유가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응시제한자들은 평균 1학기 정도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은 수학 기간이 필요했고, 졸업 학점 역시 약 0.5 정도 낮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장학금 이외의 제도적 지원 역시 응시제한자들을 크게 돕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시제한자들이 교수들과 면담을 하거나 피드백을 받은 빈도는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교수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시제한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교수들이 더 무관심하고, 도움이 안되고, 만남이나 연락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수들과의 상호작용이 성적 부진이나 위기 상황과 관련된 의무적 접촉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우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응시제한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한 학우들과의 협력 활동을 통제 집단보다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속감보다는 고립감을 더 느끼고, 협력적이라기 보다는 경쟁적이고,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응시제한자 뿐 아니라 통제집단의 경우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사설 강의를 수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 중 응시제한자의 사설 강의 수강 비율은 97%에 달하여 통제그룹의 89.8%보다 더 높았다. 나아가 학원 현장 강의 수강 비율은 35.7%로서 통제그룹의 17.6%의 2배 더 높아 추가 교육비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그리고 이후 변호사시험 준비 기간 중의 경제적 압박을 더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제한자들의 취업 및 고용 현황을 보면, 법전원 졸업이라는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비상근직에 머물거나 법학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 응시제한자의 50.2%가 상근직/정규직에서 일하고 있어 통제그룹의 77.2%에 비해 매우 낮다. 비상근직/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9.9%로 통제그룹의 0.9%보다 훨씬 더 많고,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인 경우는 24.1%로서 4분의 1에 달한다. 구직 과정의 주요 장벽으로는 또래보다 많은 나이와 불합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리적 위축 등을 들고 있어서, 응시제한자의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6개월 실무수습 종료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가 94.2%에 달하는 반면, 응시제한자들은 39.3%가 3개월 이내, 반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23.1%에 달해 응시제한자의 취업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응시제한자 중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34.2%가 법학과 관련 없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여, 응시제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취업에 성공한 응시제한자조차도 합격자 대비 절반 수준의 소득을 보이고 있고, 응시제한자와 합격자의 소득 차이는 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을 넘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큰 편차를 보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직무 만족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특히 개인의 발전 가능성, 승진 제도, 임금 또는 급여 부분에서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응시제한자의 직무 만족도가 합격자들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낮다는 것은 일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 한 개의 직무 만족도 문항에서도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응시제한자가 직장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영구 박탈이 초래한 삶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시제한자들의 입장은 응시제한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었다. 88.2%의 응시제한자들이 변호사시험을 5년 이내, 5회 이하로만 볼 수 있는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71.9%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만일 응시 제한이 풀린다면 변호사시험에 재응시 하겠냐는 질문에는 71.9%가 재응시하겠다고 답하여, 법조인을 향한 열망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응시제한자들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응시제한자와 통제집단은 모두 최상위권 학업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응시제한자의 77.9%가 학부 학점 평균 3.5 이상, 79.8%가 LEET 100~130점 구간에 분포하며, 국내 인문사회계 최상위 수준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 동안의 법학 공부를 마친 우수한 자원인 것이다. 이들의 차이는 학업의 역량보다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설문에서 로스쿨에 진학한 동기를 조사하였을 때 직업적 명예, 높은 연봉, 취업 전망,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 법학이 적성에 맞아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등 세속적, 개인적 동기에 대한 양 집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라는 2가지 동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자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월등히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역량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공익적·학문적 동기가 다른 학우들에 비해 더 강했던 ‘다른 종류의 인재’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다름’을 포용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학습 중점 방향이 분석, 암기, 통합, 판단 등에 치중되었고 다양한 관점이나 공동체적 가치를 성찰하는 공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즉, 로스쿨의 커리큘럼은 암기와 분석에 강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관점과 공동체적 가치를 다루는 공감 영역의 강조는 낮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 지식을 배우는 곳이지

공감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변호사시험에 붙은 변호사들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젊은 변호사들 채용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탈락자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느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현재의 암기와 분석에 치중하는 법학 교육이 최적인지를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위기에 놓여있고, 그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봉 직종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직종의 첫 번째 특징이 공감이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KBS 다큐 <인재전쟁>의 3부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Agentic AI 시대의 생존 무기는 공감하는 근육”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공감력은 인류 최후의 자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알고리즘이 가장 대체하기 ‘쉬운’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이미 세계의 대학들은 하고 있고, 고등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학과 법조 분야만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질문도 이러한 쟁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어떤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었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형성’, ‘법률 연구 역량’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다른 출신 배경(지역, 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 복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등이었다. 즉, 높은 학문적, 공익적 동기를 갖고 어쩌면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인재들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거나 다양한 진로와 사회적 역할을 발전하는 것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우수한 학업 역량을 증명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 간의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큰 부채를 안고 낮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며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는 것이다. 또한 법학 교육의 본질을 변호사시험 대비 및 변호사 양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응시제한자 면접 결과

* 연구의 방법

연구진은 실증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의 맥락과 서사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부터 9기까지로 입학하고 졸업하여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된 응시제한자 30명이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및 연구진의 추천을 통해 응시제한자 집단과 접촉하여 진행되었고 스노우볼링(snowball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여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참여자의 수를 확대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서울대학교 IRB의 사전승인을 획득한 후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시기, 학교 생활,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 응시제한 당시의 경험,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과정, 현재의 직장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주제를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에서 다루었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본 배경 및 현재 상황
 - 1-1) 현재의 직업, 직종,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
 - 1-2) 로스쿨 진학 이전의 진로와 경력
 - 1-3) 로스쿨 진학 당시의 가구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원
- 2) 로스쿨 교육 경험
 - 2-1) 로스쿨 진학 동기
 - 2-2) 로스쿨에서의 학업 경험
- 3) 변호사시험 경험
 - 3-1) 졸업 전후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
 - 3-2) 시험 응시 기간의 경험

- 4) 변호사시험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 4-1)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체적 평가
 - 4-2) 응시제한(5년 내 5회 제한)에 대한 의견
- 5) 응시제한 과정
 - 5-1) 응시하지 않거나 응시를 중단한 경우, 그 이유
 - 5-2) 응시제한 확정 후 심리적·정서적 경험과 변화
 - 5-3)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상호지원 경험
- 6) 응시제한 이후의 경험: 경력, 취업, 이직 과정
 - 6-1) 응시제한 이후 인적 관계의 변화
 - 6-2) 진로 선택 및 구직의 과정
 - 6-3) 법학전문석사 학위 또는 법학 지식의 활용여부 및 활용도
- 7)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 7-1) 직무 만족도와 현재 삶의 질
- 8)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8-1) 로스쿨 교육 과정 개선
 - 8-2)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 8-3) 응시제한자에 대한 지원의 방향
- 9) 대안 경로
 - 9-1) 로스쿨 진학이나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결정
 - 9-2) 응시 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변호사시험 응시 의사

각 면접조사는 약 40분부터 70분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면접 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요청 혹은 동의에 따라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최장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녹음되었고, 연구진은 면접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서울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은 설명서와 동의서를 통해 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익명화된 개략적 현황은 [첨부] 표 기재와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와 배경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의 희망 진로 또는 사회 경력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 응답자들의 경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타 시험 준비, 직장생활, 취업 준비, 학부 졸업 후 진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기존에 준비하던 시험이나 진로를 중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다른 응답자는 공공기관, 기업, 방송사, 출판사 등에서의 사회경험을 거친 뒤 진학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단일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시험 준비, 직장 경험, 취업 준비, 경력 전환의 시도와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에 이미 직장생활이나 사회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다. 이들의 경력은 공공기관, 기업, 방송사, 출판사, 해운회사, 금융회사, 대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했으며, 일부는 기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로스쿨 진학 전) 그때는 공공기관에 있었어요... 일단 그때 뽑았을 당시에 법학 석사를 대상으로 아니면 학사 이후 몇 년 이상 이렇게 경력있는 분들 그렇게 채용하셨습니다... 학부는 통계학과에 나왔습니다... 학사 연구원이었습니다.” (P11)

“(학부전공) 심리학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심리학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너무 이렇게 하나의 진로에 대한 확정이 없어가지고 여러 교수님을 만나봤는데 일단 너는 취업부터 하고 나중에 확실히 되면은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을 했어요. ○○○ TV라고 방송국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반 사원으로 해서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하다가 그때 이제 로스쿨이 생긴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P17)

“스물 여섯 정도에 로스쿨 4기로 성균관대 로스쿨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더 좋은 로스쿨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좀 안 되는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람 연락을 받고 간 곳이었는데 서울시청 산하 기관이긴 했는데 급여가 136만 원? 거의 그냥 거의 봉사. 2012년 정도에 제가 취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전 180이었던 것 같은데 1,800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월 한 130 정도.” (P6)

“로스쿨 다니기 전에는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아르바이트가 장기 알바였는데 이게 뭐 그런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경영 컨설팅 일이었는데.” (P7)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학대학원을 좀 연구 과정으로 저희 학교는 국제학대학교 연구 과정에 있었거든요.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그래서 연구 과정으로 다녔기 때문에 돌아와서 국제 통상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잡 기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했던 경우는 주로 이제 해외 시장과 직원으로서 러시아 현황에 특히 패션 의류 산업이라는 이제 시장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현지 바이어 대규모 유통 업체들이 국내하고 동아시아 쪽에 이제 뭐 마케팅하는 쪽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고시를 다시 해보라고 굉장히 강권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려고 신림동으로 들어왔었죠. 신림동에 들어왔다가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로스쿨로. 그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제 통상 쪽으로서 무역을 상대로 해서 국제 통상 쪽으로서 공부도 하고 그걸 예정이었는데 생각도 안했던 로스쿨 왔어요. 그래서 로스쿨 와서도 그 하려고 했던 걸로 그냥 계속해보자 취지였던.” (P12)

“로스쿨 가기 전에 해운회사 다녔었고요.” (P20)

“7~8년? 학부 졸업하고 직장 바로 다니다가 로스쿨에 간 경우거든요. 처음에는 휴직을 했었고요. 좀 병행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녔었어요.” (P21)

“학부 졸업 후 1년 반 정도 출판사에 있었어요. 로스쿨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퇴사하고 준비.” (P22)

“(학부 졸업 후) 그때 ○○ 금융그룹 다녔습니다.” (P23)

“(대기업) 대졸 공채로 해서 영업 관리직으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리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P29)

일부 응답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언론고시 등 다른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완전히 새로운 진로 선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준비하던 법조·공직·전문직 진로를 다른 제도적 경로를 통해 이어가려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사법시험 공부를 좀 오래 했죠. 그러면 1차를 한 네 번 정도 됐습니다. 2차 경험을 하고, 8번 했는데도 사법시험에 떨어졌습니다.” (P1)

“대학교 다니는 동안 행정고시를 준비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다시 복학을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행정휴학을 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었고. 안 돼서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고.” (P2)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게 언론고시 잠깐 준비했습니다.” (P28)

학부 졸업 시점에 취업 준비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병행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계기로 취업 절차를 중단하고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취준과 로스쿨 준비를) 병행했어요.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로스쿨 입학을 했었어서 그때 졸업할 때 당연히 시기 자체가 다른 회사들도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로스쿨이 되면서 다 따로 당연히 면접 보거나 그런 걸 다 멈췄죠. 그냥 로스쿨을 바로.” (P18)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자체가 장기화되면서 진학 이전부터 일정한 준비 기간과 공백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 졸업 후)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 조금 한 몇 개월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청년 인턴처럼 그 취준생도 하면서 학교에서 일도 좀 가르키는 그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그거 말고는 따로 직장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이미 시간을 쓴 경우에 해당함). 충북대 계속 자교여가지고 충북대를 계속 썼는데 안 못 붙여가지고 근데 계속 이제 한 번 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충북대랑 제주대를 제주대라고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된 거여서 어떻게 보면 또 로스쿨을 들어가기 전에도 시험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허비한 것도 있죠”(P25)

(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동기는 응답자의 이전 경로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법학을 전공한 응답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인 선발 제도 변화에 따라 선택하게 된 현실적인 경로였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나 직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기존 전공·경력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거나 변호사 자격의 필요성,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 공익적 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학을 결정했다. 그 밖에도 주변의 권유, 가족의 기대, 개인적 사건이나 경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계기가 된 경우가 있었다.

먼저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응답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새로운 진로 선택이라기보다 이미 오랜 시간 법조 진로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나이가 들면 뭐 합니까? 이거 하던 공부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법시험 제도의 희생양이죠.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시험의 희생양이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히게 됐는데.” (P1)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무난한 게 로스쿨이었고 찾아보니까.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죠.” (P4)

“사시 준비를 계속했었는데 정원이 자꾸 줄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차고 생각도 많아지고 공부도 안 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로스쿨 도입하는 데 좀 반대했거든요. 근데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입학했어요.” (P13)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정도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로스쿨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P30)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법학 전공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계기로 법조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학부 법학과 출신이고요. 학부가 법학과고 그때 제가 로스쿨 3회로 입학했으니까 (학부 다니다) 로스쿨이 도입이 돼서, 되던 때여서 그냥 진로를 고민하다가 법학과 출신이고 또 우연히 어쨌든 운 좋게 이제 합격이 되기도 해서 진로로 변호사를 삼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P8)

“제가 사실 멋있어 보여서 법대를 썼다가 유일하게 붙어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스쿨이 나 사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제가 숙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전 지방 출신인데 시야가 되게 좁았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사시 준비 안 할 거면 로스쿨도 있다, 법대에 왔으니까 법조인 준비도 해보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법학 배우는 거 재밌는데 그러면 이왕 된 거 법조인도 해보자 그래서 로스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P16)

“어렸을 때 계속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도 진학했고 이제 원래 사법시험 준비하려다가 아무래도 사법시험 인원도 줄고 해서 또 형편도 어렵기도 해서 고민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형이 로스쿨에 특별전형이라고 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P26)

법학 전공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본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진로와 법률 분야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경우가 있었다.

“직업적으로는 임용고시를 칠지 로스쿨을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로스쿨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P19)

직장생활이나 사회경험을 거친 응답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변호사와 협업하거나 법률 문제가 개입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변호사 자격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라 기존 업무 경험을 법률 전문성과 결합하려는 선택으로 나타났다.

“저는 전 직장에서... ○○사라는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그 회사에서 동일한 걸 했었습니다... 나름 좋은 조건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변호사님들과 자주 미팅하고 또 분쟁 해결을 하는 담당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변호사 라이선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했고 성공적인 투자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P3)

“저는 이제 무역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 그때는 중소기업청이었어요. 해외 시장과 소속했을 때는 네덜란드 가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무실을 임대해 줬어요. 아까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코트라에서 있다가 거기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현지 네덜란드 변호사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보니까는 언젠가는 한국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마치 유럽처럼 예방이 임상이 아닌 예방으로 가는 이런 법조 그런 때가 언젠가 오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송무에 매달리기보다는 사전에 자문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문제나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해가지고 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중견기업 아닌 이상에는 레갈 카운셀러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변호사들을 좀 조인시켜가지고 와서 좀 하고 유럽법이 현지 법에 조금 능통한 변호사들이 없다면 현지 파트너십을 맺어서라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자문이 좀 들어와서. 근데 결국 모든 게 이제 코스트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로스쿨 가면 그래서 저는 아주대도 생각했던 건 아주대가 중소기업 법무 특화 대학원이라더라고요. 동아대는 상거래라는데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나 여러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네덜란드의 경우이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거의 다 변호사들이 킁기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그런 딜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위한 변호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 들어와서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P12)

“제가 이제 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채용 공고를 찾아봤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간호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행히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합격도 했고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주로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서 쟁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증거 신청할 사실 조회나 기록 감정 그 문항을 만들고 준비 서면도 쓰고 소장도 쓰고 다 썼어요. 그런 것들 다 모든 의료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걸 다 봤죠.” (P24)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경력 유지 가능성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특히 기존 직장에서 출산이나 장기 근속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한 경우, 변호사 자격은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전문직 경로로 인식되었다.

“전문직이니까 좀 직업적 안정성을 좀 추구하고 싶어가지고 법학 쪽도 흥미가 있어서 변호사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남편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계속 재직하면서 출산하고 하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불이익이 좀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으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직에 좀 도전을 해 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문과 쪽이여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P20)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동기는 직업적 필요나 경력 전환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여러 응답자들이 변호사가 공익 업무나 사회적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거의 15년 이상 법조인이 꿈이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 전문직이 아니라 공익 업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사회적인 어떤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걸 원했었고. 또 제가 그런 업무를 하는 거에 되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의 그냥 어떤 원하는 직업이었던 거죠.” (P6)

“저도 몸이 불편하지만 저희 누나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고 좀 보람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국제회의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대부분 장애인들이고 한 데 왔는데 거기 오는 친구들이 다 이제 무슨 UN 회의 그런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가 있죠. 법률가도 있는데 깨들이 다 영어로 다 말하고 하는데 우리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다 이제 그냥 평범하고 법률가들 아무도 없고 당사자 중에서는. 당연히 같이 일하시는 분 변호사들이 오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직접 이런 걸 하면서 같이 나도 보람된 일을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 보니까 이제 로스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스쿨은 처음에는 다양한 경력 가지고 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거기 꽃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해서.” (P17)

“제가 서면에 썼던 문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는 이런 약간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런 누구든지 원고든 피고든 되게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로스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P24)

“변호사가 돼서 막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조금 그전부터 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비용적으로 힘든 분들 돕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이바지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P29)

주변의 권유와 기대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법학 전공자이거나 학업 성취가 높았던 응답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법조 진로를 권유받았고, 이러한 기대가 본인의 진로 선택과 결합되었다.

“저는 법대였어요. 사실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등을 떠밀려서 이제 법대 가서 공부 웬만큼 하는데 로스쿨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에 밀려서 왔습니다.” (P5)

“문과에서 약간 공부 잘하면은 변호사라는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고, 또 제 의지도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왔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한 상태여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P22)

“법학과를 갔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원래는 원하셨고 저는 이제 뜻이 그때는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로스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로스쿨 진학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처음 동기는 그렇습니다.” (P27)

그 밖에도 개인적 사건이나 경험, 특정 법 분야에 대한 관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진로 우회 전략 등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계기가 되었다.

“로스쿨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때 좀 약간 집안에서 좀 약간 송사가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서 좀 약간 ‘법을 공부하는 게 좀 힘이 되겠다’, ‘그런 공부를, 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으로 로스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로스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P7)

“일단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었고요. 직업적으로도 변호사란 직업이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P11)

“외국어도 되고(잘하고) 하니까 그걸 살려서 이제 그때 다들 많이 생각하는 국제적인 능력도 있는 멋진 변호사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제 로스쿨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고 해서 그 리트는 다 재미 삼아 봤었는데 리트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넣었는데 한 번은 제주대 로스쿨 붙었는데 거기는 그때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트를 봐서 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로스쿨 진학 전에는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P14)

“처음에는 저는 제가 세법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학부에서 경영학도 전공을 했었고, 또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계학 전공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법 쪽으로 특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그러면 법학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학했습니다.” (P15)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경제학 학점이 어떻게 좋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다니면서 그 꿈(예전에 검사가 되고싶었던) 이 다시 떠올라서 이제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P23)

“제가 09학번인데 그때도 법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학과였는데 일단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과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경영학과를 일단 갔는데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취업에 되게 치중되어 있는 수업을 듣고 하니까 흥미도 좀 없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취업하는 게 맞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좀 소송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좀 돼 가지고 좀 로스쿨을 한번 법학을 다시 한 번 해볼까 변호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이하게. 경영학과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어요.” (P25)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한국장학재단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학비를 좀 벌면서 하다 보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 4~5년 정도 남들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동기는 일단

대학을 늦게 졸업을 해서 좀 보통 평균적으로 취업하는 이 연령을 넘었거든요... 언론고시 잠깐 준비 했는데 그 1년 사이에도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언론사의 나이 커트라인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언론사를 우회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P28)

(3)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의 희망 진로

응답자 대부분은 로스쿨 진학 당시 변호사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구체적인 진로 목표는 기업 법무팀·로펌 등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 개업, 공익 분야 활동, 공공기관·행정부 등 공공영역 진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나이도 있고 하나까 변호사로서 소소하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국가가 방해를 하다니 그게 참.” (P1)

“저는 약간 공익 변호사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 공감이나 이런 데서 인턴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역에 처음에 이제 뜻을 두고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4기 때 못 가고 나서 9기로 다시 들어간 거였거든요.” (P6)

“행시를 준비했던 게 아무래도 그런 행정부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했던 거고. 이런 게 이제 더 강해진 거는 아무래도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법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일반 변호사 사무소나, 아니면 큰 로펌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게 높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행정부를 생각했었고. 저는 그래서 법률 봉사를 오히려 변호사 그쪽으로 안 하고, 다 이런 행정부 쪽에서 해서 시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했었고 노동청 거기서도 했었고.” (P2)

“당연히 로스쿨에 왔는데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뭐 학부가 막 그렇게, 학부가 경희대인데. 공식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부인하지만 이제 스카이 로스쿨이나 이런 게 아니면 솔직히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는 힘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개업 변호사로 바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P5)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관에 들어갈 좀 성격이, 약간 틀이 있는 걸 조금 힘들어 해서 이렇게 판사나 검사는 좀 아닐 거라고 어렵스럽게 생각했고. 변호사가 돼서 그냥 뭔가 좋아하는 직역에 활동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또 이제 기업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할 때여서 사내 변호사를 한다거나 좀 길이 다양하지 않을까.” (P8)

“(로스쿨 진학하면서 졸업 후에 계획한 일은) 변호사.” (P11)

“(세무 관련 변호사 쪽으로 생각하셨나?) 네네.” (P15)

“입학하면서는 저는 판검사 쪽에는 입학할 때부터 별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애초에 전공도 원래 영문 이랑 이제 ADR도 그래서 시작을,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꼭 중 재가 아니더라도 로펌에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업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P18)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변호사를 하다가 나중에 개업을 하고 싶었어요.” (P19)

“검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판사는 희망은 했었고 변호사 하고 싶었어요.” (P20)

“진학 당시에 이미 (자녀가)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입학해서 바로 3월달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특별히 어디 이제 소속이 돼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개인 사무소를 열어야 되는, 자유롭게,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P24)

“원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로스쿨 진학 이후에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P27)

“시험이 되면은 일단은 뭐 저런 쪽으로 진출을 생각했거든요. 그 법조 전문 기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법조 기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로스쿨 그쪽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였고, 그 외에는 남들처럼 그냥 사무실에서 로펌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P28)

“사내 변호사 되고 싶었어요.” (P30)

검사를 지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 (P16)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변호사 쪽, 정확히는 검사 쪽으로 법조인 쪽으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P10)

“검사를 생각하고 갔는데 나이가 29에 입학해 가지고 30세가 넘다 보니까 젊은 애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비슷한 길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학생 지도 센터에서 육군 법무관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거기 가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군 검사를 하고 다음 사건에 있어서는 군 판사를 하고. 이게 직무가 자유롭게 이동이 된다더라. 그래서 그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육군 본부 검찰 실무 수습 학교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P23)

“2학년 때는 실무수습을 갔는데 검찰 실무수습 갔었는데 그 조직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뭔가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꿈꿨던 검사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쪽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를 하고 싶어 했다가... 이제 끝까지 검사 되고 싶었어요.” (P26)

(4)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의 가구 경제 상황이나 경제적 지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응답자들의 경제적 조건은 가족 지원, 학자금 대출, 장학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응답자 상당

수는 빠듯한 가계 상황 속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에 의존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한편 일부 응답자는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는 경제적 상황이나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자체를 쉽게 고려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장학금이나 경제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었다.

“그거는 그게 부모 형제.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P1)

“학자금 대출 받고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죠.” (P2)

“그냥 되게 빠듯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지원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신 게 아니라 본인들도 되게 빠듯하고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지원해 주시는 정도.” (P6)

“대부분 그냥 경제적인 건 부모님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저도 그래서 제 용돈이나 이런 걸 좀 아껴보려는 시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P8)

이처럼 가족 지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용을 충당하는 주요한 자원이었지만, 그것이 곧 경제적 여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 지원만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장학금, 조교 장학금 등이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거의 뭐 부모님한테 의존을 했고 학교에서 조교 장학금 나오면 그걸로 생활비 같은 거 해결하고 했죠... 학자금 대출받아서 했었고... 조교 장학금은 생활비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P4)

“로스쿨 원래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비를 제가 이제 벌고 또 부족한 거는 또 학자금 대출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법전원 가기 직전에도 사실 어느 정도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학비는 전액 다 학자금 대출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취업을, 저희 어머니가 빨리 취업하기를 바라셨고. 왜냐하면 좀 형편이 그때도 막 좋지는 않았어서 빨리 취업하길 바라셨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조금 그때만 해도 약간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P15)

반면, 일부 응답자는 중산층 가구의 지원, 배우자의 지원, 국립대 등록금, 장학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용이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경제 상황은 저희 부모님이 일단 학비를 대주셨고요. 중산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P19)

“이제 회사 다니면서 벌었던 돈 있고 저희 그때 결혼을 한 상태여 가지고 저희 배우자가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P20)

“크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진학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 전액 장학금 한 번 나머지 반액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서 부모님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우신 상황은 아니었어요.” (P27)

“로스쿨 당시에 경제 상황적으로 딱히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국립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비가 비싸지도 않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딱히 막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P29)

한편,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두드러진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경제적 배려대상자 대상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등 제도적 조건이 진학 가능성을 좌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가 이제 의료 사고 나서서... 장애연금이란 수급자 비용이란 이렇게 하다가... 고물 같은 거 수집해서 팔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생계 꾸리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일을 못 하셔서...” (P26)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저희 누님 사업도 망하고 저도 같이 이제 공동 채무자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저희 자형이 좀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막내 자형이 제가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엄청난 빚에 시달렸었습니다... 저는 아예 그래서 로스쿨을 아예 생각 못 한 게 로스쿨 등록금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로스쿨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지방대 로스쿨 간 후배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사정이었고 어머니 혼자 모시기도 힘들어서 어머니를 좀 이렇게 이제 복지 신청자로 신청을 했는데 저도 덩달아 같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는 데 그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복지 대상자로 신청이 된 그날 동아대 로스쿨에서 특별 전형을 뽑았는데 그때 후배들이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온 진짜 너무너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너무너무 잘 맞아서... 또 제가 가니까 나이가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학교 취지와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좀 젊은 교수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특별 전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전형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특별 전형으로.” (P12)

“진학할 때 제가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거든요. 경제적 배려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셨을까?) “네.” (P28)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경험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의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경험에 대한 평가는 입학 시기와 학교에 따라 편차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문제는 교육과정 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응답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 표방한 교육 중심의 법조인 양성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수험 기관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거기에 지금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변호사시험 자체가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으로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완전히 그 학원이에요... 학원보다도 못하죠. 왜냐하면 좋은 학원 같은데 왜 외부 사적인 인터넷 강의를 듣겠습니까? 더 못하니까 학교 수업에 만족 못하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대처럼 일단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졸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법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해줘야 하는 거지... 전혀 만족 못합니다.” (P1)

“좋지 않았습니다... 만족도는, 너무 강력한 경쟁이었죠. 그리고 제 성적도 좋지 않았고... 로스쿨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좀 더 단기 기억력 그리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삶의 자세인데, 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좋아해서... 로스쿨에서 요구되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기 위한 트레이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9)

특히 도입 초기 기수의 경우, 교육과정이 토론과 사례 중심의 이른바 ‘미국식 로스쿨’ 모델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법과대학 수업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들은 입학 당시 기대했던 교육과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좀 애매한데, 제가 로스쿨에 길이 있던 건 좀 토론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도 서로 발전시켜보고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법대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수업이었고... 다만 교수님들의 역량이나 학우들과의 경험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도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P10)

“사실 저희 3기 정도까지 왔을 때... 법대 수업이랑 큰 차이는 잘 못 느껴서. 만족도로 봤을 때는 5점 만점으로 3~4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로스쿨이 생겼을 때도 막 전문 분야를 강조하겠다고 해서 거기 따라간 면도 없지 않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번시가 제일 우선이 되다 보니 좀 더 예전 법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18)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핵심에는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의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강의는 판례의 도출 과정과 법리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점 평가는 판례 암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전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수험 적합적이다’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때는) ‘판례를 암기하려고 들지 말고 그 판례가 도출된 사고 과정이나 법리를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평가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그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미리 접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니까,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P7)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법학 자체를 배우는 즐거움이나 교수진·동료와의 관계 측면에서 만족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업 자체에 대한 흥미와 어려운 형편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재학 시기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응답도 있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서 로스쿨 다니는 동안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 희망이 있어서 좀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하는 거에 감사도 하고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P15)

“의외로 이렇게 딱 법전을 펴는데 너무 즐겁다, 배워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P16)

(2)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 희망 진로의 변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 희망 진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계획을 졸업 시점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한 경우와 재학 중의 학업 성취나 경쟁 상황에 따라 진로 인식이 현실적으로 조정된 경우로 나뉘었다. 진로 목표를 유지한 응답자들은 검사나 사내 변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였다.

“진학 이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P10)

“(사내변호사 쪽을)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작은 펴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1순위는 사내 변호사였어요.” (P30)

다만 다수의 응답자는 재학 중 성적 경쟁에서의 위치를 자각하면서 당초 희망했던 판·검사 등의 진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학업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뿐 아니라 학내 관계나 분위기와도 결부되어 있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껴지만 1학년 때 성적을 말아먹은 이후로... 로스쿨 내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직역 아납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죠.” (P9)

“이게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은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하구나... 성적 경쟁에서 밀리고 그런 정치질에서도 밀리니까 ‘검사 힘들겠는데? 변호사라도 되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P16)

한편 진로에 대한 별도의 고민 자체를 시험 합격 이후로 미루어 두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모든 진로의 전제가 되는 구조 속에서, 합격 이전에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로스쿨 가고 나서는 그냥 일정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니까 따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시험 합격하고 나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P28)

(3) 교육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교육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꼽힌 부분은 대체로 실무 과목이었다.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현직 법조인 출신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들이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와 실무 감각 형성 양쪽 모두에 유용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도움이 됐던 건 아무래도 실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된 것 같고, 공부도 그때 제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P24)

“가장 도움 됐던 거는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같은 실무 과목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P26)

“실무수습 과목이 3학년 때 법조인 출신 교수님들이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변시에는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P27)

실무 과목 외에도, 외부에서 초빙된 검사·실무가 출신 교수나 졸업생 특강이 학습 동기와 정보 제공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특히 합격률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외부 교수진의 격려가 심리적 지지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저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건 오히려 법무부에서 오신 검사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너네 학교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희망을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P16)

“전공 수업 자체가 변호사시험에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저희 학교에서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졸업생 분들이 오셔서 모의고사 모범 답안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쓰는 연습도 시켜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P19)

다만 학교의 정규 강의보다 사교육(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이나 스스로의 선행 학습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험 준비가 어려워 별도의 학습 경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진짜 뭘 모르니까... 다행히 스터디를 잘 끼워주셔서 사시 조금 했던 분들이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 많이 도움을 받았고... 커리큘럼에 관한 거라면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어서 알아서 방학 동안 미리 선행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온라인 강의로 미리 다 듣고 나니까 2학기 때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고.” (P25)

(4)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른바 ‘비법학사’ 출신 학생들이 겪는 학업 적응의 곤란이 꼽혔다. 이들은 법학을 처음 접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 경험에 있는 학생들과 곧바로 상대평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러한 격차를 학교 교육만으로 메우기는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결과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점핑을 한 거거든요. 사전 학습 전혀 없이... 그런 상태에서 민법 이런 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패인은 중요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이용 안 하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P3)

“학부 전공이 법인 분들과 ‘비법’들이 주로 들어왔는데, 그 갭을 팔로업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나 변시 준비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게 버겁고 힘들었는데, 그걸 학교 교육으로 커버하기는 힘들고, 사교육이라고 해봤자 학교랑 물리적으로 병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P7)

이러한 비법학사의 어려움은 일부 학교의 운영 방식과 결합되어 더욱 심화되기도 하였다. 학교가 비법학사를 배려한 분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비법학사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과목 대신 비변시 과목을 선택하는 ‘우회’를 하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험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사실은 이 20명(비법학사) 사이에서 1학년 1학기 때 누가 유급을 당할 것이냐... 대부분 유급 당하는 사람들은 비법학사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분반이라도 시켜줬으면 덜했을 텐데, 유급 위기까지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변시 과목을 안 듣는 겁니다. 법철학, 법사회학 이런 걸 듣는 거죠. 점수를 조금 잘 주거든요... 당장은 면유급되지만 변시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던... 제 동기 중에 이탈한 사람들이 비법학사들이 대부분 저 같은 루트였거든요.” (P28)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전국 단위의 높은 경쟁 강도와 학습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전국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부 때는 이 정도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로스쿨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행정법 수업 때 딱 20명 들어갔는데 열 몇 명이 2차 경험자고 나머지는 행정법 박사도 있고 그 상태에서 가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유급을 당했었습니다.” (P26)

한편 졸업시험 제도가 별도의 학습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변호사시험과 졸업시험을 병행 준비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졸업시험이 학교의 합격률 관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졸업 시험을 주로 학교의 합격률을 높이는 관문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나는 변시를 못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아야 다른 일이라도 할 텐데... 왜 졸업을 시험 합격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그게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공부를 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중간에 졸업시험을 위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부담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P8)

또한 가족의 사망이나 본인의 출산·건강 문제 등 개인적 사정이 학업과 맞물려 성적 하락이나 유급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작 바로 전날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주를 제가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에 참여를 못했고... 기말도 이사를 두 번 다니면서 썩 잘 보지 못해서, 그게 다 합쳐져서 0.1점 차이 인가로 유급이 돼버리더라고요.” (P15)

(5) 재학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등록금, 생활비 등의 충당 방식

재학 중의 경제적 상황은 응답자 다수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학비와 생활비는 주로 학자금 대출, 부모 등 가족의 지원, 그리고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졸업 시점에 적지 않은 부채를 안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응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원비 등 추가 비용이 누적되어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였다.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이랑 학자금 대출을 전부 풀로 다 썼고요. 지금은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이) 맥스일 때는 한 6천까지 올라갔죠... 거기에 생활비 대출 2천까지 하면 5500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P5)

“학교 들어가면 하나은행에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줬어요. 당장 부족한 생활비는 그걸로 충당했는데, 이게 또 n시가 되면서 빚으로 남아 힘들어진 원인 중 하나가 된 거죠.” (P6)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응답이 있었다. 성적 기준 장학금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받기 어려웠고, 소득 기준 장학금 역시 가족 사정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장학금 신청 자체가...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족이 있으면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두 번 정도 문의했는데 안 된다고 칼같이 하셔서... 전액 학자금 대출을 했고. 생활비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녁·주말 시간으로 충당했습니다.” (P15)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원래 학부 때도 근로 장학생을 했었는데 로스쿨 다니면서도... 근로장학생이랑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수급자들은 로스쿨에 들어가면 수급자가 탈락이 돼요... 로스쿨 특별 전형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P26)

반면 가족의 지원으로 학비·생활비를 충당하여 별도의 대출 없이 학업을 마친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한 경우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했던 응답자들도 있었다.

“부모님 지원으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적은 없고?) 네.” (P18)

“학비 대출은 안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로스쿨 다니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어쨌든 돈을 버니까 그렇게 했었고.” (P21)

(6) 재학 중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및 학내 네트워크

학내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계가 긴장되고 소원해지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1학년 시기에는 적응 과정에서 비교적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상대평가에 따른 성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2~3학년에 이르면 관계의 예민함과 갈등이 커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적응 기간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2학년 특히 3학년 되면 사람들이 또 예민해져서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팡 터지고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P2)

‘성적이 곧 인격’인 것처럼 관계의 위계로 작동한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성적이 낮아지면 점차 동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분위기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렸는데... 성적이 점점 낮아지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들은 말인데, ‘로스쿨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건 소개팅 시장에서 외모가 나쁜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점점 사람이 별로 없어졌죠.” (P9)

합격률 하락과 유급 제도의 도입은 학생 자치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초기 기수와 중기 이후 기수 사이의 학내 문화 차이로 나타났다.

“유급 제도가 의대처럼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스터디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 복사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합격률이 1기 때 딱 나오고 2기 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마자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친구 같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P23)

“6기까지만 해도 동아리나 학생 활동이 남아 있었는데 7기, 8기로 넘어가면서 정말 순식간에 형해화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P7)

특히 일부 응답자는 성비 불균형이나 사시 준비 경험자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였다고 토로하였다.

“남자들은 나이가 많고 사시 준비하다 온 사람이 많고 여자는 주로 20대 어린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잖아요. 오빠들한테 살랑거리지 않고 족보 달라고 안 하고 이러니까 한 마디로 그냥 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P16)

다만 학교의 규모나 분위기에 따라 경쟁이 비교적 덜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응답,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은 데서 비롯된 동료애를 강조하는 응답도 있었다.

“인생이 힘든 시기를 같이 겪은 동료들이라 전우애가 있죠. 그중에서 시험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P5)

“학생들과의 관계는 원만했고, 네트워크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렇게 모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지냈습니다.” (P29)

(7) 재학 중 임신·출산·휴학 등의 영향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휴학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상대평가 구조 속에서 이러한 사정이 성적 하락과 합격률 저하로 직결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출산·육아와 학업의 병행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복학 이후에도 학업의 연속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 그런 상황에서 육아나 출산이 중간에 끼어들면 학점이 상대평가니까 나중에 갈수록 힘들긴 했어요... 졸업 전에 휴학을 1년 했습니다. 아기가 어린데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이 독서실에 남아 공부할 때 저는 퇴근해서 아이를 재우고 이런 식으로.” (P20)

“로스쿨 1학년 3월에 출산했거든요. 출산하고 3주를 쉬었는데 딱 중간고사 기간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께 메일을 돌려서 여쭙봤더니 딱 한 분만 기말로 대체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시험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주만 쉬고 나와서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P24)

또한 임신·출산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학업과 시험 준비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상황에서, 임신이 곧 진로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불안이 컸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생리가 몇 달 끊겼는데 ‘혹시 임신했나?’ 약간 그런 정신적 압박이... ‘임신을 하면 끝이다’ 계속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P22)

한편 건강 악화로 인한 장기 휴학이 학업 복귀를 어렵게 만든 사례도 확인되었다.

“2년 휴학했습니다. 복귀 후 학업하기가 쉽지 않았고... 실제로 고혈압으로 두 번 쓰러져서 한 1년 6개월은 쉬었어요. 백주 대낮에 길 걸어가다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P5)

(8)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와 문화

상대평가에 기반한 경쟁 구조와 성적 중심 문화는 응답자 다수에게 학업 자체의 어려움을 넘어서 심리적 부담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한정된 인원만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방식은 동료들 협력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관계의 단절과 자료 공유의 기피로 이어졌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변시에 합격할 것 같다, 아니다’ 이걸 기준으로 성적으로 줄 세우기, 그 안에서 배제시키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했고.” (P7)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니까... 의사 국시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잖아요. 인원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서 같이 준비하는 개념인데, 여기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동기 관계나 교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P21)

이러한 경쟁의 강도는 학교의 소재지와 학생 구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교는 판·검사 임용이나 대형 로펌 진출을 둘러싼 성적 경쟁의 압박이, 지방 학교는 사회 경력을 중단하고 진학한 고연령층의 생계 압박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서울 권역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대형 로펌이나 학점을 통해 중형 로펌이라도 가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학업 쪽 스트레스가 심하죠. 지방은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생계 압박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업을 그만두고 오거나 직장을 안 다니고 오는 거잖아요. 서른에 입학해서 안 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P5)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대평가 정원 제한으로 인해 사시 준비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의 성적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학업 자료 공유의 기피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형 로스쿨이면 상대평가 커트라인이 A는 한 명, B는 두 명, 나머지는 다 C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살짝 미끄러지면 학사 경고 급의 학점도 받아본 적이 있고... 사시 5년 10년 한 형님들과 형법 시험을 보면 시험 보기 전부터 점수가 보이는 상황까지 와서... 내신 시험 때는 학생들이 자료 공유를 잘 안 했었습니다.” (P14)

다만 도입 초기 기수이거나 합격률 경쟁이 비교적 약했던 학교의 경우, 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응답, 그리고 경쟁을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받아들여 관계상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저는 그냥 각자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요.” (P29)

(9) 학교의 진로지도, 상담, 장학금 등 지원 시스템의 활용과 인식

학교의 진로지도, 심리상담, 생활지원 등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학교와 입학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학교의 관심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에 집중되어 있어, 합격 이외의 진로 안내나 학생 개인에 대한 세심한 케어는 부족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신경을 쓰는 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P1)

“특별한 진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든 시험에 붙어라’... 로클력과 검사 쪽에는 학교에서 신경을 쓰지만 그 외의 진로에 관해서는 ‘너희가 직접 알아서 하고 일단 무조건 합격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멘토링 같은 건 없었어요.” (P7)

특히 합격률이 낮은 학교의 경우, 진로 특강 등이 오히려 일부 성공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정작 다수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진로 정보가 판·검사·로펌 등 일부 경로에 편중되어, 시험 불합격 이후의 혼란을 키웠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선배 초청 특강은 있긴 한데 합격률이 낮은 학교였는데도 원래 공부 잘했던 사람, 유일하게 검사 된 사람 불러와서 얘기 들어봐라 이런 식이라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P16)

“다양한 직업 소개를 해줘서 법률 전문가가 어떤 데서 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시험이 되든 안 되든 그 분야로 갈 수 있으니까 n수생의 혼란이 적어질 것 같은데, 저 때는 판사·검사 아니면 로펌,

서초동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혼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P8)

지도교수 제도에 대해서는, 교수의 성향과 학생의 적극성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랐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으나, 형식적 친목 수준에 그치거나 실질적 진로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로)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실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친목 정도 다지는 게 있었고... 오히려 출신 대학별 모임에서 만난 교수님들이 진로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P24)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일부 응답자는 학교의 상담 서비스 대신 외부 정신과 진료에 의존하였다고 밝혔다.

“상담 센터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었어요... 홍보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갔다 오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P16)

장학·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재 학교가 지역 연고 장학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려 노력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출신 지역과 학교 소재지가 어긋나 어느 장학 제도의 혜택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강원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강원도 출신들은 강원도에서 장학금을 주고 강대 출신들은 강대 장학금을 주는데, 저는 대전 출신이라 대전에서도 받을 수 없고 서울에서도 받을 입장이 아니고 애매하게 꺼버린 거죠.” (P16)

(10) 개선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가 교육과정 전반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시험 제도 개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로 수렴되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변호사시험 부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로스쿨 내의 모든 시스템이 블랙홀처럼 쏠리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 자체가 블랙홀 영향으로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하다...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3)

“로스쿨을 개선한다면 자격시험 제도에 부합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적 위주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변시 과목 같은 건 안 듣거든요. 처음 취지처럼 학교마다 특화된 부분을 살려서 운영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P28)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적응이 어려운 학생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실무 역량과 연계된 교육의 강화, 학교 간 교육의 질과 내용의 통일성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지원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을 다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학생,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P11)

“같은 과목인데 전국적으로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학자 선생님들은 학문적으로, 판사·변호사 출신 교수님들은 실무적 관점을 가르치셔서 교육의 통일성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 자질, 커리큘럼, 강의계획서를 좀 통일시키고 역량을 비슷하게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P16)

“심리 상담도 좀 강화해야 될 거 같아요. 애들이 경쟁에 치여서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그쪽은 다 치유가 필요할 것 같고.” (P4)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학비 인하를 넘어, 특히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보장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등록금 면제만으로는 생활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정작 배려 전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경제적 배려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등록금 면제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다른 사람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제 동기 중에 변호사 한 명도 못 됐거든요. 경제적 배려자 전형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야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P28)

“장학금을 늘리지 말고 학비를 낮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난하지 않은 이상 전액 장학금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P16)

끝으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졸업시험 운영의 불투명성, 졸업 이후 재학생(n수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제언도 제시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강이 필수거든요. 학교 수업이 변시에 도움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느꼈어요.” (P27)

“n수를 시작했을 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n수생이 누가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고 시험 성적이나 상태를 관리하면서 합격률을 관리한다고 들었고, 학교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공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P8)

3

변호사시험 준비 및 응시의 경험

(1) 시험 제도 및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인지

응답자 다수는 응시제한 제도의 존재를 입학 전후로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특히 초기 기수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제도 운용 방식이 확정되기 전 입학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대부분 변호사가 되는 교육제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응시제한제도에 대해) 저는 몰랐어요.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2기였기 때문에 처음 변호사 시험을 시행하는 해에 그게 정해진 거였고. 그것도 그때 1기들이랑 2기들이 같이 가서 과천 청사에서 모든 법전원 애들이 그때 모였었어요. (이후 헌법소원에 참여한 적 있지만) 이게 빨리 (합격해서) 빠져 나가는 게, 이 지옥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P22)

“직장생활에서 바로 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거 헛수 제한도 몰랐고. 그냥 사시에서 로스쿨 바뀐다고, 이제 뭐 대부분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정부에서 광고하는 공익 광고 비슷한 형식 TV 광고에서 그런 거를 믿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3기)로 입학했으니까 1기 첫 번째 입학생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 나오기 전에 입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도 의사고 하니까 의대처럼 들어가면은 거의 변호사 되는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붙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시다. 저는 솔직히 제도가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의사인) 형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의대 입학하면은 일단은 인턴, 레지로 돈 벌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온대요. 의사 될 거를 100% 금융기관에서 기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도를 그렇게 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세 번째로 입학한 사람으로서 1기 합격률도 안 나온 상태였고. 의사 국가고시는 솔직히 합격률도 98%에다 횡수 제한도 없어요. 이게 시험 제도가 아니라 교육 제도로 알고 왔는데. 근데 이게 교육 제도가 아니라 시험 제도였더라고요.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굳이 올 이유가...” (P23)

“사법고시에서는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은 3년 동안 3년을 계속 떨어졌으면, 봤으면은, 3년은 쉬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연이어서 계속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도 그게 이제 바로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제도가 위헌 소지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학과 교수님들은 ‘이거(응시제한제도)는 없어질 거다’.. 위헌이 날 거라 그랬었거든요... ‘헌법소원을 누구 한 명만 냈으면 위헌이 날 거다’ 그렇게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낭인을 방지하려고 있는 건데 그때 사시 때도, 사법고시 때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냥 일단은 제도가 로스쿨 법안 자체가 통과된 게 막 엄청 완벽한 상태에서 통과된 건 아니니까... 이제 과정에서 수정이 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 5회 and 5년일 거라고는 이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P21)

“(응시제한제도에 대해) 처음엔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면 변호사 시험 봐서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 이후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번시가 이런 거구나를 알고 오탈자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될 거 같고 한 번이 아니면 뭐 두 번이든 뭐 그전에 그 안에는 되겠지.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막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P25)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격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입학을 했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대평가가 된다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아예 그냥 평생금지제(응시제한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재가 이렇게 완강하게 할 줄도 상상도 못했고... 사실 처음 판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당연히 이걸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P29)

초기 기수를 제외한 상당수 응답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점 또는 입학 직후 응시제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다섯 차례 응시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처음부터 있다는 건 알았고...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누가 응시제한 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나 생각은 들었지만 딱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P4)

“시험 제한은 사실은 입학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그랬듯이 본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P11)

“그거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안내받았고 응시 제한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방 로스쿨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으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1학년 1학기에 전교 16등을 했던 학생이 변호사 시험이 떨어지고 응시제한자가 될 거라고 사실 예상하는 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도 너는 초시 합격할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P6)

“입학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P20)

“그때만 해도 제가 응시 제한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정말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P24)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당연히 처음 입학할 때는 내가 다섯 번이나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죠.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제가 워낙 교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오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P18)

“일단은 저희가 입학하고 나서 곧 알았던 것 같고요. 1학년 때 곧 알았던 것 같고 다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P30)

이와 별개로, 응답자 다수는 소위 ‘오탈자’라고 불리는 응시제한자 실사례가 주위에 나오기 전까지는 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상당기간 응시제한 제도는 예외적이거나 추상적인 위험으로만 여겨졌다.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거에 관해서 되게 크게 의식하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6기인데 그제 처음 5회에 탈락하신 분이 그때 막 발생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되게 막 뭔가 좀 뭔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해에 처음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되게 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공부하고 역시 또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P7)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고 군대 갔다 오고 했잖아요... 4~5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탈이 없었죠. 오탈 제도가 아직 오탈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뭐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습시다만 그건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그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P9)

“다 알고 들어온 거 같아요... 오탈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기수 정도 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합격도 거의 없었고, 윗기수 정도 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떨어졌다더라 그리고 재시를 준비를 학교에서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보이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시까지 그런 위험이 있다, 위험 실제로 그런 사람(응시제한자)이 있다 이런 상상을 좀 못했죠.” (P13)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기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창 사법시험 연장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 2학년 2학기 때 다 자퇴서 내고 과천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응시자 제한 이 얘기도 별 이슈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기수끼리도 그런 얘기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응시제한자) 인원이 적어서 아마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P26)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오탈자라는 게 발생 안 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6기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오탈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로스쿨 3학년 진급할 때 오탈자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들어갔을 때는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오탈자가 백 몇 명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시험이 안 되면 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외적인 극소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거죠.” (P28)

응시제한 제도가 현실적 위험으로 체감되기 어려웠던 데에는 학교 차원의 안내와 공론화가 부족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응답자는 학교가 응시제한 제도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학생들에게 ‘합격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보았다.

“(5회 응시에 대해) 일단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일절 말해주지 않구요. 그리고 이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을 넘어서 누군가 말하려고 하면... 이게 합격률이 확 5기에서 이제 6기로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여서 저희 기수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이거 얘기해 줘서 이거 위험성이나 이런 거 되게 알려야 된다. 1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행정실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안 좋아했었던 것으로 알고. 예. 안 좋아했었던 것으로 알고.” (P2)

“전혀 없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로스쿨 교육의 적정성, 법률 시장 수요에 대한 반응, 변호사 시험 합격률 매 발표 나면 나오는 그 상투적인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안내를 해 주겠습니까? 다들 뭐. 다들 입시할 때는 ‘제발 뽑아주세요’ 하고 와서, 왔더니 ‘야 합격률이 이렇대’ ‘야 공부해, 공부나 해야지’... 근데 안내받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내받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P5)

“일단 합격률이 높아질 때쯤에 입학한 기수여서 당연히 응시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고. 그리고 저랑 같이 면접 스티디 했던 오빠는 나는 처음부터 처음에 붙을 생각 안 할 거다 재수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을 정도였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대놓고 5번 응시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그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P16)

(2) 시험 준비에 대한 지원 및 지지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활용한 지원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 학교가 제공한 공간·강의 지원, 동료나 선배의 조언 등에 분산된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졸업 후 전업 수험생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다른 응답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학교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교의 강의 지원, 동료들의 도움에 의존했다. 즉 변호사시험 준비는 개인의 학습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험 준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생활 기반과 학습 자원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시험 준비는) 로스쿨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P1)

“(결혼 이후 경제상황이) 나빠진 건 아닌데 사실 양가에 손을 많이 벌리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간이 안 돼서 너무 4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P11)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3년 간은 제가 지원을 받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풀타임으로 제가 전업 수험생을 했었고요.” (P15)

“동기 형님들 그러니까 사법시험 경험 있는 형님들이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몇 명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같이 결제를 해줬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비 부담 얼마 해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그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거예요.” (P30)

(3)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의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의 변호사시험 준비 방식은 응답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온라인 강의, 학원 강의 등 사교육 자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혼자 공부하거나 최소한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성적 차이로 스터디에서 배제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고립된 공부 방식이 정보 부족이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또한 연습 부족, 시간 배분 실패, 변호사시험에 맞지 않는 공부 방법, 특히 사법시험식 공부 방법에 대한 고착이 불합격의 원인이었다고 해석한 응답도 나타났다.

“저 성격이 뭔가 그런 지지를 받기보다 그냥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스터디를 최소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딱히 그런 힘듦을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메가(학원) 같은 데서 현장 강의를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P8)

“거의 혼자 인강도 많이 들었고요. 학교 수업은 열심히 참여했었어요. 근데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런 경쟁들이 그냥 싫어서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좀 집에 가서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보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우울감도 심해지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P11)

“아무래도 제가 유급도 당하고 좀 공부를 못한다는 제 그냥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는 스터디 할 때 잘 안 끼워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P26)

일부 응답자는 재학 당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보다 혼자 준비했던 점을 초시 불합격의 한 원인으로 회고했다. 이들은 학원 강의나 온라인 강의, 동료들과의 공동 학습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한 점 등을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제가 그거를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고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게 많이 패착이었던 것 같은데.” (P15)

“근데 저는 그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다른 학생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따로 나와서, 그냥 따로 나와서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되고.” (P24)

혼자 공부했다는 응답이 곧 사교육 없이 독학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여러 응답자는 온라인 강의나 학원 강의를 활용하여 학교 수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알아서 방학 동안에 미리 선행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거의 미친 듯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저는 거의 개별로 구매를 했었어요. 다 사도 다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딱 제가 산 책에 맞는 그 1타 강사들 수업으로 다 사서 들었던 것 같아요.” (P25)

“아무래도 인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신림동에서 실강도 듣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스쿨 1, 2학년 때는 학부시험이랑 제가 크게 다른 걸 못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법학전공 이기도 하고 시험 보는 데 크게 어려움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3학년이 되고 이제 실무과목들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도 보고 과목들도 많이 바뀌면서 조금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P27)

학교 차원에서 직접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시험을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재학 중 변호사시험 준비가 학교 교육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학교 수업과 사교육 자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로스쿨 3학년 때 시험 준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강사님을 제주도로 불렀어요. 학교에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학생들 돈 건넸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P23)
 “학교 다닐 때도 사교육이 없진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이긴 한데(학교 강의가 우선이긴 한데),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이긴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보거나 이런 거나 그 아니면은 아예 최신 판례나 객관식 기출 문제집 이런 건 아예 공동 구매를 해버리고.” (P14)

초시 실패 이후 일부 응답자는 재학 당시의 준비 방식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 시간 배분, 변호사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의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법시험 경험이나 법학 전공 배경이 있었던 응답자는 기존의 공부 방식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변호사시험에 맞춘 전략 형성을 방해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연습이 좀 부족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모의고사 같은 거나 혼자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 분배 문제나 그다음에,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P10)
 “저 같은 경우에는 법대 출신이었다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독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론이 약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시 쪽으로 조금 뭔가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서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취약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기수를 보더라도 빨리 붙어서 나간 애들은 오히려 법대 출신들보다 이제 비법하면서 이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 방법론을 이렇게 딱 맞췄던 친구들이 좀 결과가 빠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P29)

(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변호사시험 응시 경험은 재학 중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 동기 집단, 스터디, 모의고사 등을 통해 일정한 학습 기반이 유지되었지만, 졸업 이후에는 응시자가 스스로 공부 장소, 학습 자원, 생활비, 사교육 이용 여부 등을 조정해야 했다. 특히 응시 기회가 줄어들수록 학교와의 연결, 경제적 여력, 심리적·신체적 체력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졸업 이후에도 일부 응답자는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습실, 도서관, 모의고사, 특강 등을 활용하며 재응시를 준비했다. 이들에게 학교는 재학생 신분이 종료된 뒤에도 시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학교에서) 자습실을 제공해 주기는 했었어요. 모의시험도 와서 보게 해주고 그랬으니까... 특강도 원하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P4)

“(학교에서 졸업생들 지원하는 모의고사를) 재시 때 봤고요.” (P13)

“저는 모의고사 지원은 학교에서 다 받았고요.” (P15)

“이제 정기 모의고사 있는 거는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냥 뭐 그랬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죠.” (P18)

그러나 졸업생에 대한 학교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응답자는 졸업 이후 학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모의고사·해설강의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졸업한 재응시생에게 일정한 자원이 되긴 했지만, 그 지원의 수준이 학교별·시기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졸업이나 응시 제한 이후에 학교나 주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진로를 안내해준 적은?) 전혀 없죠. 사실 N시점만 돼도 학교에서 연락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보통 한 재시 이후까지 가면은 학교랑 연락은 거의 끊어진다고 봐야죠.” (P5)

“(졸업생 모의고사 응시 및 해설강의 콘텐츠) 저는 전혀 지원받지 못했구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그런거를 얘기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됐건 애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에 보다 가까운 수업을 하는 학원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좀 학교가 지원해주자’라고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거에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뭔 소리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고, 교수 회의에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졸업하고 난 후인가 그거를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원하고 해서 모의고사나 일정 강의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줬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그 해 연도의 강의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했었던 그 (모의고사 및 해설강의) 강의를 무슨 뭐 약간 싸게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듣게 해준다.” (P2)

학교 시설이나 모의고사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불합격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합격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에 다시 가는 것 자체를 부끄럽거나 불편한 경험으로 인식했다.

“그 공간에 다시 가기가 싫은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4년 5년씩 계속 그 같은 건물을 계속 가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P20)

“(학교 도서관을 이용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한 번 일단 떨어지면은 학교를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P21)

“(졸업한 로스쿨) 학교에서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냥 죄인이 된, 합격을 못한 것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된 기분으로 진짜 모의고사 보러 갈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보고 왔지만 신림에서 보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학교에서 보면은 무료지만 신림에 가면은 엄청난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어요. 그냥 학교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 게.” (P22)

학교와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시설이나 모의고사 이용 자체가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저 가끔 춘천(강원대)에 갔었는데 이제 마지막 해 가까워질수록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교에서만 모의고사를 볼 수 있고 가까운 학교에서는 못 보거든요. 저는 꾸역꾸역 경기 남부에서부터 춘천까지 갔다 왔는데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싶었어요.” (P16)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보면 학교에서 보는 만큼 긴장감이 없어요. 학원이 아무래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결론은 매번 가기가 이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려고 하면 학교가 지방이니까 짐 싸서 봐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P5)

이처럼 학교는 비용 부담이 적은 학습 공간이면서도, 불합격 이후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을 동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재응시가 장기화되면서 응답자들은 학교, 본가, 서울 신림동, 신촌, 독서실, 학원 등을 오가며 공부 장소와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이동은 사교육 접근성, 비용, 가족 경제 상황, 체력 등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반복적인 거처 변경은 안정적인 학습 루틴 형성을 저해했다.

“이게 약간 좀 핑계이긴 한데 이렇게 부산대 특성상 좀 그때 사시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친구는 처음부터 계속 두각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한 비법대 출신으로서는 처음부터 저는 좀 힘들긴 했어요. 사실 따라가려고 노력했으면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너무 격차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의욕도 저하되기도 하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허덕허덕 따라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처음 나는 졸업하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애초에 했었고 하지만 남들은 다 보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봤습니다. 첫 시험을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저는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갖고 그냥 학교 앞에 집을 마련하고 학교 다니는 것처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원은 일단 부산에 있을 때까지는 인강으로 들었고요. 3년 차에는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또 이사 오고 멀리

서 이사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신촌까지 학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안 돼서 더 또 인강으로 다시 돌리고 그 시행 착오만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년 차 때는 신촌에 원룸을 잡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 3년 차까지는 진짜 그 3회 차까지 준비할 때는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진짜 기초가 제대로 안 닦인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봐야겠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 시행착오. 결과도 안 좋았고 기초를 아직 시간이 충분히 없었으니까요. 한 5월 정도에 시험 떨어지면 그때 부랴 부랴 시작하다 보니까 또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차 때는 드디어 이제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학원으로 가서 학원을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이사를 계속 다니다 보고 계속 거처를 바꾸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P11)

“재시까지지는 학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3시를 제가 시험 못 봤고 4, 5시는 서울에서... (학교에 있던 재시까지지는) 도서관 이용했습니다. 도서관 저는 주로 방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용할 때는 도서관을 갔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동안) 아무래도 많이 위축, 인간관계가 많이 위축되고요. 아까부터 숨어서 공부해야 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한 번 떨어져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시험은 한 번 떨어지면 거의 뭐 음지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P13)

“제가 제주(학교)에 있다가 일단 청주(본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혼자 한 거죠. 혼자 하니까 너무 잘 효율도 안 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신촌(학원)에 가자 해서 메가로 이어스 신촌 현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차피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현장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이제 돼 가지고 비대면 강의로 막 열리고 스터디 카페도 독서실도 10시면 문 닫고 이러니까 그럼 현장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없어서 그다음에 다시 청주로 가서 그때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 패키지로 구매해서 이제 혼자 하는 수업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현장을 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림동으로 갔어요. 마지막 1년은 신림에 있었습니다.” (P25)

“아니요. (학원 수강) 안 들었어요. 학교 다니고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구해가지고 들은 적은 있고요. 학원 강의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1년 정도는 경북대에 내려가서 재시... 아 3시 때 내려갔어요. 재수생 열람실을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신림동으로 올라왔어요... 일단 경비가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 같은 게 제가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그런 뭐 서점이나 뭐 이런 데 모의고사 그걸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학교에 내려갔었는데 학교에도 이제 열람실을 안 가는, 기피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수생들이. 가봐야 자리가 40석 정도 정도 되는데 3~4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해 주는 모강 같은 거를 가서 하기는 용이한데 이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 같은 게 잘 안 되고 그래서..재수생 열람실을 1년 쓴 거 외에는...” (P28)

“첫 번째는 학교에서 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림동에 있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시 학교로 내려가서 했습니다... 재직 때는 종합반은 아니고 단과 시험을 단과반을 다녔습니다... 합격선 근처에 간 거는 재시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대구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신림동보다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그거를 좀 강의를 청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좀 그때 저기 학교가 그때 제가 이제 3시 세 번째 시험 볼 때부터 좀 합격률이 높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매스컴에 많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걸로 좀 돼가지고 그때 2014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내려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P30)

졸업 이후 재응시 준비에서 학원 강의와 온라인 강의는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학원비 부담, 거주 지역, 육아,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사교육 자원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제 점수를 보니까... 학원의 서술형, 사례형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게 도움을 못 받아서... 제가 학원을 이용했으면 개인적으로는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종합반은 몇천만 원 하기 때문에...” (P3)

“돈이 제일 어렵죠. 돈이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몇몇 학교들을, 몇몇 학교를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사교육이 만연한 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면 학교의 지원을... 학교에서 지원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비가 당장 현실적인 압박이 되죠. 나는 시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데, 소득은 없고 지출만 늘어요. 그러면 부담이 배가 되죠. 그러면은 저는 경제적 지원이 막 풍족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더 압박이 되죠. (저는) 한 1년 정도는 다녔어요. 근데 나머지는 못 다녔죠. 왜냐하면은 학원 다니면 뭐, 학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백 몇십만 원씩 깨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P5)

“나이기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이 시험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학원을 못 다녀서 학교도 못 다니고 학원도 못 다니니까 그런 감각 같은 게 다 잃어버려서 성적은 계속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로 인강 좀 인강으로 들었고요. 필요한 것만 강하게 그냥 혼자 주로 혼자 공부하고 필요한 건 이제 이거로... 모의고사도 거의 거의 응시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됐었고 학원을 다닐 생각이 있었거든요.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아무래도 물가가 있으니까 물가도 있고 사법시험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변시하고는 종합반 형식이 그래서(달라서). (변시는) 1년 내에 발표는 한 4월 달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쭉 다녀야 되는 스타일이고 사법시험 때는 순환제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가지고 잘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 이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P13)

“근데 부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원 가기 어려워서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들었고,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 두 달 전에는 신림동으로 올라왔어요. 남편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직전이어서 사실 크게 뭐 올라온 의미가 없더라고요.” (P24)

졸업 이후 재응시생이 되면서 응답자들은 재학 중과 달리 자신의 성적 위치나 학습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재학 중에는 수업, 학교 시험, 동기 집단,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졸업 이후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습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웠다.

“좀 더 지쳤기 좀 더 루즈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n수생은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본인의 위치나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서 1년 차 때는 수업을 듣고 같이 시험 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의 성적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n수생은 좀 고립돼 있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P8)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정보력이라든가 솔직히 방향성이 좀 많이 잡기가 어렵고 방향 잡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은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이 책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서 책 탓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게 갈대 같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 책을 봐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누가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책 봐도 돼’라고 하면 안심하고 보는데, 아니면 ‘안 봐도 돼’라고 하면 딱 쳐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많이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P26)

응시 횟수가 누적될수록 재응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남은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진의 과정으로 경험되었다. 특히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경우에는 심리적 고통이 보다 커졌다.

“3시 때 제가 거의 897점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전년도나 전년 연도 컷이었으면 간당간당 그냥 붙는 점수였는데 그 해에 하필 컷이 901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떨어진 거예요. 한 4점 정도 차이로.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근데 너무 그런 게 이제 3시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날에 아빠가 폐암 3기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나는 더 이상 이 준비를 할 수 없는 약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기회는 이제 두 번밖에 안 남고 이러니까 약간 나는 진짜 사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기회도 놓칠 수는 없고. 되게 그냥 끌려가는 느낌으로 다시 수험을 했고. 관리반에 들어갔을 때 성적이 더 떨어졌고 5시는 최악이었어요... 5시는 거의 750?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는 사실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맞는 점수인데 관리반에 가서도 저는 끝까지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점수가 나오는 거 보고 아 그냥 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5시 때는 선택 과목도 과락이었어요... 그냥 3시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4시, 5시 되면서는 사실 더 이상 시험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기회가 그냥 제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효율이 나올 수가 없었고. 5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 압박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P6)

“(5번을 다 보셨나?) 네. (성적은) 4시까지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은 4시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그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5시에서 붙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 승리죠.” (P5)

재응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가족 간의 불화 등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응시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쉬거나 진로를 재정비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러한 압박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사실 제가 재수할 때 이렇게 혼자 밥을 먹다가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처음 타러 가서 지금까지 쪽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죠.” (P16)

“우울증이 지금 나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한 번 들어왔으면 5년 내에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P19)

“솔직히 따지면 1 때가 그나마 제일 나았고요. 이제 1 때는 어쨌든 한 번은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내가 계속 충전을 받아왔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붙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1 때 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고. 그 뒤에 이제 집에 부모님하고도 많이 싸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솔직한 말로 때려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한동안 2, 3 그쯤일 건데 부모님하고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많이 힘들었죠. 그때가 많이 힘들었고. 다섯 번째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섯 번째 끝나고 다시 저도 부모님하고 관계 회복을 했으니까요.” (P10)

장기수험으로 얻은 육체적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부터는 뇌경색도 왔어요. 그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몸은 다 다 나아졌습니다... 동아대 병원에 과장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 치고 변호사 시험은 이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픈 상태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체득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서울에 와서 이제 시험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병원을 다녔고 한방 치료를 좀 집중해서 많이 했었어요.” (P12)

(5) 5년의 응시 기간 중 응시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와 그 이유

5년의 응시기간 중 일부 응답자는 다섯 차례의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회차의 응시를 중단했다. 응시 중단 이유는 단일하지 않았고, 생계유지와 가족부양, 출산·육아와 돌봄, 질병과 사고, 심리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응시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험을 볼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과 가족 책임, 건강

상태, 심리적 여력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먼저 일부 응답자는 시험 방식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반복된 수험 과정에서 누적된 압박감으로 인해 응시를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응시 중단은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려워진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완벽주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2시간 주잖아요. 2시간, 3시간 주잖아요. 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아까 뭐 ‘적필상’ (비례의 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줄인말) 이런 거 두문자는 써요. 문자에 나오면 아 이걸 쓰면 되겠다. 근데 이걸 2시간 동안 왜 2시간 동안 쓰고 있냐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모든 시험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포함해서요. 예 너무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시험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P9)

“제가 아마 접수는 1, 2, 3, 5를 다 넣었었고요. 제가 시험은 1, 3, 5만 봤습니다... 4 때는 접수를 안해서 제가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4, 5 그 시점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2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었겠죠.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그래서 그때도 이거 시험 보러 가봐야 어차피 안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과 그냥 이거 가는 것 자체가 막 좀 불편하고 뭐 하고 그런 제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시험 본 때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P10)

마지막 응시기회가 주는 압박도 응시 중단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은 단순한 한 차례의 시험이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심한 부담으로 경험되었다.

“(5시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집중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방법을 알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 5시라는 게 너무 압박이 심해 갖고 거의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습니다...” (P11)

한편 일부 응답자는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시를 중단했다. 이는 가족부양 등 특정한 외부 사정 때문이라기보다 제한된 시간과 체력 속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고, 남은 응시기회를 사용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번째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이게 충분히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4회차까지 시험을 보고 이제 5회차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P7)

“그리고 또 이렇게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변호사 업계도 계속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는 와중에 더 여기서 매달려서 시험을 붙는다고 해도 조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P8)

응시를 조기에 중단한 것이 이후 진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응답도 있었다. 이 경우 응시 중단은 단순한 포기라기보다 장기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기존 경력과 법학전문 대학원 경험을 결합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한 선택으로 해석되었다.

“(시험 응시를 중간에 그만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제가 로스쿨을 3년 간 것은 학습한 거니까 저를 채용할 때... 인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5년 간 비었다고 하면 기존에 쌓았던 (경력 등) 그런 것도 다... (인정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P3)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공부 시간을 줄이는 요인에 그치지 않고, 시험 준비와 응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졸업을 하고 또 몇 년째 지금 있는 거여서 아이를 막 계속 부탁하기가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아프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붙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P20)

“제가 그때 졸업하고 저는 해외로 바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고. 그러니까 육아를 병행했어야 되는데 출산이랑 육아가 있었어서 시험을 못 봤었거든요.” (P21)

“졸업하자마자 이제 3학년 때 한 번을 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 번 더 치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계속 응시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번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마지막 5년 차라서 그때 안 보면 어쨌든 뭐 끝나는 거라서 한 번 이제 남은 횟수를 봤던 것 같아요... 아이 낳고 나서 이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아이가 한 서너 살 때쯤 마지막 남은 한 번을 보게 되었죠.” (P27)

가족의 질병과 돌봄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 부담도 응시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남은 응시기회가 있더라도 시험 준비보다 경제활동과 가족 돌봄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다섯 번 다 보지 못했고요.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인력시장을 나가서 노가다도 좀 하고.” (P23)

본인의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시험 직전의 사고나 암 진단 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은 응시자의 준비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회차 응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시 때 응시를 안 한 이유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P13)

“시험을 그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제 뇌혈관성 편두통을 진단을 받고 그때 뇌혈관을 촬영해 보고 대형 병원이란 전문 병원 가서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혈관성 편두통이 온다, 그래서 좀 심하게 올 때는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고 이 눈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는데 홍채가 축소를 안 해서 그런 정도로 좀 심하게 왔었어 가지고. 이게 컨디션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변호사 시험이 그 당시에 제 체감으로는 공부량이 좀 많고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계속 공부해서 잊어먹은 것 이상으로 계속 쌓아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시험 막판 컨디션 즈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거의 한 달 전 한 일주일 전 이럴 때 막 편두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고.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그제 와가지고 이게 시험 중에 구토를 하고 삼키면서 시험 보고 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싹 마음을 깔끔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P14)

“제가 사실 로스쿨 졸업하기 직전에 직장암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빨리 졸업하고 저는 심하지는 않았고 초기였기 때문에 한 학기를 보내보고 이제 그리고 변시를 치자 그런 생각으로 휴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 들어서 좀 많이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었고 첫 때 변호사 시험 치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변호사 시험 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시다.” (P12)

“3시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바람에 그레가지고 그 시험을 못 보고...” (P29)

“다섯 번째 시험 때요. 다섯 번째 시험 9월달에 폐암 판정을 받고 10월에 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해 시험은 결국 마지막 시험 못 보고...” (P29)

질병이나 감염병 상황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응시기회를 보전받거나 제도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웠다는 응답도 있었다. P12는 5회차 시험 당시 건강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후 법무부에 구제 조치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회차 시험 때는 학교에서 친다더라고요... 그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법무부에 법조윤리와 담당자님이 제 핸드폰을 주고받으면서 ‘당신 시험장 들어오면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 입법이 뭔지 알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일은 법무부가 나서서 입법을 해서라도 구제해 줄 테니까 시험장 들어오지 말라’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막판에 그런 좀 변수가 생겼어요 ... 그렇게 하고 저는 시험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법무부에다가 ○ 주무관님한테 내가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이제 대신 당신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하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응시 지원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와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약속대로 정부 입법이라든지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까는 그게 그냥 모른 척하더라고요.” (P12)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출산 등으로) 일단 시험을 다 보지 못했던 경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오게 돼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원장님께 이제 미리 메일도 드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쭙보고 하려고 했는데 되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5년 지난 사람이 생긴 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때라서 그게 막 이거는 위헌이 날 거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P21)

(6) 시험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 및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한 소득활동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수험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과 직결되었다. 재학 중에는 학업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학비나 생활비는 대출, 가족 지원, 장학금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시 불합격 이후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이나 가족 지원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일부 응답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근로 등을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했다. 이러한 소득 활동은 생활비 마련에는 필요했지만, 공부 시간과 체력, 학습 루틴 등을 잠식하여 시험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학 중에는 학업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학교 수업과 시험 준비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학 중 일을 병행하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시간이 남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저기 무슨 제가 그 당시 나이로도 벌써 50대 중반인데 뭘 해야 됩니까... 하루종일 학교 다니면서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P1)
 “이 시스템이 일을 해서 시간을 할애하면 그 분은 약간 밀려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P7)

실제로 상황이 열악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던 응답자들은 근로와 통학, 가족 상황 등이 겹치면서 학업 수행과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2학년 때가 조금 이제 많이, 정말 많이 집이 힘들어졌는데... 할머니가 이제 다리를 다치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편찮으신 것 같았는데 약간 이제 치매 진단까지는 아닌데 치매 증상이 비슷하게 계속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집안 상황이 좀 굉장히 이제 뭔가 복잡해졌었어요... 이제 어머니도 지금 심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좀 엄마가 좀 우울증도 생기시고... 제가 그러면서 또 그 통근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편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녁에 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이제 시험 시간을 착각하는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일단은 조금 점수가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고.” (P15)
 “○대가... 기피 부서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학생들도 예민하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학부 조교는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교육과정이라 해봤자 몇 학점 되지도 않는데 ○대는 학부 이론 실습 그런 과정도 많고 다 행사도 많다 보니까 챙길 게 많아서 막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조교인데도 그렇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평일엔 5시 퇴근이었어도 집에 오면은 또 이제 기 빨려가지고 그냥 그냥 쉬고 실질적으로 공부 시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P26)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는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을 통해 충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수험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불합격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키웠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썼고 그게 무슨 취업 준비 관련된 국가 보조금 같은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때 얼마 꽤 몇백만 원 수준의 그게 있었거든요.” (P25)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으로 버텼죠. 저는 최대한 아끼면서. 그러니까 학원을 못 다녔던 것도 있죠.” (P5)

“그래서 이제 진짜 근근이 버티면서 버티면서 공부하고 막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다가 시험 이제 떨어졌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 만든 게 있어서 이제 빚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 고 그거를 이제 뭐야 더 이상 상환해야되는 그게 오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배달 일도 하고.” (P2)

응답자들은 경제적 조건이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의 지속성과 합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시험 준비에 전념하거나 사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돌봄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 시간과 학습 자원 확보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더 합격하기 힘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더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 경제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첫 번째 합격을 못했더라도 현 시점에 와서는 그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고, 가정이 좀 어렵거나 그런 나처럼 가정이 있는 친구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못했던 거 같아요.” (P3)

“그러니까 현강 듣는 사람, 인강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이렇게 격차가 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돈 많은 애들이 결국에 삼수 사수를 해도 인강 봐서 다 붙더라고요.” (P16)

특히 이러한 격차는 초시 불합격 이후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인식되었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n시생은 시험 직후부터 곧바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비교해 학습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n시생 중에, 이제 저는 그나마 좀 그래도 운이 있어서 부모님이 미력이라도, 그러니까 말은 객관적으로 미력이지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근데 어쨌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케이스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n시와 초시의 격차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계 그러니까 생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석 달간 공부가 이제 리셋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격차가 이제 로스쿨 3학년 들어와서 바로 쪽 공부를 하는 사람과, 이제 n시와의 격차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미끄러진 사람은 계속 미끄러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P5)

실제로 초시 이후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병행한 사례가 나타났다. 재학 중이나 재시, 삼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응시 횟수가 누적되고 가족 지원이나 대출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면서 간헐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제 제가 네 번을 시험을 쳤는데 마지막 시험 준비할 때는 좀 이제 제가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집 밖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되게 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P7)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재시 때까지는 안 했고요. 4시 5시 때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쭉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시험 끝나고 잠깐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P13)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3년 간은 제가 지원을 받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풀타임으로 제가 전업 수험생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좀 이제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랑 일이라?) 네네.” (P15)

“알바 좀 했었어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끝으로 갈수록 알바를 하게 되고 3회까지는 알바를 절대 안 했던 것 같아요.” (P16)

일부 응답자는 시험 직후부터 발표 전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돈이 부족할 때마다 단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수험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시험이 끝나면 항상 그때가 이제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뽑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단기간 계약직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뽑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일한 데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니까 딱 그 시기가 맞거든요. 발표 나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때 일했고. 두 번째가 서울에서 그게 아마 지방선거였나 국회의원 선거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거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좀 서울시장이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보궐 선거 때 그때 또 이렇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나머지 기간은 제가 다른 일을 한 달 정도 더 한 적은 있고. 그래서 보통 시험을 한 5월 말쯤이면 시험 준비를 다시 했거든요.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는) 따로 한 번씩 일을 한 적은 있었어요. 돈이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막노동 했었습니다. 잡부...아침에 인력사무소 나가면은 이제 이게 공사 수요가 많을 때는 보통 나가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당일 끝나면 봉투로 줍니다. 돈이 부족, 급할 때는 이제 그렇게 주말을. (일당) 12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시험 볼 때는 제가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빌려서 마지막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돈을 이제 지인한테 빌려가지고.” (P28)

그러나 시험 직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 회차 준비의 출발을 늦추고,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응답자는 돈을 모으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쫓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기름칠 하듯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완전히 놔버리거든요... 이게 그냥 보통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신림동의 학원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학원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게 얼마였지 천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몰입식 교육 같은 걸 하고 시험도 계속 1~2월부터 4월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격하더라고요. 4시 때, 5시 때 합격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그게 효과가 잘 안 나오죠.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아마 2~3년 돈을 모으고 공부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돈 구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쫓기듯이 했던 거 같습니다.” (P28)

(7) 결혼·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 등

결혼·출산·육아 및 가족 돌봄은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험시간과 집중도, 신체적·정서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응시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영유아 돌봄, 자녀의 질병, 부모 간병 등은 특정 회차의 시험 준비를 어렵게 하거나 응시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부모의 질병과 간병 책임은 재학 중 시험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응답자는 수업과 시험 준비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 지역을 오가며 간병을 병행해야 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병행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3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주도에서 계속 주중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강했고. 3학년이라서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부터 해서 비행기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저는 돌봤었죠.” (P2)

“시험 보는 기간 중에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아프셨어요. 네 근데 아프셨는데. 또 기가 막히게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시험 기간 2주 전에 갑자기 각막이 박리가 되셔 가지고, 응급 수술로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기간 동안. 아 시험을 그렇게 해서 뭐야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가 막판에 시험이 한 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떨어졌고. 한 번 떨어졌고.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진짜 안 좋은 일 다 겪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라고 하면서 그다음 연도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보러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받으셨던 그 눈 부위가 똑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똑같은 수술을 결국에 다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시험 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똑같은 수술을 재수술을 받으셔서. 시험을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다시 망치고. 그렇게 해서 망하고 저희 아버지 그 수술받으신 눈은 몇 년이 지났다가 결국에 회복 못하고, 장애 등급 받으셔서 눈 실명하시고.” (P2)

임신과 출산은 시험 준비 과정과 충돌했다. 특히 출산 시기가 변호사시험 직전과 겹친 경우, 응답자는 출산 전후의 신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이어가거나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대로 시험이 어려웠던 게 제가 두 번째 시험 보고 나서 그때 셋째를 가져서 세 번째 시험 보기 두 달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10월 말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월 말까지만 공부하고 공식적으로 조리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 조리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리원 나와서는 공부를 못했죠. 한 한 달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게 12월 중순 이때 다시 시작한 거 같아요. 10월 말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이 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그냥 객관식 준비 못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주관식만 보고 들어가자 사례형만 보고 들어가자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봤는데. 1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책도 그렇고 짐이 너무 많잖아요. 방석에다... 도시락이 막 싸가고.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 거기를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골반이 너무 통증이 있었어요.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약간 어그적 어그적거리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그 시간에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사실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P24)

“(9~10월 정도에 출산을 하고 1월에 보는 시험 대비 공부를 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임신기간 중에 조산 위험이 있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여 가지고 출산 후에도 몸이 회복이 제대로 되기까지 좀 오래 걸려가지고.” (P27)

출산 이후에는 육아와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준비가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장시간의 몰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유아 돌봄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육아라는 것도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육아는 사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복직해가지고 뭐 일하는 거 뭐 이런 거야 어린이집 맡기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변호사시험 같이 이런 고시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인 투 식으로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P20)

“그러면 이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됐어 갖고. 그러니까 저 때 로스쿨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1기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를 배출한다 이래갖고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을 3년하고 변호사 시험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혼기를 놓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임신이랑 출산이랑 육아를 병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 하루 몇 시간을 고시원처럼 그런 데서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P21)

“(출산 이후에는) 아기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저희가 부모님들이 봐주실 상황은 안 되니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시험에 붙는다는 게 또 100%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네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요. 10여 년 가까운 전에만 해도... 부담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P27)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는 시험 준비를 더욱 근본적으로 제약했다. 자녀의 치료와 생존이 우선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준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해외 체류나 병원 치료 일정은 특정 회차의 시험 준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제가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세 번째 시험 보고 나서 아이가 희귀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 보고 나서 5월달쯤 네 번째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요. (아이는 지금은) 장애인이지요. 희귀난치병이 뭐냐면 유전 질환인데 저는 다 보인자였고 남편도 보인자여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첫째, 둘째는 한 25%의 확률로 피해갔는데 막내만 25% 확률로 걸려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에 걸려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진단이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인 게 만 2세 이내에 90%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임상 시험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임상시험 때문에 미국에 가요. 9월달에. 그래서 미국에서 4개월을 체류해요. 9월쯤 전에 가서 12월 말에 귀국을 했고 그러고 나서 1월달에 시험을 본 거죠. 그게 4회차 시험이고요. 근데 이걸 정말 준비를 못했죠.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또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돼서. 몇 주 만에 시험을 봐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안 가는 거는 제가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냥 일단 변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가서 4회 때 그렇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때 4회 때 사실 시험을 안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시험을 보는 게 제 마음이 편하니까 생각을 해서 그냥 시험을 봤죠. 그 이후에도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케어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회 때도 제대로 공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5회가 다 끝났거든요.” (P24)

“생각보다 아기가 많이 아팠었고...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험 보기 전에도 원래 제 계획상은 2주 전에 가서 이제 적응하고 이제 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도 아이가 아파서 시험 이틀 전에 내려갔나 뭐 그런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P27)

(8)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압박 여부

응답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압박 문제는 공부 시간, 집중력, 시험장 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은 체력 저하, 수면 부족, 불안 및 우울, 반복된 불합격에 따른 심리적 소진 등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시제한 제도는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고 응답자들은 n수가 반복될수록 이러한 압박을 더 크게 체감하였다.

먼저 일부 응답자는 나이, 체력 저하, 장애 등으로 인해 장시간 공부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은 장기간의 수험생활뿐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은 시험 준비와 응시 과정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몸도 안 좋고 좀 나이 때문에 그런데 공부도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조금만 공부하면 피로가 좀 애들보다 좀 빨리 오고 하니까.” (P1)
 “체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시험 기간에는 공진단을 그러니까 지인인 한의사가 있 어가지고 한 두세 개씩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P6)

“저는 몸이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는 덜 그럴겠지만 좀 이쪽이 다 불편하고. 제가 왼손으로 다 쓰고 이렇게 조금 느리긴 한데 이게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 5일 동안 보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지치는 게 뭐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 체력적으로.” (P17)

심리적 압박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응답자는 시험 준비 기간이나 응시제한에 대한 압박 속에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불면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진짜 5년 1년 안에 안 붙으면 나는 망할 거야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잠도 안 왔었거든요. 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P16)

“(졸업 무렵) 생리 전 증후군으로 불안하고 약간 잠을 못 자는 증상 때문에 1년 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았 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신과에 가서 한 달마다 수면제를 처방받고. 또 매일 수면제를 먹고 그러면은 몸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정신과 의사가 항우울제까지 같이 권했어요. 이게 수면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리 전에 불안함을 줄려면은 항우울제를 같이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복용도 했었고.” (P22)

심리적 압박은 특히 응시제한 제도와 결합되면서 커졌다. 응답자들은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반복된 불합격, 마지막 응시기회가 다가온다는 압박 속에서 불안과 우울,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n시 시절이 힘들고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프리랜서 기자 생활까지 같이 하면서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고요. 사실 어떻게 극복이라는 건 없죠. 그냥 시간은 괴로우나 안 괴로우나 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버티고 공부하고 버티고..” (P5)

“이제 4년차 때는 그런 시간의 압박 때문에 역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집중을 못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갖고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좀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P11)

“그리고 응시 제한 때문에 오히려 초조해서 전략 잘못 짜서 시험 망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압박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너는 몇 회가 적절한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몇 해라고 딱 정해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5년 딱 정해졌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안 좋았어요. 우울증 환자인지 몰랐는데 그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는.” (P16)

일부 응답자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압박을 경험했다. 이들은 특정 회차를 앞두고 시험을 보러 가는 행위 자체가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졌고, 이 과정에서 상담이나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했다.

“(5회 중 4회차 시험만 미응시) 4번째 시험때, 시험장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충북대에서 시험을 보기로 다 해놓고, 기숙사도 다 결제까지 다 해놓고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짐을 못 싸겠는 거예요. 짐을 싸서 엄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짐을 못 싸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시험 못 보겠다. 이거 이대로 들어가면 시험 보다 뛰쳐나올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 해는 시험 직전에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실 다음 시험을 볼지 말지 또 그때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일단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하자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때는 다시 마음을, 이후에는 되든 안 되든 하자는 주의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때부터 병원을 좀 가야겠다. 내가 이 압박감을 못 이겨내는구나를 그때 알아서 그때 이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을 그때 이제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P25)

심리적 부담은 시험 자체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반복된 불합격과 장기 수험은 가족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축감을 만들었고, 부모의 기대나 실망을 의식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뭔가 당연히 집에서 이제 계속 집에 있고 물론 독서실도 가고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잘하고 있냐’라고 하실 텐데 그리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는 당연히 감시하거나 뭐 알아서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이제 시험을 계속 안

되니까 아쉬워하시는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지 그 외로 딱히 뭔가 엄청 힘들다거나 한 건 아니어서. 공부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히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집에서 있는 게 그게 제일 힘들죠.” (P18)

일부 응답자는 마지막 불합격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응시 기회 소진은 단순한 시험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의 성실성이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경험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사실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다섯 번 시험 안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수업 생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섯 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맨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이제까지 나를 뒷바라지해줬는데 얼마나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계속 자살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사로 근무중) 학교를 다녔고. 지금 와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정도로 막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제자인 고등) 학생들한테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나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나쁜 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P22)

“그게 심리적인 변화...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P28)

(9) 시행되는 응시 기간에 경험한 어려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동안 응답자들은 시험장 배정, 숙박과 이동, 식사, 수면, 장시간 시험 일정 등 시험 운영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시험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응시자가 희망한 장소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시험장 인근에 숙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낯선 환경에서 며칠 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은 여러 날에 걸쳐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 수면, 건강 상태가 시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험 장소배치가) 무작위예요. 고사장 지정은. 지금은 각 학교에서 다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가 있었어요. 서울에 몇 개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에 건국대, 중앙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100% 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다른 학교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시험이 안 되니까 절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 맨 마지막엔 다섯 번째 시험은 서울시립대에서 봤었거든요. 그때는 서울시립대 앞에 에

어비앤비를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예약해서 그 원룸 같은 곳을 빌려서, 숙박 업소를 빌려서”(P2)

“제가 시험을 치는 동안은 그게 시험장 자체가 서울에서 주로 열리고 서울 외에서는 충남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시험장이 열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충남대 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거기서 호텔을 또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시험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운영에 관해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P7)

“5일 그 당시에는 일단 1, 2회차 할 때는 멀리까지 가고는 그 당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게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바로 응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촌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도 연대랑 썼는데 연대가 안 됐어요. 2지망 고대 이런 데 갔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P11)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장소가 5개인가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 호텔에 다들 트렁크 끌고 가가지고 호텔에서 하고. 정말 불편했고. 또 호텔이 이제 공부용 조명이 없어버리니까 약간 어두침침하고.” (P14)

“그냥 시험 볼 때만 고시원 빌려서.” (P5)

이러한 이동과 숙박의 부담은 시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비용과 체력 소모를 발생시켰다. 응시자는 시험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숙소 예약, 시험장 적응,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장이 확대됐는데 저 때만 해도 충남대 하나 있다가 그 뒤에서야 이제 몇 개 더 생겼죠. 이게 모든 학교로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좀 꺾고러워서 강원대를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경기도 남쪽이다 보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교를. 그래서 기숙사 강대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아주대는 비교적 가깝거든요 집에서. 근데 아주대는 자교생을 우대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또 거기서 소외되는 게 되게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이게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충남대는 힘들었던 기억이 없는데 아주대는 되게 높은 꼭대기 기숙사에 오르막길에 배치를 해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눈이 왔는데 눈 맞으면서 그 언덕길 올라가서 책 막 이렇게 안고 약간.” (P16)

“재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자기 자리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드벤처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원해서 가고 멀리서 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근데 몸이 불편해서 따로 시험을 봤어요. 서울대, 중앙대 제가 어떤 때는 연세대에서도 시험 보게 되고 그거는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무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인 거죠. 적응하는 데도 그렇고 숙소 같은 경우도 호텔 같은 데 잡아야 되는데 5일 동안 잡으면 몇십만 원, 100만 원 그거는. 이거는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5만 원만 주면 하잖아요. 수수료 같은 거 그냥 쓰는데 이거는 2중 3중의 비용이 들고 너무 이상하다.” (P17)

또 시험기간 중 기숙사나 점심 식사 등 생활 지원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원은 학교나 시험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도시락이나 식사 지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점심 등 학교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P13)

“(도시락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거를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못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시험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P15)

변호사시험이 여러 날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언급되었다. 응답자들은 시험기간 동안 충분히 쉬기 어렵고, 매일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장시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력적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시험 보고 와서 저녁 먹고 씻고 한 8시, 9시 되면 자서 한 2시나 3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가고. 그 제가 건강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장에서 코피도 생기고 책을 아예 못 봤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훨씬 많으니까 쓰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오후 내내 쓰기만 하니까 쓰기만 하니까 신체적으로도 부담감이 부담이 엄청 많이 됐어요.” (P13)

“과목 수가 좀 시험 시간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는데 물론 중간 휴식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휴식 거의 못 하잖아요. 학생들이 다 공부하느라...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9시부터 7시까지 그거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P26)

장시간 시험 일정은 임신, 장애, 질병 등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 있는 응시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응시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해 시험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상태에서도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너무 오래 보니까 시험 기간이 너무 오래고 항상 고정된 기간을 항상 보니까 저 그때 제가 임신했을 때도 시험을 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다른 임신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거의 막 임박하신 분 같아 보였는데 저도 되게 만삭일 때 봤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제(응시제한) 없었으면 사실은 안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제한이 없었으면은 올해는 보지 않고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봤을 텐데 그분도 막 그거 보시다. 저 좀 만삭 때는 막 화장실도 좀 자주 가야 되고 계속 너무 시간이 기니까. 기저귀 차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8시간, 저희가 7시간, 8시

간씩 보고 막 그렇게 보니까 저도 힘들긴 했고 그분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 해갖고. 중간에 막 좀 약간 좀 누워...갑자기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이 그러서 갖고 좀 그렇게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P21)

“제가 사실 이게 병도 병(직장암)이지만 기저귀 차고 시험치는 게 사실은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뭍은 변이 나와요. 그럼 뒤에 사람이 이제 저한테 계속 제가 이제 가스가 오는 줄 알고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고. 또 이제 3회차 때는 제가 다시 이게 이게 천식이 도져가지고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법조인력과에다 제발 좀 다른 시험장에 좀 치게 해달라고(했더니)... 엄청나게 과도한 자료들을 요구하더라고요.” (P12)

시험기간 동안 수면과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일부 응답자는 시험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수면제를 이용해 시험기간의 수면 패턴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 시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가 좀 사법시험 때부터 좀 멘탈이 약해가지고 시험 전에 잠을 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법시험 1차 같으면 하루 그냥 날밤 새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기니까 수면제를 많이 이용했어요. 시험 치기 위한... 첫 번째 시험에... 제 실수로 잠을 아예 못 잔 적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험 이 보면서 5시 때 제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대로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이런 걸로 했고 나머지는 조금 힘든 점이 많았어요. 이 패턴을 못 지켜가지고 좀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P13)

“그런데 이게 (수면제) 장기 복용이 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을 보면 5일 동안...하... 의사가 두 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졸피뎀이 안 들고 장기 복용을 해서 이제는 두 알을 먹었어요 시험 전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불안함이 달라요.” (P22)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 배정과 운영 방식, 시험 일정, 편의 제공, 응시자 지원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5일에 걸쳐 장시간 진행되는 시험 구조는 응시자의 체력과 수면,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시험장소와 숙박·식사 등 물리적 환경은 응시자의 시험 수행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4

변호사시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1)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본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표방한 자격시험이 실질적으로는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의사 국가시험 등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 가깝게 변질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로스쿨이라는 게 의대처럼 그 과정을 중시하는데, 1학년에서 안 되면 거기서 유급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지, 변호사시험을 가장 중시해서 여기서 안 되면 아무리 충실히 3년 공부를 해도 변호사를 못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대 같으면 (면허 취득률) 95% 안팎인데... 이건 완전 사법시험처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P1)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 합격률이 75%다 이런 식으로 입학 정원 대비로 얘기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P3)

“오탈한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는 솔직히 그냥 망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시험으로서의 취지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2의 사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P29)

시험의 운영 방식 자체가 응시자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비인간적 구조라는 지적도 다수였다. 특히 5일에 걸쳐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한꺼번에 치르는 일정, 과도한 답안 분량과 시간 부족 등이 공통적인 문제로 꼽혔다.

“시험 자체가 시험 기간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전부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인데... 예전 사법시험 1차, 2차, 그리고 연수원 시험을 한꺼번에 4일 안에 몰아서 치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인 것 같고. 이걸 분리해서 며칠 나눠서 본다든가.” (P7)

“변호사시험이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순발력 테스트거든요. 모든 문제를 많이 내면서 그 시간 내에 다 해결해야만 변호사가 되는 구조가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P24)

일부 응답자는 시험 설계 자체보다는 외부 환경, 즉 합격률 조정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본래의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과락을 통한 합격자 수 조절을 막기 위해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혼합하도록 설계된 본래 취지가, 합격률 하락이라는 상황 속에서 절대적 난이도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설계는 멀쩡하게 했는데 외부 환경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애초에 사법시험이 과락으로 합격자 수를 조절하니까, 로스쿨을 설계할 때는 과락으로 장난을 못 치게끔 원점수인 선택형과 표준점수인 사례·기록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처음 취지대로 운영됐으면 이렇게까지 압박받지는 않죠.” (P5)

또한 주관식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가 평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합격자 발표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 진로 결정에 혼란을 준다는 점도 제도의 비합리적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선택형 과목의 출제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점, 선택법(선택과목)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 구체적인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관식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답안지를 확인해도 여기에서 왜 깎였는지를 알 수도 없으니 반쪽짜리고... 합격 발표라도 좀 빨리 이루어지면.” (P14)

“점수 기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이 알음알음 알려주는데 그렇게까지 비밀 처리를 할 필요가 있나... 옛날 채점 기준표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P14)

“1월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시험을 보고 4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실무 실습 들어갔다가 불합격하면 민폐고. 합격자 발표까지의 기간이 긴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P16)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객관식에서 진짜 공백진 데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헌정사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로 출제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P28)

(2)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인식

현행 합격자 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나 응시자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인위적 판단에 따라 합격자 수가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들은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상대평가 구조가 매년 일정 수의 탈락자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보았으며, 이를 ‘인위적인 장벽’으로 인식하였다.

“그건 완전히 인위적인 장벽이죠. 완전 벽을 설치해서 법무부가.” (P1)

“왜 변호사만 유독 이렇게 50%씩 떨어뜨리고, 그중에서도 또 5년 후에는 오탈자로 잘라내야 되는지... 같은 때 한의전에 들어갔던 후배는 그냥 한의사 됐거든요. 이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P6)

특히 합격자 수가 시험 당일에 발표되는 방식이 응시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합격자 수 결정이 변호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과 여론의 눈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합격률도 당일에 속보로 발표를 하잖아요. 다른 시험들은 합격자 발표 후에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뽑았지’ 이러니까 믿고 공부할 구석도 없고... 그 수도 눈치 보기에요. 정부 눈치, 국민 눈치... 왜 변호사만큼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초기의 그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게 목표였으니까.” (P16)

이러한 구조적 통제 방식은 탈락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릴 수 없게 만든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일정 수의 탈락자가 반드시 발생하도록 설계된 이상, 이를 자격시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자격시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이 안 되면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하면 납득을 하는데, 상대평가로 반드시 오탈자가 300명씩 발생하도록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0명 오탈자의 인생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된 제도 같다... 무조건 300명이 오탈자가 발생해야 되는 제도니까, 개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100% 제도 (문제)인 것 같아요.” (P19)

이에 따라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자격시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응시 제한이 없는 의사 국가시험 등과의 비교가 자주 제시되었다.

“합격자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조금 더 저렴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P10)

“의사처럼 90 몇 퍼센트의 합격률이고 응시 제한 횟수가 없고, 변호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의전원을 갔더라면 어떻게든 될 때까지 하니까 분명히 의사가 됐을 거거든요.” (P24)

다만 합격자 수 증감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숫자보다 역량과 시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 그리고 지방의 변호사 부족 현실을 근거로 합격자 수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변호사 친구들 중에 누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수행 못 한다고 하고, 누구는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고...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역량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모자라는 것보다 약간 넘치는 게 낫지 않나요.” (P13)

“로스쿨 제도 자체가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왜 그걸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지방에 있어서 아는데 지방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어썬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P26)

한편 이러한 합격률 문제의 근원을 제도 도입 초기에 합격률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데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1회 때처럼 응시자 대비 75% 정도 선에서 운영됐으면 되는데, 계속 탈락자가 쌓이면서 처음에 그게 안 된 거죠.” (P28)

“초반에 자격시험화 얘기가 나왔을 때 틀을 마련했더라면 지금처럼 사법시험처럼 더 힘들어지지 않는 않았을 텐데, 합격률을 결정하는 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P30)

(3) 응시제한 제도(5년 내 5회)에 대한 인식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변시 낭인’ 방지라는 입법 취지가 표방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패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응시제한이 오히려 자격 없는 법학전문 석사를 양산하여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증대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탈 제도가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로스쿨 3년에 응시기간 5년을 더해 8년을 라이선스 없이 나왔을 때 대부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아요.” (P3)

응답자들은 이 제도의 실질적 존재 이유가 입법 취지로 표방된 낭인 방지가 아니라 합격률 내지 변호사 수의 통제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시제한 제도가 없을 경우 누적되는 응시자로 인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다.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합격률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합격 인원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P9)

“5회 응시 탈락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면 응시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합격률은 줄어드게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P15)

“응시제한 제도에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다고 생각하는가) 변호사 수 통제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P28)

특히 응시 횟수(5회)와 응시 기간(5년)을 결합한 방식의 불합리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임신·출산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기회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점이 권리 침해라는 인식이다.

“입법 취지가 ‘시험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면 왜 5년 제한을 두는가... 5회만 남겨놓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을 해서 응시할 수도 있고, 병이 있으면 치료할 충분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응시할 수도 있는데. 5년과 5회를 결합해 놓으니까 7년을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P7)

“다섯 번 제한할 수 있다고 쳐도 연속 5년이어야 돼, 이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의 권리 침해잖아요. 저는 남성이 아니니까 의무 복무를 하러 갈 수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5년 동안 쪽 연달아서 기회를 다 써야 돼요.” (P16)

이러한 경직성은 실제로 건강 악화나 출산·육아 등의 사정이 발생한 응답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였다.

“준비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못할 정도다, 올해는 시험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선택권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P13)

“저처럼 중간에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저라고 저희 아이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P24)

나아가 응시 기간 제한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의 취업과 진로 재정비를 가로막는 ‘봉쇄효과’를 가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5년 내에 결판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시험과 취업 어느 쪽에도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어, 낭인 방지라는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오탈 제도가 없었으면 그냥 경제 활동하면서 우울증 풀리는 것도 기다리고 나중에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낭인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8년 동안 취업을 못 했거든요. 오히려 낭인이 될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P19)

“5년 내에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게, 진짜 5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취업도 못하고... 기간 제한만이라도 없었다면 한두 번 보고 취업해서 육아도 하고, 아이가 좀 컸을 때 다시 공부해서 응시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P20)

또한 응시 자체가 봉쇄된다는 사실이 단순한 시험 실패를 넘어 일종의 신분적 낙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응답자들은 ‘응시할 수 없는 자’라는 지위가 사회적 낙인이 되어 진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응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응시할 수 없다는 게 완전히 신분이 돼버린 거거든요... 풀어두면 그 정도로 많이 응시를 하지 않을 텐데, 5년을 묶어두니까. 흩어뜨리면 오히려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먹으면 다시 시험 볼 엄두가 안 나거나 자연스럽게 되고... 완전히 낙인, 로스쿨 구성원에서 제외가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자원 낭비고, 이 제도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21)

다만 일부 응답자는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제한 응시가 오히려 개인을 끝없는 수험 생활에 묶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5년·5회를 결합한 현행 방식의 경직성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한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요... 무제한이었다면 진짜 고시 낭인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만 5년 내 제한이라는 게, 경제적 문제나 사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연도보다는 횟수로 제한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10)

“완전 무제한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너무... 전 마지막에 사실 되게 후련했거든요. 다음이 없어서 ‘할 만큼 했다’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 회차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P25)

(4) 응시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응시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가장 시급한 과도기적 방안으로는 질병·사고·임신·출산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예외 사유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합의만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철폐가 맞는 것 같고요. 과도기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자녀 케어, 임신 중인 분들은 우선 예외가 인정되면… 이걸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만 동의하면.” (P3)
 “시급한 거는 군대라든지 질병, 출산 같은 예외적인 사유를 어느 정도 허용해서 그분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P30)

다만 예외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예외 사유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출산 등 일부 사유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제도 존치의 면피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사유 제한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시험을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사유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 많습니까... 경제적 사유는 어느 선을 볼 것이냐가 문제고, 꾸며내거나 악용하기가 너무 쉬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간 제한을 없애고 횟수로 했으면 좋겠다.” (P10)
 “출산 같은 예외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면피 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있다, 뭐가 문제냐’... 출산한 사람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애가 안 생긴 사람은 차별 아닙니까.” (P11)

임신·출산 관련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유예 기간을 자녀 양육의 현실에 맞게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처럼, 추후에 한 번 더 칠 수 있게 기회 자체가 더 많지 않더라도 지금 안 치고 10년 뒤에 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좋죠.” (P20)
 “(출산에 따른 유예 기간이 도입된다면) 사실 최소 3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P27)

예외 사유의 개별적 확대보다, 5년의 응시 기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 기간만 폐지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육아 등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간 제한만 해제하면 모성 보호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약간의 개선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일단 제한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제도를 손보는 방법은 결국 전면 폐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7)
 “마음 같아서는 응시제한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남기고 싶으면 횟수 제한만 하고 연도 제한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형편 어려운 사람들도 공부 부족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쉬어가거나 재정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시험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P26)

나아가 합격자 선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 국가기관·로펌 등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도 제안되었다.

“교육해서 안 된 사람들은 유급시키고 내년에 또 볼 기회를 주고, 졸업을 시키지 말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의대같이 해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P11)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정 기간 국가 기관이나 검증 가능한 로펌 같은 데에서 실무를 겪은 다음에 다시 응시 기회를 주는 것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인 것 같거든요.” (P28)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여 졸업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교육 효과의 소멸’을 응시제한의 근거로 들면서 재교육의 경로마저 차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헌재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교육 효과 소멸인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소멸돼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막았죠.” (P24)
 “교육 효과 소멸 방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로스쿨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막아버리니까. 낭인 방지도 현실적으로 국가가 (낭인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P19)

끝으로,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경우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미 응시 제한이 확정된 응시제한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과,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 정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적극론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게 소급 이슈가 있으니까, 이미 응시 제한에 걸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크게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소급을 적용해서 기간이나 횟수를 연장해 주는 정도고, 저처럼 이미 제한이 확정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P10)
 “(폐지된다면)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다 풀린다고 해서 다 보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다 본다고 해도 해가 갈수록 정원 수는 안정될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도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29)

5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의 심리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

(1) 응시제한이 확정된 직후의 감정적 경험

로스쿨 3년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 직후 심각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단순한 시험 실패를 넘어 정체성과 미래 계획이 흔들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은 최소 8년동안 ‘미래의 법조인’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불합격 소식은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불러왔을 것이다. 또한 합격한 로스쿨 동료들과의 비교, 가족의 실망, 경제적 어려움의 누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자존감을 잃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 증상으로 발전하여 대인관계를 피하거나 삶의 의미를 의심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응시제한자든 변호사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경험한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때는 솔직히 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험이 일반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대학원 3년에다가 5년을 하고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P19)

“굉장히 우울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 앞으로의 낙도 없고 이걸 뭘니까? 이 국가가 사람 완전 폐인 만드는 겁니다 이거... 다 힘들었죠. 다 힘들고 특히 시험 오탈 되고 한 1년 지나니까 이것도 완전히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완전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너무 우울하죠.” (P1)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게 뭔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변호사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 변호사가 된 내 모습이 상상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또 떨어졌구나, 나는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없구나, 그냥 되게 내가 뭔가 헛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로스쿨 입학 전만 해도 저는 대학도 우등 졸업했고 뭔가 반짝반짝 빛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만 입학하고 로스쿨 다니는 동안만 해도 뭔가 지방에서 너무 힘들고 현타도 많이 오지만 이 생활이 이제 좀 버티면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었고 n시 할 동안엔 솔직히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로3 때부터는 저는 수면제를 먹으면서 n시 때까지 계속 먹었고 그렇지만 n시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n시로도 또 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수기로 보면서 그래 나도 지금 이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버티면 변호사가 돼서 웃는 날이 올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응시제한자가

되고 나니까 (울먹이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그러면은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P6)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시험 준비에 매달리며 변호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모두 끝났다는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더 이상 시험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홀가분함과 후련함을 느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5년 5회로 제한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가 끝없는 응시를 중단케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즉, 제도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진 동시에, 시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감정이나, 시험 응시를 단념하게 하는 충격요법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좀 이 말이 지금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좀 홀가분했죠.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이걸 원하는 데도 칠 수가 없는데, 또 시험을 또 치고 싶기도 하고. 이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P1)
 “그러니까 저도 저도 오탈제도를 옹호하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오탈제가 저를 살려줬다고 할 수밖에 없죠.” (P9)

“어떻게 보면 저는 한 4, 5회쯤에서 (불합격을) 조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으려면 처음에 바로 붙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5회째 확정이 됐을 때 크게 낙심을 하거나 크게 심경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5회 때도 보지 말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일단 보고 그러면 이제 나 빨리 먹고살 거를 빨리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거의 곧바로 그러니까 그때 고향에 저희 부모님하고 잠깐 시간을 조금 몇 개월 한 3개월 4개월 보내고 그리고 바로 취직했어요.” (P10)

“발표 나고 직후에는 오히려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홀가분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고 나서는 더 이제 더 좀 좌절감이 좀 느꼈죠...” (P30)

“주변에 미안하죠. 주변에 미안하고 아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죽겠다, 오히려 마지막 시험 보고 채점해서 안 됐다라는 거를 딱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그냥 더 편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취업해야지. 취업해야지’ 하고 뭐 그냥 뭐 취업을 해서.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극심하죠... 실제로 지금 이 연구를 하시면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숫자가 반절은 넘을 거예요. 예. 다들 이제 정신과 약이 없으면 이제 못 버틸 지점까지 내몰리는 거죠.” (P5)

“일단 이제 불합격 발표가 나고 바로 이제 취업 준비를, 오히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후련한 생각도 있었어서요. ‘좀 이제 진짜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이제 못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못 그만두고 있다가 딱 불합격 발표가 딱 나니까 ‘이제 그럼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

고.” (P18)

“그때는 좀 솔직히 떨어지니까 슬프긴 하죠. 발표 났을 때 명단이 없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가족분들한테 좀 미안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뭐 오히려 학원 강사님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거든요. 좀 죄송스럽고... 근데 그러면서도 좀 지나니까 오히려 속은 좀 후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에 얽매었는데 그게 얽매인 게 사라지니까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속상하긴 한데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속상하긴 해도 후련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숙박에서 풀려났으니까.” (P26)

변호사시험 불합격 직후 응답자들은 좌절감에 너무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곧바로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았다.

“최종 불합격 그거를 통보를 받고 나서는 일단은 첫 번째 떠오른 게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둘째는 좀 뭐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P30)

“일단 빌린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갚는 거에 좀 저기...고민을 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돈들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안 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취업하기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고. 빨리 돈을 갚는 거에 목표를 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았고. 심리적으로 극복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P28)

“남들은 한 번 겪기도 힘든 게 쪽쪽쪽쪽 와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걸로 어떻게 되든지 평균(평생응시금지) 제도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서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P29)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부당함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법소원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저는 전공이 그 대학교 때부터 법학이었고... 나름의 진로를 찾았고 나름의 흥미도 있었고 힘든 시간 이긴 했지만 나름 진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20대의 전부를 그거에 보냈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20대 전부가 부정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헌법소원이나 이런 활동에 좀 더 몰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하면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 활동에 조금 매진했던 것 같아요.” (P27)

(2)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경험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등을 경험했으며, 심각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제적·정서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수험 기간 동안 누적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담,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심리적 압박이 더욱 컸다고 응답했다.

“일부러 하다못해 티비 영상이 나와도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우울하고 슬프더라고요. 드라마도 변호사가 나오면은 아예 돌려버리고요. ○○○○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졸업한 지 지금 한참 됐는데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하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고 항상 자괴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인 거는 사실은 있었긴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부수적으로 신체적인 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우울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항상 아픈 상태였고.. (응시제한 이후에는) 죽어야겠다.” (P11)

“심적으로는 사실 매회 시험이 비슷했고 제가 그러니까 한 3회 시험 4회 시험 그쯤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밥 먹기도 힘들고 전기도 끊기고 막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공부를 니가 얼마나 안 했길래 떨어지나라든지 니가 공부를 그 따위로 하니까 너는 안되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다섯 번째 그 뒤에는 그냥 어쨌든 끝난 거고 그 시점에서는 그냥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약간 그런 반응이셨고요.” (P10)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첫 시험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합격자 명단이 나왔었고요.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된다고(합격) 생각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는 저기 동기라든지 저기 뭐 아는 지인들한테도 좀 그런 걸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만 해도 합격률이 75% 그때 나올 때거든요. 75인데 니가 왜 떨어지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첫째 둘째 시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P30)

“이제 아버지는 이제 법정 드라마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우리 이제 변호사만 나오면 TV 돌린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냥 사실 그 뒤로 이제 본인들이 저 때문에 진 빚을 갚으라고 닥달하셨고...” (P6)

“굉장히 큰 큰 갈등이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랑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제가 합격을 하면은 뭔가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사실 저만큼이나 어머니가 좀 상실감이 크셔서 엄마랑의 사이가 한동안 정말 정말 정말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어머니가 이제 시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부끄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마음도 아프고 좀 힘들죠.” (P15)

(3)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은 응답자에게 물심양면으로 위로와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합격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부모 또는 형제·배우자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합격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남게 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죄책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제 좀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셨죠. 좀 애들 봐주려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거 다 봐주시고. 한 10년을 같이 사셨거든요...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P24)

“남편은 미안해하죠. 약간 자기가 보기에 다른 동기들이나 후배들 사실 봤을 때 제가 더 불을 만한 사람인데 저는 못 붙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변호사 됐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도 아쉬운 게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미안해하는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P24)

“그냥 뭐 가족은 그냥 취업을 빨리 하는 걸 그냥 바랐고. 그 외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없었죠)” (P28)

또한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친구나 지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서서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으며, 불합격 이후에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불합격의 영향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적 관계 전반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보는 기간) 시험 끝나고 연락해서 한 1월 2월 이때 잠깐(친구) 만나고 이제 4월 이후에 또 잠 타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네 저는 아마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사실 잠깐 무소식인 분들도 많아요.

불합격하면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나마 항상 시험 끝나면 막 전화 막 돌리고 또 4월에 발표 나면 이제 또 또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제 가끔 육목 끝나고 밥 사주러 온다던가 뭐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지금도 뭐 거의 제일 친한 사람

누구야라고 하면 (로스쿨) 동기들이 제일 친해요.” (P25)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것도 가족이 되었다. 차차 시간이 지나며 각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취업을 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된 경우 가족 문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단 가족들하고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위로가 되거나 지지를 해준 사람은) 남편.” (P11)

“가족들도 오히려 더 끈끈해졌고 웬만해서는 전혀 관계 단절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P16)

“한동안 집에서도 (가족들이랑) 많이 싸우게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현재는 완전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P19)

“가족들은 뭐 다 많이 위로를 해줬죠. 근데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죠.” (P20)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 동기들도 그렇고 그때 그래서 약간 좀 동기 회장님께서 제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공부 로드맵이나 이런 거 좀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그러니까 보던 책 주신다는 그런 분도 있었고 부모님과 동기분들이 제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동기 중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좀 그때 그 당시에 75 때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P30)

(4) 법학전문대학원 동료와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학생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법조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이기도 하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이 로스쿨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시험 불합격이 반복될수록 로스쿨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격한 동기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반면, 불합격자는 이들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연락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합격 소식과 커리어 발전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로스쿨 동문 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불합격자로서는 같이 어울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진짜로 친한 사람들 아니고서야 원래 많이 친한 사람도 아니고 저희 동기도 좀 그렇고 시험 공부하는 그 5년 동안에 또 많이 끊겨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모임에 나가도 되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자리가 좀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저도 제가 냉정하게 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임에 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나가서

어떻게 지내냐 좀 부족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 정도 변화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P10)

“사실 로스쿨이라는 제도 내에서 이 오탈자에 대한 대우는 인종차별... 저는 인종차별보다 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연락하기도 조심스럽고 내가 먼저 하기도 조심스럽고 서로 조심하게 되죠.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친한 사람들하고는 친하고 그런 와중인데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그 오피셜한 네트워크는 아예 끊기는 거죠. 초시만 떨어져도 그런 네트워크는 다 끊기죠.” (P5)

“일단 시험 떨어졌을 때는 초시 떨어졌을 때 다 끊겼고요. 같이 스터디 했던 몇 명 한두 명 정도하고만 카톡이나 주고받고 그러다가 그러고 지내다가 오탈하고 나서는 아예 다 끊겼다가 그나마 지금 한 2~3년 지났나요? 한 3~4년 지난 그나마 요즘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 보려고.” (P13)

“네 단절이 많이 됐습니다. 단절이 많이 됐는데 거기는 사실 저 제가 조금 제 스스로 뭔가 위축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지금 연락하는 친구들도 두 명 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참 사실 일단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조금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서 그거를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을 안 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연락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단절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제 삶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못하고 친구들도 좀 배려를 해주면서 연락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 물론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절이 된 친구들도 있고 관계 단절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P15)

“의대생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의대생들이 끈끈하다는 거를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저희 형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다 잘 지내요. 그 학교 나왔던 애들이랑. 어느 정도까지 잘 지내냐면은 국시 합격 98%인데 거기도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국가고시 이제 학교에서 내려오는 족보 같은 거 서브 노트도 있어요. 법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모임 중에 1명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다음 국가고시 불기 위해서 그 애 한 명을 끌고 다니면서 주말에 독서실까지 다닌대요 같이. 근데 여기 이 제도 (로스쿨) 학우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실망한 것보다 솔직히 학우들한테 실망한 게 더 커요... 말도 못하게 실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붙으면 땡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잖아요.” (P23)

“많지는 않죠. 그 한 명 정도 제일 친했던 친구만 연락하고 있고요.” (P24)

이처럼 초시 불합격 이후 로스쿨에서 형성되었던 인적 네트워크가 서서히 끊어졌고, 아무래도 타인에게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응시제한을 계기로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축소되거나 단절된 경우도 많았다.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자격지심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당수는 로스쿨 동료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단 저는 오탈을 하면서 모든 동기와 연락을 끊었고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일부러 안 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있고요. 아예 연락 차단해 버렸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서운해져갖고 지금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P11)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어쨌든 맞이로서 학생들과 접촉성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냥 안부라도 인사 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제가 안부인사 전화하기도 하면 마지못해 산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빨리 진도를 바꿔서 행정사 하는 애들도 있고 법무사 하는 애도 있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애 있는데 나이 어린 애들은 취업을 하는 애들도 많은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20% 30%는 그냥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30대 후반 이 되면 취업이 불가능한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은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는 바는 그냥 폐인돼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12)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시 제한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도 연락하기 좀 그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연락하기 좀 그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제가 되게 친하고 연락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오탈하고 나서 아예 그냥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뭐 오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P19)

“그냥 제가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언젠가는 다섯 번 중에 한 명은 꼭 붙을 거니까 그때 되면 나 사실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나 붙어서 연락한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다섯 번... 그리고 시간이 너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P20)

“시험 안 되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두 번 세 번이 지나가면 서는 이제 저도 예민해지고 이래가지고 연락을 차단해 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연락이 끊어진 거죠.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텐데 시험에 합격을 못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P28)

물론 모두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응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며 로스쿨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재학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변호사시험 불합격 이후 비교적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개인적 교제나 결혼 등을 통해 로스쿨 동료들과 연이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연락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법조인이 된 동료와 이전처럼 편하게 지내기 어렵거나 서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응답했다.

“친한 애들 연락은 하고 있고요. 일부러 피하고 그러진 않아요. 죄지은 것도 아닌데... (응시제한 이후 변화는) 특별히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안 친한 애들은 그대로인 거고, 친하던 애들은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응시제한 통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동기들하고는.” (P4)

“저는 오히려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은 노무사 준비하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서 대학원 생활을 쪽 연락을 했었고 대학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합격했다는 거를 그냥 제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 붙으면 진짜 순수하게 축하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멀어질 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저 여자 후배, 선배 언니랑 동기 동생하고 진짜 지금도 연락 계속하거든요. 다 변호사 됐고 저는 안 됐는데 그럼에도 저를 편견 없이 봐주고. 되게 학교 다닐 때도 의지하고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좀 친해진 언니도 있고...” (P16)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냈던 사람들하고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연락 종종 하고 그런 편이고요. 변호사 된 친구나 동기나 누나나 형들도 잘 지내다 보면 선물도 보내주고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연락하고...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P26)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뭐 그냥 평소 인간관계하듯이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물론 같은 필드에 있었다면은 더 자주 봤겠지만은 일단은 이제는 이제 그냥 친구 만나듯이 정으로 그냥 그렇죠. 동창 보듯이 그런 겁니다.” (P29)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조금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배우자가 같은 로스쿨 다녔던 친구거든요. 근데 로스쿨 다니는 동안은 서로 몰랐고 졸업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남편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P15)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 그냥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사람들은 변호사 형, 제가 이제 저 때는 좀 어린 편이었거든요. 저 들어갈 때 한양대 로스쿨에서 이제 그나마 남자 중에서는 어린 편에 속해서 그래서 그냥 형들이었고 어차피.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학생회 사람들 했던 같이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던 사람이 끊기거나 아니면 일부러 내가 못 만나게 됐거나 그렇지 않는데 그런 이제 다른 탈락자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그런 것 같아요.” (P18)

“그게 이제 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서 인간관계 차단한다든지 번호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도 동기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큰 문제 없었던 것 같고 대인관계나 그런 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나 그런 데는 큰 문제없이 학교 다닐 때도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 다 챙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P30)

(5) 대인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

많은 응답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 로스쿨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본인의 심리적 위축으로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취업을 한 이후 관계가 어느정도 회복되기도 하지만, 직업을 구하기 어

렵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경우 더욱 심하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인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더라도 법조인이 된 사람과 본인의 처지가 다르다보니 서로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락하는 친구)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응시제한자가 되고 나서 변호사인 제 친구나 저 이제 n시하면서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했던 동기들한테 연락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고 제가 대학 때부터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개는 이제 검사가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로스쿨에서 친했던 언니가 응시제한자가 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또 있으니까 제가 많이 의지했던 친구라서 개랑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넬 로스쿨을 가가지고 졸업하고 8년 만에 6시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딴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 친구도 제가 4시 때부터 계속 막 학원비랑 보내주고 이러면서 도와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렇게만 연락을 하고. 다른 친구나 이제 동기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도 개네들이 뭔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뭔가 내가 응시제한자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P6)

“저는 (로스쿨 지인) 딱 한 명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고요. 그 외에는 제가 굳이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합격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연락을 먼저 하거나 그래야 되는 인연이나 그런 건 많이 없어지죠.” (P2)

“아무래도 동기라고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하면서 연락이 이어져야 관계가 이어지는데 그냥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기들이 가는 변호사로서의 생애 주기 이런 거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스스로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후에 가졌던 직업이 특성상 기자여서 또 법조계 기자여서 동기들을 많이 연락을 해서 좀 연락이 많이 닿았던 특이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그대로 다 친한 친구 몇 명을 빼고는 다 끊어졌을 것 같아요” (P8)

“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인데 제 위아래(선후배) 오탈자들은 연락이 거의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오탈 했는데 동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장을 실제로는 소장을 써주는데 뭐 근데 도장은 다른 변호사 도장 쓰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기 형을 만났었는데 그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로스쿨 지인들과는) 말하기도 싫고 약간 좀 이렇게 진절머리 나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연락을 안 하고.... 그 오탈 되면은 또 이제 대화에 끼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경우) 변호사로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한 3-4년 차 한참 개업하니 마니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이번에 소송 할 때 뭐가 있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오히려 친한 친구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또 이제 안 친한 사람일수록 약간 이렇게 굼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한 번 굼히면 정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P14)

“(로스쿨) 그 친구들 제가 3수 때까지인가 또 연락하고 지내고. 그 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가기도 하고. 그래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 더 만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못 하게 되어요. 저도 자격시험이 생기고 그 친구들도 제가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탈자 말고는. 불편하니까 만나면은 서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P17)

응시제한자들은 대학교 동문이나 로스쿨 동문 모임과 같이 공식적이고 규모가 큰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소수의 친구들과 약한 연결 수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가까웠던 지인과 제한적인 관계를 맺거나, 애경사 소식을 들었을 때 챙기는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졸업한 로스쿨에 대해 가지는 감정인데, 제도적 제한으로 응시 기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소통하거나 교수를 만날 때 죄책감을 갖게 되는 점이다. 학교에 찾아가거나 문의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한 사람의 당연한 졸업생이 아닌, 죄인이 된 것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며, 로스쿨의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에도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불합격으로 인해 본인이 졸업한 로스쿨에서 ‘제외된 존재’이자 네트워크에서 ‘사라진 존재’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로스쿨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 되게 친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만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충분히 같은 구성원으로서 각자 지역에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내가 만약에 응시를 할 수 있으면 같은 동기가 되는 건데 저는 아예 그냥 다른 분야로 돼버린 거라서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관계는 그러니까 로스쿨은 완전히 그냥 제외된 것 같아요. 관계에서. 관련된 것들. (교류) 하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고. (출산 등으로) 시험을 5회 다 보지도 못했던 경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오게 돼서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 원장님께 메일도 드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협의회(법전협)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쭙보고 하려고 했는데 되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P21)

“(인간관계의 단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니까 제가 합격자가 아니니까 합격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공식적이기보다는 1대 1의 관계 위주로 가게 되는거죠... 다른 길을 갔으니까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겠죠... 응시 제한이라는 게 저한테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간관계는 늘 달라지죠.” (P9)

“일단은 (재학 중) 저는 대체적으로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합격한 애들하고는 거의 다 교우 관계가 끊어졌다고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변호사 된 친구 한 2명이랑 떨어진 친구 한 3명 정도랑 같이 연락하고 지내요.” (P23)

“(연락이 있는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도(로스쿨 지인) 저를 보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저를 보는 게 불편한 것 같고 저도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시험 떨어지고 난 후에 제가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은 이제 제가 대역 죄인이 됐어요. 제가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결혼식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다 끝났고. 지금의 남은 인간관계는 이제 다시 (현 직장)에서 친해지는 분들이랑... 이제는 다 사라졌어

요. 그냥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도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P22)

“졸업 이후에는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졸업생들을 챙겨준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P27)

(6)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상호지원 경험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사이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카페, 다양한 단체 카카오톡방, 익명 커뮤니티 등이 존재하며, 수험생들은 시험관련 정보와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공간에 가입하여 소통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 이후 합격자들은 합격자들끼리 법조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불합격자들 역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모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커뮤니티 혹은 단톡방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반복된 불합격과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풀죽어 있거나 우울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이 공유되면서 오히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 유형은 정보를 얻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유형은 커뮤니티가 주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용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이다. 불합격 이후 취업·진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서적 유대를 위하여 가입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새로운 삶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응시제한자 정체성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이나 1인 시위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몇 명을 제외하고 커뮤니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합헌판결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응시제한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커뮤니티 중 하나)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오타자가 되고 저를 서포트하고 같이 동지로 생각하시는 친구 몇 분 계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분도 형들, 형이니깐요. 그분을 이제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 변호사시험 폐지? 철폐연대? 그걸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 단톡방에 있고 거기서 이제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뭔가 바뀔 수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생활에 치이고 이제 이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 포기하게 되

고.” (P17)

“법조 문턱이 너무 높은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몇 명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카톡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구나.. 저도 주로 보기만 하는데 이제 오탈 응시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교수님들과 연락이 됐다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국회나 여러 정치인들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자라는 내용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P3)

“카톡방에도 거기 무슨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 그건 가입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너무 피하고 있고 뭐가 누가 뭐가 주장을 하면 어디 모이자 하면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고 그래. 거기가 완전 카페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직장도 다니겠쥬. 아무 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한 대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오탈자가 조직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명단하고 연락처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천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카페에도 한 200명 되는데요. 반은 전부 다 변호사협회의회에서 나온 애들이고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P1)

“최종 다섯 번째 시험 보고 나서 불합격한 이후에 아마 그 로스쿨 카페였나 그런 데에서 이제 헌법소원 모집한다는 글을 봤던 것 같고. 거기 통해서 이제 단독방에 초대돼서 이제 헌법소원하시는 변호사님 이랑 그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헌법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P27)

“제가 2개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응시 제한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방이고요. 하나는 약간 그냥 잡담하는 방이에요. 취업 정보도 공유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오늘 나의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하고 이런 방이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오탈했다고 좀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원서를 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P19)

커뮤니티에 참여했던 응시제한자들은 1차적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헌법소원이나 1인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조직하기도 하지만, 각각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고, 본인의 생업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을 이어나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험을 중단하기로 한 학생들끼리 조금 서로 의사소통,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가나 아니면은 수험 끝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얻었으면 훨씬 덜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너무 없었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혼자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정보가 주어진다면 훨씬 좋았던,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기본적으로 힘들어서 그게 강하지 않다고 들었고.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도 시험 응시 제한을 푸는 데 목소리를 내자 정도고 또 n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 활발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고 들었어요.” (P8)

“초반에는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정말 너무 얼굴을 안 드러내거든요. 뭘 해도 부끄럽고 뭘 해도 죄인이고. 제가 서초동 변호사 협회에서 하는 그런 뭐 이런 플래카드 들고 행사하는 데도 가봤는데 다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세요. 사실 얼굴이 드러나면 절대 안된다고... 자기 신상은 절대 안 밝히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데 나오지도 않으세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죠.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연락하는 분 한 명인가? 그 분만 알고 지내는 거 같아요.” (P24)

“주로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사실 대부분은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입장이 같으니까 제도에 대한 이탈 제도에 대한 이 부담함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개선책 같은 것도 많이들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지금 크게 사실은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고 제도가 바뀌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에서 오는 답답함 같은 거 외에... 답답함 같은 게 있고.” (P28)

“최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여튼 기사를 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근에 됐습니다... 아마 그 코멘트에서는 그러니까 응시 제한 자체를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한 분이 지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헌법 소원이 몇 번이 각하가 된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입법은 아니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법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30)

게다가 지난 10여년 간 여러 차례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응시제한제도에 변화가 없자 당사자들도 상당히 체념하게 되어 이제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도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분노와 좌절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이다보니 커뮤니티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소통을 하기보다 상처를 주는 언행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는 유일하게 소통할 창구가 이 단톡방인데 또 이 친구들은 너무 날카로워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럴고 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늘리면 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없었던 친구들은 다시 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디 가서 그런 방법도 모르겠고.. 참여를 여기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쪽에서 정보 정보 차원에 정보 차원에서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입은 오탈하자마자 가입을 했었습니다. 가입을 했었는데 무슨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아무래도 자기들도 나이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제 경우랑 많이 달라서 이쪽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친구들도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좀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해로 이런 것밖에 없어요.” (P13)

“느슨한 그런 조직으로 해서 단톡방으로 해서 좀 헌법소원을 계속하시는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초창기 어떤 이거에 되게 공감하셨던 교수님들이 몇 명 계시긴 하셨어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

서.. 많이 교류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떨어져 있고 이제 이거에 희망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좀 희망이 있을 때는 많이 교류가 활성화가 됐는데 너무 사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밖에 사실 제도가 움직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뚫리지 않으니깐 이제 교류도 저조하고. 돈도 없고. 이 단체가 사실은 이 단체가 뭔가 이런 취업 정보...원가의 이익이 있어야지 다들 단체들은 좀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류가 활성화되진 않았겠조... 각자 또 대부분 응시 금지되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거나 아프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잘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거에 다들 다시 돌아가서 생업에 돌아갔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P21)

“분위기가 우선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한자분들 안에서도 상황이 워낙 다양하시니까 또 의견이 합치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모이지도 잘 않지만 모이고 나서 그 안에서의 의견 불일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P27)

소수의 응답자들은 응시제한자 모임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려고 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 위하여 외면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한 잠시 커뮤니티 참여 경험이 있었지만, 소통 공간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멀리하는 사례도 있다. 응시제한자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좌절감과 체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참여자를 조롱하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한다.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상처라서. 안 들어가 봤거든요. 일부러. 남편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쪽에서 알게 된 것이고요...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초반에 사실 몇 달 하고서 한 1년 정도는 들어갔었어요. 개선 여지가 전혀 안 보여서 희망이 없으니까 아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예 몰랐던 사람으로 살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P11)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 게 있다고라고 들은 게 동기가 저랑 이제 같은 상황인데 연락이 와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P15)

“저는 안 들어가는데... 일단 스스로도 너무너무 낮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외부에서 조롱거리가 되니까 솔직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탈자이긴 해도 이게 집단으로 어쨌든 속해서 느끼는 거랑 그냥 진짜 사실적인 오탈자인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커뮤니티도 가입을 해본 적도 없어요.” (P16)

“저는 그런 거(커뮤니티)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지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좀 오래 떨어졌던 같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연락은 하고 있는데 따로 단톡방

이 있지는 않습니다.” (P18)

“응시제한 단톡방에는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가보다 이런 생각인데 유독 변호사시험 안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조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특성상 과격한 말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게 좀 많으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P26)

“응시제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오탈자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롱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놀리려고 들어온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중구난방입니다.” (P29)

“단톡방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다 나왔어요. 아예 그리고 없어진 것도 많아요. 없어진 것도 많고 다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가 응시제한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응시제한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런 뜻은 아니 로스쿨을 출신해서 응시 제한이 됐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그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거리를 두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거리를 두거나 제가 응시제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투자라는 걸 해서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하고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으라는 걸로 검증된 사람인 거지 그쪽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응시 제한자 커뮤니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응시 제한자가 응시 제한 얘기가 주가 되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주가 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응시 제한이 주가 되는 커뮤니티는 거기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나왔고 응시 제한자가 뭐 그냥 삶이 주가 되는 커뮤니티는 또 제가 일반적인 취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왔고...” (P9)

“그나마 이제 좀 소통하려고 찾아왔던 게 이제 응시제한자들 모임 방인데 다들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약간 고인 느낌도 들고 서로 상처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응시제한자라는 공통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피해 의식이나 패배 의식도 항상 있고.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 오탈자들 모임에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오탈자들은 나는 더 이상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는 절망이 내재돼 있고 이게 제도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무기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탈자 방에서 변호사들이 한 얘기 기사 가져와서 서로 욕만 하고 있고 뭐 좀 하자고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이제 오탈자들 치유방 이런 데 들어갔었는데 약간 이제 뭔가 일상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자기의 상황과 남의 다른 오탈자의 상황을 좀 비교하면서 뭔가 자기가 또 더 잘 지낸다는 그거를 확인하려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지지 집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P6)

응답자의 대답을 종합해볼 때 로스쿨에 다니는 시기부터 학생들은 학업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이나 스트레스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차원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신건강

을 유지하는 것을 오직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려운 것이, 로스쿨 학생들은 최소 3~4년동안 학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 시험의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수험생활을 오래 지속한 응시제한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응시제한자는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과 시험제한이라는 과도한 압박감을 겪게 되며,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 속에서 취업시장에 나간다. 응시제한자 집단이 합격자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돌봄의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시제한자의 정신건강과 고립적 상황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늦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응시제한자의 정신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으며,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6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경험: 취업준비와 취업과정

(1) 응시제한 이후 진로 선택의 계기

응시제한자들은 마지막으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미 취업을 하거나 임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로 합격자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응답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최소 3~4년의 로스쿨 과정과 약 5년에 가까운 수험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나이가 최소한 3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긴 수험생활과 많은 나이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취업을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법학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무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법무관련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학부 때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로스쿨 입학 전부터 종사했던 분야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셋째, 분야·직무와 관계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일을 하는 방식이다. 응답자 중 가장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케이스일수록 이러한 방식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배운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되다가 이제 2021년에 들어서 그 구직 시도를 계속하던 중에 안 되고 있다가 2021년에 들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거에 대비해서 이제 관련된 그런 자리들을 좀 충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지원을 해서 처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법무부로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구직을 하는 게 좀 되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이제 요건을 석사를 요건으로 하는 포지션이 열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었습니다... (석사요건은) 사회과학 전반인데, 사회과학 전반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관계학 또는 법학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했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P7)

“여기저기 취업을 알아보는데 이게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고, 가봤자 일반 취업인데 나이가 좀 많은 직원이 될 뿐이고 해서 연구기관, 연구직 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그런 자리를 알아보다가 법원행정처 자리는 마침 그때가 딱 공채 기간이어서 지원을 했는데 덜컥 된 거고요. 저기 지원 자격이 이제 그냥 석사 이상 법학 석사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 석사 자격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바로 지원을 한 경우고요.... 한국은행 행원 시험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 직장)에 먼저 취직이 결정이 돼서 중간에 (한국은행 준비) 접었습니다”(P14)

근데 제가 일을 구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이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한다면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시험 때문에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인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천이나 안산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습다...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법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법무 쪽으로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고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공채로 다 찾아봤고요. (P10)

“사실 제가 뽑힌 게 로스쿨 석사이기 때문에 뽑힌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이긴 한데 계열사이긴 한데 지방에 있는 데라서 저처럼 약간 고학력자들이 수도권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잘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면접 보실 때 오탈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애 시험 경력도 있네? 로스쿨도 졸업했네? 애 뽑아야 돼 그러면서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긍정적인 점이지.” (P16)

“원래 제가 이제 중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1학년 때부터 제가 한양대에서 이제 중재 학회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스무트(Vis Moot)라고 이제 상사 거기 나가서 우리 이제 학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입상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계속 중재나 이런ADR 쪽에 관심이 있었어서 이제 관련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이제 시험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지원을 했죠. 이제 거기 공고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닌데 사람 수가 아무래도 한 40명에서5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시로 나긴 하는데, 딱 어떻게 또 그쯤 해서 구직 활동을 할 때 딱 공고가 났길래 지원을 해서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P18)

“근데 생각보다 석사를 구하는 법학 석사를 원하는 채용 공고가 딱 명확하게 많지는 않아요 계속 그냥 석사 위주로만 검색을 했고 공고가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준모였나 사기업은 잘 준비를 안 했어요. 일단 공기업이나 공사 쪽이 나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래서 공기업 위주라 그런 걸로 많이 봤고 공고를 봐서 쏘조 될 거라고 생각 사실 안 했어요. 한 명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는데 5명이고 5 대 1이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되 잘 돼가지고...” (P25)

“30대 후반 되고 하니까 저 몸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일단은 사기업은 포기했어요. 사기업 나이도 있고 하니까 포기했고. 취업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기업 쪽으로 이렇게 취업 원서 내고 있었는데 (공백) 십 몇 년의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취업할 때 알아볼 때 가능하면은 조금 법학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쪽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너무 특정될 것 같기는 한데 상표 심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학 완전하게 똑같지 않지만은 법학 과목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로스쿨 석사를 대우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해줘서 뽑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지원했지만) 다 안 되고, 안 되고 계약직으로 이제 막 일하고 1년 2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하다가 여기(현직장) 특채 뽑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 가지고 내가 써도 될까 하다가 이제 한번 써보게 된 거예요.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 (P17)

“이제 계약직 공무원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간혹 한두 자리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법제직을 뽑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이게 채용이 안 되다 보면,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데는 조금 낮춰가지고 허들을 좀 낮춰서 이제 그냥 석사 학위만 있어도 1년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원해가지고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P28)

실제로 응답자 중 현재 법학 전공을 잘 살리고, 업무상 법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구한 케이스였으며,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에 법학 또는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상대적으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필기시험 또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법률 지식이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권유나 제안에 따른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시험 보고 나서 2주 뒤에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시험 보고서 이제 (로스쿨)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선배님이 변호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선배님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 선배님도 어차피 일하면서 공부할 거면 실무하면서 하는 게 더 도움 된다는 말도 있어서 그런 권유 받아서 일하게 됐어요.” (P26)

“제가 n시 생활하면서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시험 끝나고 바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서면 작성하는 거를 조금씩 해보니까 그거를 좀 잘한다는 게 있었어요. 빨리빨리 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수습으로 일했던 변호사님께서 되게 서면 기계다 약간 이렇게 칭하실 정도였고 저도 그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채용 형태가 그냥 대표랑 면접을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바로 채용이 되니까 저는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제 보통 기업이나 좀 그런

데는 채용까지 한 톱이 필요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영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약간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서면 작성 여기에 들어간 거죠.” (P6)

한편 법학 전공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탐색하거나 로스쿨 입학 전부터 경력을 쌓았던 분야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로스쿨 입학 전에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간호대나 사범대 등을 졸업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직종으로 복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면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해당 업계에 맞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절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취업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저는 이제 두 번의 시험을 보고... 업계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일했던 경력과 라이선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 당시 두 번째 시험을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불합격이 됐고 우연하게 시험을 본 이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니게 된 거죠.” (P3)

“...그때부터 이제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하게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기사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공부랑 병행을 했고, 공부는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 기자 생활 한 1년 했거든요... 기자들은 웬만한 대형 메이저 언론이 아니면 다 최저시급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 이 생활로는 이제 생계를 못 꾸리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기술 웹 페이지 만드는 거랑 이미지 작업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쪽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글 쓰던 게 오래됐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좀 결합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P5)

“그때 제가 약간 번아웃처럼 너무 지쳐 있던 때라 좀 뭔가 추가적인 일단 공부를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수험 공부를.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좋아하고 제가 준비돼 있는 직역 위주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론, 글을 쓰는 제가 잘 하는 언론사 쪽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라거나 행정고시나 공무원이나 이런 직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봤는데 그런 시험을 다 제끼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찾았어요.” (P8)

“전업 투자자였는데, (수험기간에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근데 졸업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됐었는데 거기서(관련 업계 커뮤니티) 제가 쓴 글을 보고서 연락을 왔어요. 혹시 일을 좀 해 주시고... 열심히 글을 썼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안은 그쪽이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이런 일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P9)

“제가 변호사시험 준비랑은 관련 없이, 거의 관련 없이 전 이전 직장 경력이 있어서 그 경력으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경력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아기를 좀 더 키우고... 사실은 바로 어차피 시험을 볼 수도 없었어요. 아기 낳고 좀 키우고 나서 이제 출산을 다 끝내고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일하기까지) 이게 시험 응시하고 나서 3년?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지인이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P21)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기가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또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가서 (기간제 교사 합격 후) 일을 하다가 (변시 5회차)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공고 나오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저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제가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교사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요 교사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지내고 있어요.” (P22)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부생 때 학원에서 잠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P28)

“아기가 어렸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니깐 취업하는 데 좀 제약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어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여기 단체에서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제안을 주셔서 하게 되었어요.” (P27)

마지막으로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의 질이나 본인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금이 쌓여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응답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는데,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법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차후 괜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 병원비 문제) 인력 시장 나가면서 이제 그쪽도 이제 나름대로 인생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큰 건설 현장에도 가보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 자동차 배 같은 거 그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한번 해볼까? 왜 그러냐면 노가다를 평생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술비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서울 시내버스가 25일 일하면 실수령액이 390이래요. 근데 마을버스 경력 2년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장난감 재밌게 갖고 놀던 기억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고 괜찮다고 하길래 이제 제 이해관계랑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택시로 갈아타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그래도 교육시켜 준 게 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갖고 살아야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택시 살 때 지원받고 그 대신에 부모님 소원대로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해서 공인증개사 합격했습니다.” (P23)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도 나이가 있고 환경적인 그런 거 때문에 취업문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저도 사실 몸이 불편하지만은 배달 알바도 했었거든요. 자전거도 타고. 배달 자전거도 운동도 다니면서 그

런 것도 했었고...” (P17)

“나가서 일자리 조회를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배달 일도 하고, 끝나고 나서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거기서도 일하고...” (P2)

“저처럼 이제 나이 먹고 라이선스가 없으면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고. 왜냐하면은 뭔가 경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응시금지자들은 다 같은 어려움이 있죠. 저도 실제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만 가지 알바를 다 전전했구요. 근데 사실 대학원 나온 거는 알바할 때도 쓸 수가 없어요. 설거지 하는 것도 안 써주더라고요. 다 그런 종류의 고통을 겪죠.” (P5)

이처럼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진로를 결정했다기 보다 취업가능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기회가 주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또다른 시험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공부하고 있습니다... 회계나 세무 쪽이요... 변호사랑 (마주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P4)

(2) 구직 활동 기간과 구직 방식

변호사시험을 중단한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게 취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학 전문성을 어느정도 살릴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상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정도 시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그에 필요한 다른 역량 (자격증 취득 또는 토익점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응답자들이 법률지식 활용과 무관하고,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더라도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빨리 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직에 소요되는 기간을 논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급적 빨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냥 토익을 탄다거나 구직 준비를 했었어요완전히 (주변 도움없이) 혼자 준비했고 주변에서도 그때 오탈자보다는 그런 시험 중단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시점이라 뭘 정보를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변호사가 아닌 그냥 로스쿨 졸업장만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할지가 좀 감이 안 오는, 그냥 다 같이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P8)

“저는 이제 그 당일 저녁에. 11시가 넘으면 채점결과가 올라오는데 그날 채점을 하고 저는 이미 검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께 “제가 채점을 해 봤는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

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매우 침통해 하셨지만 그래도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그러면 취업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좀 웃픈 게 저는 처음에 넣자마자 돼서 취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400장 쓴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합격한 언론사) 기사를 하게된 거죠.” (P5)

“그때 이제 예탁결제원이랑 시험 봤던 데가, 국정원도 시험을 봤었고, 그 또 어디 갔더라. 그때 (채용공고) 나왔던 것들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1차 통과했던 것들은 이거 두 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서류 통과해서 들어갔던데 시험 보고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고.” (P18)

“한 4개월 5개월 정도...저는 빨리 굉장히 빨리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돈(대출금) 갚는 게 급해가지고. 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속 면접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비교적 빨리 취업을 한 겁니다.” (P28)

“저는 취업 활동 시작하고 처음 서류를 넣었는데 그냥 바로 합격해서 그냥 바로 갔습니다... 제가 일단 면접은 되게 잘 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면접은 되게 잘 봤고 그 직장에 계신 분들 중에 로스쿨 오탈자 출신이시던 분이 저말고 계셨었대요. 그분이 일을 되게 못해서 사실은 면접에 부르기엔 불렀는데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스펙은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전에 했던 사람이 있으니 애도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장님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렀는데 불려서 면접을 가보니까 괜찮더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많이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대해서 회사가 하는 업무 그다음에 회사 법무팀이 하는 업무까지 다 준비를 좀 많이 해갔거든요. 많이 해가서 면접을 할 때도 이런 이런 업무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답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리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냐까지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 좀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P10)

“로펌 쪽도 좀 썼었고요. 그리고 법률 관련된 거, 법무 관련된 거 그냥 그렇게 키워드 나오는 데는 다 써봤던 것 같습니다... (구직기간은) 제가 중간에 막 여행도 가고 해서 설렁설렁해서 3개월... 일단 교수님들 정말 도움 안 되었고. 선배들 친한 사람들은 다 변호사라 그 사람들도 약간 교수님하고는 다른 의미로 도움이 안 되어서 다 잡코리아 아니면 사람인, 대기업 취업 홈페이지, 이런 거 찾아봤어요.” (P16)

“돈을 벌어야 되니까 취업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되는 데가 그나마 뭔가 나이 제한으로 안 뽑으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도 공정하게 채용을 하니... 그래서 조금 낫지 않을 그래서 그쪽(공공부문)으로만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구직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기업도 많이 썼는데 아예 사기업에서는 탈락하더라고요.” (P11)

“몇 번, 몇 번 좀 떨어졌다가 그래도 금방 구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오래 걸리지 않고. 처음에 시작은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지인의 일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저희가 이제는 임기제 그런 업무에 대해 바로 3년 동안 공백 있으면은 바로 지원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경력이 경험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에 되게 그냥 약간 프로젝트성의 그런 일을 참여를 한 건데 그게 경력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 갖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P21)

구직에 성공한 응답자들의 경우 본인이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빨리 채용이 되어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나, 수개월 이상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거나, 여러 차례의 불합격 경험을 한 후에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기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장기 실업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

“탈락이 계속되니까는 조금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생각보다 (취업까지) 이렇게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2년까지 걸릴 줄 몰랐어요. 그 빨리 그러니까 최종에서 이제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는 조금 의욕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로스쿨 나왔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스쿨 나온 거를 물어보는 데도 있었어요. 법무 직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로스쿨 교수 추천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역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30)

응답자들은 불합격 이후 사회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유사한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스터디·학회를 운영하거나, 인턴십을 경험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응답자들은 철저히 혼자 알아보고 지원을 하고 있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대체로 법학과 관련한 업무를 우선순위로 두어 지원을 한다. 주로 일반적인 구직사이트를 살펴 보거나 임기제 공무원, 정책연구 관련 공공기관 등의 채용공고를 먼저 살펴보고 법률사무 관련 직종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많은 응시 제한자들이 심적으로 더 편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간에 출산을 한 여성 구직자들은 자녀 유무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선호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블라인드로 뽑기 때문에 제 나이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그 덕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강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P19)

“그 당시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그때 들어왔었고요.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면서 그때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P30)

“저는 일단은 그 당시에 공기업들이 블라인드로 하고 있어서 그게 저한테 제일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말고 한 군데 정도 더 원서를 냈었고요.” (P15)

“제가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일터 같은 거. 그런 데 나 이제 특별히 제가 예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하는 그런 취업 정보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했었는데 대부분 변호사 위주들이고 그리고 또 일반 공고도 다 변호사 위주였기 때문에 없어요. 뭐 공준모? 혼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변 분들한테 정보 얻은적 있나?) 없습니다.” (P17)

“석사 학위를 내밀면서 여기저기 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실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나라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소서랑 뭐 가서 면접을 잘 보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이랑 뭐 자녀유무 이런 게 다 블라인드가 돼 가지고... (나라일터) 공고를 보다가 올라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라일터에) 보통 계약직이 주로 올라오죠. 1년 단위나 뭐 이렇게 임기가 있는 그런... ‘관련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석사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채용이 됐습니다.” (P20)

특히 로스쿨 설립 초창기에 입학한 응답자들의 경우 더욱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구직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변호사시험 회차가 쌓일수록 공공부문의 법률 관련 직무에 응시제한자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이 누적되어 또다른 응시제한자들이 지원하거나 채용이 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 재직자가 회사에 또 있는지?) 제 이전에는 없었는데 제 이후에는 이제 후배들 중에 (응시제한자 입사자) 좀 생겼어요.” (P15)

“(응시제한자 입사자가) 저 전에도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제가 이제 인사 총무를 이번에 처음은 아니라서 저희 회사 지원 많이 하세요... 이제 로스쿨 나오신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지원을 가끔 하세요.” (P18)

(3)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

구직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로스쿨 졸업자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애매한 위치에서 구직을 하게 된다. 그래도 법률 유관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제한의 경험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가 공채 면접 봤을 때는 앞에 그 판사님들 앉아 계셨었고. 대놓고 물어보던데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그럼 올하는 그럼 뭐 그러니까 몇 기면은 올해가 몇 회 번시야 뭐 그게 몇 번째 본 거지 뭐 그러면은 원래 4월 언제쯤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저는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P14)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블라인드로 모든 채용 과정이 진행이 되고 필기시험을 두 번 정도 보고 그리고 그 면접을 또 두 번을 보는데 이 면접을 볼 때 일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까지만 보고 자격이 있냐 이런 거는 딱히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면접 보시는 분들은 그냥 로스쿨 졸업했으면 변호사거나 아닐 수도 있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필기시험 전형에서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면접 전형에서는 또 이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에 대해서 저도 그거를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갔었는데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P15)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직역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법 관련된 행정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이제 로스쿨이 어땠냐라고 물어보지는 않고요. 거기 일반적으로 경력 사항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경력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로스쿨 경험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저는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인턴이나 관련해서 일했던 내용들 이런 거를 주로 물어봤어요.” (P18)

그러나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잘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하여 구직 과정에서 오해를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지원자라면 당연히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시험 탈락자에게,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다시 시험공부를 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면접에서) 변호사시험이 안 된 거냐고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뭐 면접에 갈 경우에 또 시험 친다고 다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탈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P7)

“(여기저기 기업 법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의 무용함을 강조함) 일단은 석사학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저도 조경회사 법무팀도 면접 봤는데 딱 불렸어요 대표님이 ‘변호사 자격증 있어 없어?’ ‘없는데요?’ ‘로스쿨 나와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반인들은. 근데 나왔는데 없어요. 합격하지 못해요. 절대 합격하지 못해요. 기업 면접에서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초창기 기수라 그거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절대 안 뽑아요. ‘어 이거 있는데?’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줄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근데 없어요. 그 없는 거를 어떻게 서류 보고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없잖아요. 면접 때 그 변호사 자격증 등록 번호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몇 번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취직도 이제 노가다 하면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그 서류 통과는 돼요. 가방끈이 기니까. 근데 면접에서 다 탈락해요. 불지를 못해요. 석사학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P23)

“(변호사시험에 대한 질문) 거의 다 필수고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순수한 악의라고 할까요. 왜 변호사는 안 되신 거예요? 로스쿨은 졸업하셨는데? 이런 느낌. (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제가 다섯 번 안된 건 안 된 거니까, ‘다섯 번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법무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고.” (P16)

“다른 언론사도 지원했는데 그때는 그냥 (로스쿨 졸업자인데 변호사가 아닌 지원자가) 독특하다고 보는 시각? 그냥 고시생으로 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P8)

“제가 연구 간호사 때, 교수님, 저를 뽑아주신 교수님께는 로스쿨을 적었어요. 근데 그 분은 이제 혹시 시험보러 돌아갈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못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를 로스쿨에 썼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제일 아깝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이력이 돼서 아무 데도 쓸 데가 없고.” (P24)

“사실 인식이 안좋다기보다는 몰라요. 아무래도 (오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쓰면은 로스쿨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인줄 줄 알고 면접 가서 변호사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오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니까 알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저 같은 경채로 들어온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실 법조 인력과 업무 보고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오탈자 들 대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질문 같은 거 답하는 것도 보면은 취업 기회 같은 거를 넓혀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P11)

“일단 그 면접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면접관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공무원을 뽑으면 로스쿨 교수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뽑는 거는 사실 로스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로스쿨에 대한 설명과 시험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P28)

위의 진술에 나타나듯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사람들은 5회 불합격 후 영구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채용과정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 오해는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로스쿨 졸업이 아주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아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로스쿨 졸업 사실과 오랜 수험생활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있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법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계획대로 일자리를 빨리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기 위하여 일자리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직무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졸업 경력이 오히려 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고용주에게 불필요하게 자신의 수험생활과 불합격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법률과 상관없는 직무에 지원한 것이라 로스쿨 졸

업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지만, 직무를 가리지 않고 빨리 취직을 하기 해서 무용한 경력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한다고 하는데 당신 석사학위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없는 게 백번 낫습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대부분 오탈자들은 석사학위 땀다는 거.” (P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기업 쪽으로는 거의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법무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지만 거의 안됐거든요... 일반적인 취준생들보다 취업 준비생들보다 한 7년에서 8년 내지를 더 소모를 한, 무경력으로 소모를 한 끝에 이렇게 그 취업 시장에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법학 전문 석사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시그널링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법학 전문 석사가 있다고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다 되는 변지도 떨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시그널, 마이너스 시그널링을 안고 이렇게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경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변호사가 없는 법학 전문 석사는 네거티브 시그널이고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너무 없느니만 못한 학위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네거티브 시그널링을 이제 7, 8년의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또 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P7)

“그냥 사람인 채용 공고에 그러니까 약간 급여에 대해서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채용 지원을 했던 거예요... 법학 전공자 우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이제 급여는 협의 가능하고... 대표랑 변호사들은 (로스쿨 졸업 사실)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한테 제가 말을 석사 나왔다, 로스쿨 나왔다는 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수습 들어오는 변호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증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학력란을 쓰잖아요. 거기에 그냥 전문대학원은 뺐어요... 그냥 전문대학원에 나왔는데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가 너무 사실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그걸 밝히고 싶지도 않은 거죠.” (P6)

“근데 저는 뭐. 애초에 친구가 저의 상황을 알고 데려간 거고. 회사는 제가 대표니 딱히 그런 게 없는 데, 저처럼 응시 금지가 된 다음에 창업을 하는 사람도 몇몇 있을 테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스쿨 졸업을 알리는 데에) 심적으로 괴로움이 많죠.” (P5)

변호사시험 시기와 합격자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었다. 대개 1월에 변호사시험을 보고 4월 하순에 발표가 나는데, 이는 합격자에게도 불합격자에게도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일정이라는 것이다. 로스쿨 재학중 법률사무소에 컨펌이 된 경우, 불합격시 회사를 다니다 바로 나와야 하고, 반대로 불합격을 예상하고 취업을 했는데 만약 변시에 합격할 경우 바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또 하나가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삼시 마치고 바로 취업) 그 사이에 취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취직했다가 짐 싸고 나와야 되면은 그거 진짜...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변시를 보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4월 1일 임용됐는데 변시 합격 발표 전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면접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나가는 거 아니냐-이런 얘기를 하길래 붙으면 한없이 좋을 거지만 아마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삼시 불합격 예상했음) 그냥 취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로펌도 로펌인데 일반 사기업 법무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채용을 하는 거...” (P14)

(4)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구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불합격 직후 심리적 충격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빠르게 잡마켓에 뛰어들어야 하는 점, 별다른 업무 경력이 없는 채 나이가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로스쿨 입학 후 최소 3-4년, 길게는 8-9년간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취업의 어려움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취업 준비과정에서 지인들의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각자도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취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회적 연계단절은 새로운 진로 모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학 전에도 특별한 경력은 없었던 거고 또 졸업 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다시 재취업할 때에 있어서 그 경력 단절된 기간이 좀 크리티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것 같고...” (P27)

“나이는 그리고 이게 최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나이가 많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데 그거를 설명할 만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쉽지 않은 이유는 35세라는 나이에 적절한 경력을 못 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응시 제한을 하든 뭘 하든 그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먹고살 길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35살이라는 나이에 맞는 경력을 가질 수 있는 보조를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P9)

“(채용공고에는) 그냥 서면 작성 경력 좀 있고 법대 졸업하고, 로스쿨 이런 거는 없었고. 또 약간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 채용 형태가 그냥 대표랑 면접을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바로 채용이 되니까 저는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제 보통 기업이나 좀 그런 데는 채용까지 한 팀이 (기간이) 필요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영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P6)

“(면접때 질문) 그냥 쿨하게 저는 다섯 번 다 끝났고 저는 여기서 뽑아주면 일 열심히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시험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저랑 그 시험에

결이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P25)

“지금은 뭐 나이만 훨씬 더 많이 먹게 해버리고 내보내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사법시험 시행하던) 그때는 4년 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 30초반에라도 돌릴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30대 중반이니까 응시제한 걸려버리면. 빨리 가도 그 정도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P4)

“로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인턴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저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 순전히 그냥 공부만 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그런 거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인턴 경험을 쓰면서 날짜를 썼거든요. 인턴 경험이나 경력 사항을 쓰게 되면은 그 앞에 날짜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날짜 사항 날짜가 예예. 근데 그 상황에는 제가 좀 빈칸이었으니까.” (P30)

“지금은 그전의 경력을 살릴 수도 없고 이 로스쿨 경력을 좀 그렇게 홍보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 경력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정규직으로 경력직을 뽑지 않으니까 정규직으로 신입으로 가기에는 나이가...나이가 또 많고. 그리고 그게 배운 거가 졸업하고 이런 게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P21)

“제가 심리적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공황장애가 생겼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몸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인터뷰 참여) 하는 거고...” (P17)

응시제한 이후 나름대로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계속 불합격을 경험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력이나 외국어 능력 등을 갖추었음에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취업에 성공했지만, 급여 수준이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에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연구직이나 공공기관 대학교직원 등) 다른 직업은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지금 45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계약직에 뽑힐 나이도 아니고요. 지금 임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나이에 저를 밑에 계약 직원으로 부르기 힘든 것도 이해하고. 당연히 사회초년생 뽑지 왜 나를 뽑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공기업이 조금 더 나이에 제한이 적다고 해서 공기업 쪽으로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고)... 저 사실 영어 성적도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계속 넣고는 있는데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 법무팀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아깝잖아요. (법학공부)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그것을 그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P22)

“(응시제한자라는 사실이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계약직 뽑는 거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거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로스쿨 교수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인 줄 아니까. 그랬는데 좀 비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서. 거의 안 됐었거든

요...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썼는데 다 안 됐었고 면접까지 갔는데 다 안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기초 지자체가 하나 됐었거든요.” (P28)

“취업 준비를 했어요. 공공기관은 그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때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필기시험 준비해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 한 15개 정도 2년 사이에 15개에서 16개 정도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최종에서 다 떨어졌어요. 최종에서요. 예 필기는 되고 그러니까 1차 면접은 전공 같은 거 물어보니까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최종에서 이제 딱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최종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한 15개 정도 16개 정도.” (P30)

“솔직히 말하면 정말 험타오고요. 법학전문대학원 안 오고 제가 바로 그냥 취직을 했으면 훨씬 공기업이라든지 좀 더 좋은 데를 잘 취직을 했을 거고 그럼 지금 한 500 이상은 벌고 있을 텐데 제가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계속 좀 험타가 많이 오고 이 소득 수준으로는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나오고 n시 하면서 쌓였던 빚을 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제 한 달 삶을 그냥 겨우 영위하는 데 좀 빠듯한 수준이어가지고 더 이제 급여가 좋은 곳을 옮기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여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 좋은 직장으로 갈 만한 여유도 없고 사실상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받아줄지에 대한 고민도 되고 급여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막막하죠.” (P6)

“직업을 저도 지금 제가 좀 특수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일반적인 취업을 하려고 했죠. 근데 많이 취업이 까였죠...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을) 다 밝혔죠. 안 밝히고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다 밝혔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직무에서 요구되는 많은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로스쿨 경험이 그렇게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자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지원자는 아니기 때문에 탈락했겠죠.” (P9)

현실적으로 비법조인 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대안적 진로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많은 응답자들이 로스쿨 졸업생이지만 법조인이 아닌 상태에서 커리어 포지셔닝하기 애매하고, 그로 인해 마땅한 취업처를 찾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로스쿨에서 이게 또 엄청난 그런 법학적인 전문가가 되느냐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전문가가 필요하면은 로펌을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부르지 (법을 전공한) 일반 직원이 필요하지 않고...” (P14)

“변호사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된 상태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운이 따라줬던 부분인데 그래도 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지만 내가 노력했던 것을 살리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가 안 됐더라도 그런 법에 관련된 그거를 살리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그런 게 좀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P8)

물론 나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와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 커리큘럼 보완이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능한 영역이다.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법조 직역인 판사·검사·로펌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 연구자, 공익법률 분야, 리걸테크, 기업법무, 공공기관 법률사무 등 다양한 진로 분야를 소개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법률가 직무의 경우 그 규모와 종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에 어떠한 직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로스쿨에서의 진로 교육이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어 있는데, 법률직무 생태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졸업생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역량을 기르게 할 수 있다.

“(로스쿨 네트워크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 갔다더라 이런 거고. 대부분 그냥 공기업 이런 취업 시험 준비를 해서 그 사실 대학 졸업생과 다른 없는 준비 과정을 똑같이 같이 그냥 하는 거지 로스쿨 졸업생이라고 해서 뭐를 특별히 더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P21)

개별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이슈로 인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합격”을 독려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커리어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매년 100~200여 명의 비법률가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 로스쿨 교육의 한계점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많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양한 직무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직장 생활 경험

(1) 현재의 직업

응시제한자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크게 법률 관련 분야인지 여부에 따라 직종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법률 관련 분야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부·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법무 직렬에서 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법률 관련 분야 중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서면 작성 업무, 사무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단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라고 해서 목동에 있는 법률사무소고요. 거기서... 나 인 투 식스로 일을 하고... 저녁이랑 주말에는 제 회사 업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 다 정규직으로 볼 수 있죠. 서면 작성을 보조하는 일을 법무법인에서는 하고 있고요. 서면 작성 보조라든지 소송에 필요한 이제 기능적인 절차들 있잖아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수령하고 뭐. 우편 전달하고. 이제 이런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법무법인이나 이제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문이라든지 이런 언론 대응 쪽도 도와주고 있고.” (P5)

“법률사무소 ○○이라는 데서 형사 서면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사건 거의 하는데 뭐 사기, 성범죄도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도 있고 그냥 주시는 사건 이제 피해자면은 이제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거를 작성하고 이제 고소인이면은 고소장 같은 거 작성하고 이제 제가 이제 형사 서면을 담당하는 쪽으로 뽑혀가지고 거의 이제 형사 서면 위주로 쓰고 있어요... 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제가 지금 세후 350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업처럼 급여 인상이 그러니까 1년 되면은 인상을 해 주겠다 인상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봉이 오를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시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탈 이후에는 계속 그냥 이렇게 서면 사무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P6)

다음으로 사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내 변호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인데 코스닥은 올라가있는 상장사이기는 한데 중소기업에서 법무팀 법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집에서 학비 지원 같은 걸 잘 못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도 5시까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을 하면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시험을 다섯 번 다 보지 못했는데 일을 하면서 봤었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가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당시에 첫 직장이 있었는데 좀 정식적인 첫 직장인 거죠. 그전에는 다른 회사에 잠깐 잠깐 1년 정도 다녔었으니까... 24년 1월 자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직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다섯 번째 직장인거죠... (고용형태는) 정직원... 사내 변호사의 업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P10)

“제가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법무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 한 번, 정규직 한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회사예요. 제가 24년도 4월에 이제 최종 불합격을 했는데 그때 8월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었어요... 첫 번째 회사는 사실 법무라기보다는 법률을 다루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직이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월에 쫓겨나서 5월에 취업해서 이제 법무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 근데 거기도 좀 중소기업이었는데 노동자 대하는 게 너무 부당해서 내가 바꾸지 못하니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찾다가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 자리가 났길래 거기서 이직을 바로 환승 이직을 했어요. 이제 4개월 됐어요.” (P16)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저 지금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행정소송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전에는 난민 심사 업무를 하다가 2024년부터 지금 소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7)
“법무부 경력채용.” (P11)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4년...4년 전에 됐고 비슷한 일을 6년 전, 7년 전에 했었어요.” (P21)

한편 법률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의 일반직으로 채용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한 경우, 그리고 학부 전공을 살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투자자문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레터를 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밤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그리고 가령 추세추종적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가령 지금 삼성전자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추종적 관점에서는 몇 일 선이 깨질 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제가 주 60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무 시간이 한 달에 그래서 프리랜서 3.3% 사업 소득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세

법적 고용 형태의 관점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9)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입사해 가지고 지금 8년 차인데요.” (P15)

“2018년 7월 ○○○○○○○○ 입사였습니다.” (P18)

“원래 저 간호사로 일했었고요. 간호사로 일할 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었고요. 연구 간호사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법률사무소로 이직을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로스쿨로 입학하게 된 거고요. (응시제한 이후) 연구 간호사로는 한 4년 정도 일했습니다 ... 육아 때문에 지금... 그만뒀는데, 내년쯤에는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P24)

“지방에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입입니다. 고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입니다.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일반 회사처럼 연봉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비율제로 보통 하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좀 잘 되면 또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서 연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8)

다만 무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P1)

“무직.. 알바 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데도 총무하고 그랬어요.” (P13)

(2) 직장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장 및 업무에 대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학력이나 나이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 등이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소들이었고, 특히 직업적인 발전의 전망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만족도가 더욱 낮아졌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의 격차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불만은 없고요. 근데 그거는 있죠. 그니까. 내가 라이선스가 있었으면은 내가 친구한테 받는 돈의 2배는 받았을 텐데, 그런 거는 조금..” (P5)

“법인에서 서면 쓰는 거를 찾는 데에 지원을 하는 건데... 서울에 있는 높은 데는 진짜 300도 안 주려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데가 남양주예요. 거기가 지금 세후 350 주는 게 그나마

조금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깐 결국은 그냥 대학 졸업한 애들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취준을 해야 되는 건데 나이에서 이제 디메리트이 되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서면 주는 거 이제 열심히 쓰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널널하고 더 빨리 쓸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너무 빨리 쓰고 하니까 변호사 다른 어쨌든 변호사님이 좀 싫어하시더라라고요. 대표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절해 가면서 좀 천천히 쓰고 있고...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급여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별도의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집에 오면은 거의 방전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또 어떤 에너지를 내는 게 또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제가 공기업이 목표가 아니었던 사람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동기가 부여도 안 되고. 그래도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가는 분들도 있길래 공고를 찾아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막 그냥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가는 상황도 아니고.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보좌관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봤는데 국회 경험이 없으니까 안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직장에 있는 거죠. 매일매일 사실 자괴감이 들죠. 매일매일. 왜냐하면 변호사를 직접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먹고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직장에서 그걸 티를 내지 않죠... 뭔가 응시제한자들이 가져온 전문성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활용하고 자기도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역에 대한 그런 제도적 지원 자체가 하나도 없죠.” (P6)

“딱히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게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건 간에 이제 라이선스 홀더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맥시мум 10년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부터 뭘 하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이민청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성취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되게 항상 부족할 것 같고... 그 외에 선택할, 지금 오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라고 하면은 지금같이 약간 공무원. 공무원도 사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들이랑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업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면 몰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천할 만한 길은 아닌 것 같다.” (P7)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정확하게 공공기관은 아닌 유사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속도 보장이 되고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서 하는 업무가 되게 획일화적인 업무라서 제가 좀 발전이 없겠다... (이직을 한 이유는) 다양한 업무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면접 과정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노사 노무 이슈가 조금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아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업무 내용적으로는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비해서... 좀 봉급이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그것만 있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힘은 들지만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P10)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를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뭔가 제가 아쉬움이 자꾸 드는 거는 이게 로테이션을 계속 돌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문성을 계속 쌓고 싶어서 회사에도 계속 그걸로 어필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필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회사 운영하는 방침이 있는데 그걸 또 저 개인을 위해서 바꿔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P15)

“너무 불만족합니다 6급은 변호사를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지금 여기 제가 특채가 된 게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한 3~4년 전에는 이 자리를 6급으로 뽑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7급이거든요. 근데 7급은 원칙적으로 심사 업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심사 보조거든요... 저는 이제 6급으로 승진해가지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승진하려면 처음에는 2~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한 4~5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럽다.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급여도 너무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 좀 승진도 하고 좀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P17)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육아에 좀 아무래도 제도가 잘 돼 있다 이 정도 그 정도고 제 예전에 막 직장 생활 했던 거나 뭐 로스쿨 다녔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사실 만족하긴 힘들죠. 그때 기대했던 저의 어떤 미래의 모습에 대비해 보면은 근데 그전에 너무 좌절을 많이 했고 이제 취업을 과연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P20)

“(원했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해 한 해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냥 가끔 이 로스쿨 제도 어떻게 변할지 가끔 검색해 보는 정도로. 이게 정말 제 나름대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이게 다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게, 내가 그만큼의 잘못도 없는데...” (P22)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같은 직장에서도 입직 경로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직장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일단 일반 제가 진짜 애매한 게 일반 공채 출신 직원분들은 되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력채용 자체를... 안 좋아하시고요. 자기 자리를 왜 승진하는 데 좀 경쟁을 하게 되니까 안 좋아하시고...” (P11)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또한 현재의 대우나 소득 면에서 한계를 느껴 전문성을 높이고 이직할 곳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이직 자체는 아예 배제하지 않은 게 지금은 이제 전문임기제 다급이니까. 이게 다 좋은데 연봉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소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50대 결혼 및 자녀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억 단위가 아니면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짧게 생각하는 이직 장소로는... 소위 말해서 전문 임기제인데 더 높은 직급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임기제인데 그 서기관급 3급 공무원 대우 서기관급 이런 자리가 이제 석사 취득 후 관련 경력 8년 이상 이제 지원 요건이, 아니면은 박사 취득 후 4년 이상,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 공무원 쪽이긴 한데 지금 와서 사기업 가봐야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로펌의 연구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공기관의 법률 연구 이쪽이 그나마 제가 가진 걸 제일 비싸게 사줄 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P14)

“지금 업무 내용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성장 가능성이 없죠. 제가 진급을 한다거나 월급이 오른다거나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 3년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우가 나쁘진 않아요... 무기계약직이라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어서 경력직 공무원 자리가 있으면 계속 쓰고 있어요.” (P25)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와 계약직인 경우 사이에서 직장 만족도에 큰 격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 정규직인 경우) 워라벨이 저희는 최고의 장점이고. 급여는 조금 아쉽지만, 워라벨이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퍼가 있으면은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직장 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크게 지금 당장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은 이직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P18)

“신분이 계약직이니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좀 이어지긴 하는데... 변호사들은 이제는 이직이 같은 일을 해도 어쨌든 이거는 면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쳐주는 건데. 그 업무를 비슷하고 더 같이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좀 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저는 이직의 자유가 없는 거고... 로스쿨을 오면서 되게 저의 경력이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그전에는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는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정규직은 다 신입만 뽑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21)

비교적 법학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요. 결국에는 행정법원 가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로서 그 사건을 거의 다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서를 쓰고 그걸 보고를 하고 회의에 올리고 뭐 이런 업무를 해요. 그래서 행정법원 같은 역할이죠...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거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래서 업무는 사실 지금 법학 석사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소송도 들어오면 답변서도 가끔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변호사를 뽑았다고 해요. 변호사를 뽑던 자리인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자주 나가고 그 정도의 변호사가 필요한 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법학 석사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P25)

“여기는 오로지 딱 상담하고 송무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변호사는 못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또 만족스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쪽 일했던 것 같아요.” (P26)

(3) 현재의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응시제한자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보다 높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의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더 낮은 연봉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제가 현 회사에 들어올 때는 ○○○○○○ 다닐 때보다 더 낮은 연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로스쿨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정도 줄여서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불안한 상태고요. 불안정하고요. 물론 소득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고... 그래서 소소하게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3)

“제가 지금 이 양쪽 다 합쳐서 그냥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세후 한 700 정도는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소득에 만족은 없잖아요. 이제 계속 끌어올리려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거고. 계속 이제 업무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후 7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급여 소득자로 환산하면은 한 1억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P5)

“솔직히 말하면 정말 현타오고요. 법학전문대학원 안 오고 제가 그냥 30대 초반 뭐 이럴 때 바로 그냥 취직을 했으면 훨씬 공기업이라든지 좀 더 좋은 데를 잘 취직을 했을 거고 그럼 지금 한 500 이상은 벌고 있을 텐데 제가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계속 좀 현타가 많이 오고 이 소득 수준으로는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나오고 n시 하면서 쌓였던 그 빚을 터는 것도 너무 어렵고 제 한 달 삶을 그냥 겨우 영위하는 데 좀 바듯한 수준이어가지고 더 이제 급여가 좋은 곳을 옮기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제 좀 여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 좋은 직장으로 갈 만한 여유도 없고 사실상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받아줄지에 대한 고민도 되고 급여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막막하죠.” (P6)

“8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만족하냐고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자기 거에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59시간이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정도 받으면 솔직히 시급이 나쁘지 않니까요.” (P9)

“저 지금 4,700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앞에는 고용 구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었었고 지금은 금액적으로는 늘긴 늘었습니다.” (P10)

(4) 법학 관련 전공지식의 활용 정도

현재의 업무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활용되는 정도와 방식은 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법률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법률지식과 법률문서 작성 능력 등을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좀 더 넓은 법 이해력 그리고 법을 활용해서 실무를 좀 더 다양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개선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 현 회사에 있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P3)

“그래도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내가 중간 포지션으로서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취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은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테지만... 직업적 인정이라고 보기는 좀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포지션은 사라져야 될 포지션이니까.” (P5)

“저는 서면 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되게 적성에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있고... 너무 재밌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낮은 급여를 받고 저보다 훨씬 서면을 못 쓰는 이제 변호사가 제 서면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다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속상하죠.” (P6)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저희 회사 환경 변경 때문에 검토 양은 좀 줄었고 지금은 오히려 송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무를 담당 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 담당 직원으로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 변호사와 컨택을 해서도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회사 지금 노동법 쪽으로도 약간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송무가 제일 큼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적 개념들을 일반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고 특히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본인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쓰시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이나 법에 그러니까 소송 준비할 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법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말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든지 아니면 결국에 일방적으로 유의한 내용이라서 결국에 무효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제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걸 마인드 같은 건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냐 없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P10)

“네 법 직렬로. 이제 저희 회사가 법 직렬, 경영 직렬, 경제 직렬 이렇게 뿔고 있는데 저는 법 직렬로 응시를 해가지고 법 직렬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여신 업무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법 직렬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무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법무실 배치됐었고, 법무실이나 컴플라이언스, 기업 구조조정 이런 쪽에서 했었습니다.” (P15)

“저희 회사가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붙어 있는데 주로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검토, 계약서 검토나 이제 현업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체크 리스트 만들어서 확인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현업 부서에

서 올라오는 계약서 검토 아니면 공문 발송할 거 검토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리고 경매나 보전 처분 이런 거 있으면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하고 소통하는 거. 소송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없으니까 권한이 없어서 변호사님들하고 소통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판례 찾는 거나 법리를 바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자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실제 업무에 중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게 의외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P16)

“저희는 이제 팀으로 봐서는 국내 중재팀이랑 건설 중재팀이 있고... 저는 국내 중재팀에서 있었는데 국내 중재팀은 건설 외에 모든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는 중재인을 보조해서 이제 판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검토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로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절차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법이나 이런 것도 보죠. 대부분. 상법, 민법은 당연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주로는 민사소송법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P18)

“(동료들) 일반 법학석사로 해서 하는데 로스쿨 출신 저 혼자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일반 법학석사들이시고 그래서 아마 면접 그때도 그렇고 기관에서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문석사 어쨌든 로스쿨 나왔고 그런 소송과 실무를 공부를 한 사람이 와서... 꼭 일반석사랑 전문석사를 막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P25)

(5) 직장 내에서의 전문성 인정 정도

현재의 직장에서 법학전문석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한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말은 안 하지만...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좀 뉘앙스로 그런 게 느껴지고요. 제가 똑같이 예를 들어 이런 답변을 써가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썼던 것보다 좀 더 꼼꼼하게 본다든지 조금 더 의심하면서 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P11)

“되게 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데...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은... 딱히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건 간에 이제 라이선스 홀더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P7)

“가장 문제는... 저는 전문적인 느낌이 없다. 변호사가 아니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차라리 상법 전공 박사가 차라리 낫지 진짜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진짜 애매한 일만 골라서 시키고 있고요.” (P11)

“현업 부서에서 변호사인 줄 알고 변호사님 이랬다가 변호사 아니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연락하는 분들도 좀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간 ‘변호사 아니라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 (P16)

“솔직히 일하면서 그건 있죠. 일하면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변호사가 아니라서.. 상담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난 변호사한테 상담받겠다’ 이러면 좀 속상하죠.” (P26)

“계약직 공무원 자리 중에 그런 자리가 드물게 하나씩 있거든요. 1년에 두 건씩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졸업장으로도 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들어와서 2년 정도 이 일을 했는데 느낀 게, 그게 이게 지자체든 정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그냥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지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변호사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변호사나 변호사 아니냐의 문제지 이게 내가 이게 졸업장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겠구나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아무리 오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걸로 무슨 뭘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P28)

반면, 기업 법무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직원들 교육하는 데에 그런 배경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빠르고. 또 저는 이제 로펌이나 세무법인이나 제가 직접 하이어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업무를 줄 때 이런 법 지식이 있고 이쪽 생태계를 아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P3)

“사실 사람들이 이제 법무실이나 컴플라이언스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정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P15)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법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전공은 영문학이지만 전공 자체가 이제 법학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점은 인정을 받고 있죠.” (P18)

(6) 응시제한 사실이 직무 과정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응시제한 사실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기회의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금액 제한이 좀 있으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액 사건이나 그런 거는 외부에 맡기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 내용증명 하나 쓸 게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하셨다면 내용증명 작성은 제가 하고 나가는 거는 법무법인 명의로 나가자... 이런 문제도 좀 가끔씩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 명함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좀 변호사 이름을 빌려야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니다.” (P10)

“제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냥 예전에 다 공무원들분이 하시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사건 이런 거 하고 싶어도 기회는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박사라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런 같은 일 하는 거가 최선인데... 최대한 데.. 그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P20)

또한 직장 내에서 응시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굳이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응시제한자라는 걸) 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누가 물어, 알고 물어보기 전에.. 하다못해 저희 공익 법무관들이 새로 바뀌잖아요. 새로 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더라고 저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경채가 되었는데에 대해서 근데 대놓고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저도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너무 자격지심이 들고 싫으니까요. 근데 사실 일반 행정직분들한테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어디 나왔대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다 알고 있더라고요.” (P11)

“모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상상도 못하니까 상상도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다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더 이상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제 만약에 알면은 좀 낙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P21)

“(응시제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다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알고 계세요. 또 막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어요.” (P26)

“로스쿨 나오는 거 모르십니다. 출신 대학만 적기 때문에. 별로 득 될 게 없어가지고.” (P28)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알고 있지만 직장 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얘기는 하는데 그냥 ‘로스쿨 나왔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그 이상 얘기하는 거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각자 자기 사는 게 바쁜데 뭐... 저희는 또 이제... 개인적인 할 일이 많거든요. 개인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어요.” (P17)

“(응시제한 사실을) 저희 팀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 보면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생했다’,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 말해 주시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P19)

“그냥 같이 일하는 동기들 중에 저랑 같은 처지인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의지가 되는 편이고요. 조직에서 저를 도와주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블라인드로 면접을 보고 (뽑았고) 또 다 로스쿨 출신만 뽑은 것도 아니고, 일부거든요.” (P20)

8

대안 경로 및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1) 경로 재선택 여부

응시제한자들은 만약 과거로 돌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나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먼저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합격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렇게 나쁜 기회도 아니고 일단 변호사 돼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안 가겠지만 뭐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않고서는 굉장히 괜찮은 기회죠.” (P18)

“당연히 진학합니다. 지금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 다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도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P11)

“사실 저는 그래도 석사 덕분에 취업을 한 거니까 대학원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P16)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보기에는 근데 이런 지금 다 알고는 당연히 안 돌아가죠. 제가 이쪽에 쓴 10년을 제가 투자자로 썼으면 저는 지금 제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최선의 선택 아니었나 이런거죠.” (P9)

“저는 다시 돌아가서 로스쿨가서 변호사 시험을 계속 공부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다 드는 생각은 아 이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저는 가서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니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겠다 생각은 들어요.” (P26)

“일단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더 잘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 사고가 없이 잘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런 일들은 솔직히 뉴스에서 간혹 한 명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막 몇 번씩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론으로 잘 해보고 싶습니다.” (P29)

다만 완전히 동일한 선택을 하겠다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휴학을 하고 학교 생활에 휴지기를 가지거나, 출산을 늦추는 등으로 약간의 변화된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일단 저는 로스쿨 4기로 입학을 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제가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꿀 텐데 로스쿨을 안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솔직히 있어요. 물론 이제 자조적으로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로스쿨 안 가고 그냥 난 취업하고 일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하고 싶었고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텐데 그럼 또 로스쿨 갔겠죠.” (P6)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로스쿨에 갔을 것 같습니다.” (P10)

“무조건 로스쿨은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휴학을 좀 할 것 같아요. 휴학해서 공부를 충분히 쌓고 그때 휴학해서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로스쿨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휴학을 하면은 안 이어질 것 같고 나이가 너무 들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19)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로스쿨을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휴학을 하고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돈 벌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졸업을 유예시켜놓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3년 동안 돈을 벌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한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나이도 완전히 들어버렸고 인적 네트워크가 다 사라진 상태로 다시 와서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합격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P28)

“근데 저는 법학을 좋아해가지고 공부도 되게 재미있게 했고 이렇게까지 말하긴 부끄럽지만 잘했어요. ○대에서도 1학년 때는 거의 뭐 과수석 가까이 점수도 나오고, 들어보신 로펌들... 다 인턴도 다니고. 제가 되게 법률가로서 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로스쿨 또 갈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다. 정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해서 출산도 좀 늦출 것 같고 어떻게든 빨리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딸 것 같지, 막 이 분야 자체에 대해서 막 환멸을 느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P20)

반대로 기존의 사회 경력이 있었던 경우 또는 로스쿨 진학을 망설였던 경우에는 가지 않는 것이 나왔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금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저뿐 아니라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탈자들은 절대 안 갈 겁니다. 지금 들어온 애들은 오탈자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졸업해서 설마 5년 안에 그거 못 될까 이래 하지만은 5년 잠시입니다.” (P1)

“(전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훨씬 나았죠. 안 가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 모든 면에서. 물론 법지식을 쌓은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면에서 안 갔던 게 낫습니다.” (P3)

“절대 안 해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절대 안 해요.” (P5)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깔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로스쿨에 절대 진학하지 않을 거 같고.” (P7)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했고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인 걸 알고 10년 지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쓰고 나이 먹고 몸 상하고 집안

도 어려워지고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스물 일곱(2010년 전후)에 취직했을 때 260만원 받았거든요. 270? 지금 230만원 받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빚이 얼마인데 지금 매달 적자예요. 이거 돈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지금 나이 드니까 더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환경도 제가 책임져야 할 지는 것도 많고 불행한 부분도 나중에 많아지고 근데 내가 왜 왔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P17)

“아니요.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갔을 것 같아요.” (P24)

“저는 일단 로스쿨 진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법원 공무원 준비하고 싶었어요. 전공은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뭐 특별히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생각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법조인 선배분들도 오시지만 법원 공무원 선배들도 오시는데 괜찮아 보였고 그쪽이 원래는 관심이 있었어요.” (P27)

(2) 시험 추가 응시 여부

응답자 중에서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변호사시험에 계속 응시하였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보죠. 할 일도 없는데. 무슨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거?... 물론 개인에 따라 그건 다르겠죠. 이거 다. 근데 응시제한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 취업하는 거는 또 다르죠. 오탁제도에서 부득이하게 취업하는 거 하고는.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미련이 없어가지고 아예 나간 거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오탁제가 있는 상태로 강제로 이렇게 퇴출된 사람들은 평생 한이 남는 거니까요.” (P1)

“응시제한이 없었으면은 로스쿨도 이게 자격시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P4)

“저는 되는 한은 계속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때도 계속 점수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제가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지만 저는 한 몇 년 지나면 제 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붙었을 것 같아요 저는.” (P24)

“네.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급반등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성적이 그냥 완만하게 계속 올라간 상태였고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합격점을 못 넘어서. 두 세 번 더 봤으면, 두 번 정도 더 봤으면 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P28)

한편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계속 응시를 하기보다는 여건을 갖추어 두고 준비를 한 후에 응시하였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과 병행하였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다.

“제가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일을 좀 하면서 약간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응시를 했을 것도 같고. 그렇게 막 내몰리듯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을 하면서 병행을 했겠죠.” (P6)

“본인이 선택해서 그만둔 것과 선택하지 않고 강제로 그만두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저도 제가 시험은 선택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횟수 제한이랑 기간 제한이 같이 있기 때문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봤어요... 무조건 하나라도 더 봐서 경험이라도 쌓자라는 느낌으로 마구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기간만이라도 없어진다면... 기초를 1년 동안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 이런 식으로 안배를 적절하게 저한테 맞게 했을 것 같습니다.” (P11)

“일단 회사 다니면서 응시를 계속 도전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하고 또 실제로 저희 회사에 그렇게 계속 안 되다가 마지막 시험인가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응시를 해봤을 것 같고. 아니면은 휴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바로 휴직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휴직을 해서라도 뭔가 좀 시험을 그래도 보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P15)

“저는 일하면서 돈 벌고 응시하고 35살 전까지는 계속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P16)

“네.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시험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휴가를 써서라도.. 다섯 번 보다 더 많이 봤겠죠 당연히.” (P18)

“계속 도전한다는 게 무슨 10번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서 좀 준비가 되면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노무사나 법무사도 50대 합격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합격할 수 있는 제가 꿈이 변호사여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아요.” (P19)

“계속 도전했을 것 같아요... 계속 연달아 응시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아서 한다든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서 정리하고서 그때 응시를 하겠죠.” (P26)

“(응시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기회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제가 아마 병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이라든지 일반 구직이라든지 이걸 병행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5년은 그냥 변호사 시험만 보고 이제 달라졌다면은 만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은 플랜B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P30)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준비를 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말씀드렸다시피 쉬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안정이 되거나 내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요.” (P20)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집중할 수 있을 때, 시험 공부, 저는 이제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하고 기회가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해볼 수 있었으면 할 텐데 그러니까 좀 애들을 좀 키우고 그 3년 제가 말한 것처럼 3년 정도는 지나고 이제는 시험 공부를 아예 그냥 그때는 애들을 좀 맡기고 그냥 아예 풀로 이제 하고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졸업하자마자 꼭 그때 보지 않고 공부를 해서. 저희 학교에도 아줌마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이제 기숙사에 그냥 있고, 아예 신림동에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되시킨 하셨거든요.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P21)

“일단 저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들이 이제 다 많이 컸잖아요. 지금은 사실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변호사로. 왜냐하면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일했을 것 같아요.” (P24)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해소가 된 상태라면은 아마 준비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P27)

반면 5회 미만으로 응시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다. 또한 적절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아니요. 재시까지 보고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지, 오히려 시험 안 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내일의 나도 모르는데 5시 때의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없으면은 더 시험을 많이 안 보죠.” (P5)

“로스쿨 졸업하고 한 번 더 쳐보고 안 됐으면 취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5번 내에 무조건 빨리 붙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취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P19)

“응시 제한 제도가 없었더라도...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됐다고 하면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막... 응시 기회 제한이 있어야만 관둘 정도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P29)

(3)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달라졌을 것으로 상상하는 삶의 모습

응답자들은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모두 지금과 다른 인생 경로를 걸으면서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우선 취업, 육아 등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거는 정말 가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굳이 지금 그러니까 지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워 보자면 지금 일을 좀 더 빨리 시작했고 이제 정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다시 변호사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현재 직업은 만족을 하지만 변호사 자격은 정말 좋은 도구라기 때문에...” (P9)

“없었다면은 오히려 시험 보기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해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만약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봤을 것같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 7년 정도면 만약에 사실 응시 제한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2회까지 시험을 봤을 거고 3회, 4회, 5회를 안 봤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한 7년 정도까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고,.. 일단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취업을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직장엔 취업을 해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거고 제 연차도 조금 더 높았을 것 같고요.” (P10)

“응시 제한이 없었으면 몸도 더 좋았을 것이고 일도 제대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편안하게 좀 생계를 마련해서 1년 정도 변시에 올인했을 것 같아요.” (P12)

“일단 그 5년 안에 그렇게 다섯 번을 다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뭐 졸업하고 한 두 번 보다가... 육아도 다 하고 엄마 병간호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쯤이면 취업을 했으니까 제가 안정돼서 지금쯤이면 다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P20)

“그냥 계속 변호사시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돈 모으면서 변호사시험 보고... 어릴 때는 나이 먹어서 변호사 돼서 뭐 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해 보니까 나이 먹어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좋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P26)

“일단 그렇게 뭔가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고 사실 그 기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알아보거나 어떤 거를 도전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좌절하면서 시간을 많이 또 보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P27)

“그러니까 변호사시험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 전문 기자 생활 좀 하다가 개업도 하고, 공익 부문에서 일도 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P28)

“적어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 같아요.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 거고, 심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P29)

(4) 미래에 대한 기대

응답자들의 3-5년 정도의 가까운 미래에 기대하는 삶의 모습과 경력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응답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 직업적 발전가능성,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계획, 법학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된 법무사 시험과 노무사 시험 응시 등은 많이 고려되는 대안으로 꼽혔다.

“회사를 키우고, 다주택자가 되고, 부모와 형제들과 주변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회사 매출 10억 원. 예 그 정도 지금 한 몇 천 그냥 조그마한 회사인데, ‘매출을 한 10억까지 끌어올려보고 싶다’ 그런 소박한 목표가 있습니다.” (P5)

“파이낸스 박사를 따가지고 강사가 돼보는 게... 박사과정에 진학할 거고요. 금융 투자 관련한 자격증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땀어요... 그래서 더 딸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CFA라고 그거를 좀 따고 싶고요.” (P9)

“저희 서기관님이 맨날 권하시긴 하시거든요... ‘니가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박사를 해라.’ 그건데, 사실 저는 실무를 하고 싶지 학자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특히 법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해 주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변호사 좀 보고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딸 생각은 없어요. 왜냐 하면 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대학을 가고 싶고...” (P11)

“올 여름부터 그런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요... 솔직히 지금 내가 막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모습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해야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P13)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회사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법무실에서 일을 해보고 일을 하면서 더 재미있어지고 또 공부를 하면서 그 뒤로 더 이 분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일단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금 박사과정도 하는 상태고요... 이제 논문 고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거 하고 있고 미국 변호사시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임신 출산으로 지금 잠깐 멈췄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저는 어쨌든 계속 기회를 찾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이제 국외 로펌에 보내주는 파견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P15)

“저는 기업 법무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고. 딱 오탈 되자마자 꿈이 박사를 가야겠다. 이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학부 때 교수님 찾아뵈서 이렇게 답안지 얘기를 하다가 너는 학자로서 답안지 쓰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보다 학자가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전공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먹고 살려고 기업 법무를 택했는데 제 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의 박사를 가서 비교 연구, 다른 나라 법이랑 비교 연구하고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로스쿨에서 이미 석사에서 한 번 꺾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꺾였던 사람은 대학원을 적어도 좀 더 높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지방에서 근무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데서 한 3년 경력 쌓고 이직을 하게 되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박사를 같이 하려고 하던 중이에요.” (P16)

“뭔가 이직을 위한 공부도 하고 있고 그 노무사 공부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살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좀 뭔가 인간관계도 무척 중요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어쨌든 저도 로스쿨을 간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P19)

“여기서 근무를 계속하면서 이제 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나 아니면 이제 뭐 법무행정 쪽으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P20)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으로는 경력직을 뽑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런 계약직을 좀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뭐를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박사 과정을 좀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신분이 안정된 곳으로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P21)

“미국 변호사님한테 상담하니까...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는 24학점에 4학점만 더 들으면 LLM 학위가 나오는데 LLM 학위 있으면 메릴랜드는 횡수 제한도 없더라, 가서 합격해라 바로 끝까지 보지 말고... 그래서 그거 따서 지금 로스쿨 동기 중에 한국 변호사 있는 친구가 베트남에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컨설팅 사무실을 하는데 그 업무 지금 배우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나이 드시기 전에 저는 부모님 손에 그 정도 자격증은 가져다 드려야 된다고 봐요.” (P23)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분쟁 조정원 거기에 보면 변호사 직종도 있고 간호사 직종도 있어요. 간호사 직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풀 타임이라서, 풀타임은 제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원은 못했는데 내년에 이제 막내가 중학교를 가면, 그때 한번 해볼까 해요.” (P24)

“일단 박사 과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입사하자마자 저희 과장님이 면담처럼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박사를 더 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의아했는데 공직계에서 어쨌든 다른 전문 경력관이나 아니면 뭐 경력직 공무원 자리를 뺏을 때 박사 학위를 꽤 많이 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 또는 학위인데 그건 뭐 이제 들어가시는 뭐 풀이나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학위를 조금 더 쳐주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변호사가 돼서 살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재정립하는 시기가 좀 필요했어요.” (P25)

“계속 법무사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시험 공부했으니까 변호사 시험도 과목이랑 그런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법무사 자격 시험 합격해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게 등기랑 집행은 안 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법무사 자격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일하고 싶긴 해요.” (P26)

“지금은 특별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빚을 다 갚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28)

9

응시제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1) 응시제한자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우선 응시제한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미 변호사가 돼서 기득권이 됐고, 본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수험생들은 사실 로스쿨생은 뭔가 어떤 힘도 없고 계속 3년 동안은 시험이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폭력을 가해도 되는지 좀 이게 맞나 고민이 되고요. 적어도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가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베이비 바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 정도? 로스쿨 안 나와도 2년 정도 법인에서 이렇게 실무를 쌓은 사람은 따로 또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시험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응시가 제한이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본다거나 아니면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서 기회를 얻는다거나 이런 뭔가 이렇게 우회로가 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평생 응시 제한으로 막아 가지고 로스쿨을 간 것 자체를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인생에 낙오자가 된 계기처럼 여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P6)

“변호사시험법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도 범죄자도 하다못해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범죄자 취급,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응시제한 후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 하에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안을 마련해 줘야되는거 아닌가... 평생 응시 금지라는 게 정말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시험만 볼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너무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P11)

“응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도 사실 일단 졸업 시험 통과할 정도면 시장에서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꼭 송무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저희 회사처럼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한데 인원이 소화가 안 돼서 법조 시장이 망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P18)

“지금은 아마 이제 초반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게 돼가지고... 법무부에서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합격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라리 의사나 약사처럼 자격시험화... 했으면은 그 취지가 충분히 방안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사법시험 같은 그런 경쟁의 시험으로 이제 돼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매듭을 잘 짓지 못한 게 점점 더 약간 좀 더 꼬여버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사법시험 폐지를 하면서 이제 합격을 결정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다는 거... 정확하게 초반에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P30)

또한 공통적으로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과도하게 낮아서 응시제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비교하여 자격시험 본연의 기능과 합격률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응답이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변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변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화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걸 놔놓고 그걸 오탈제로 변시낭인 방지한다고... 의대처럼 해야 됩니다. 의대처럼 95% 안팎으로 돼야 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변호사 자격을 줘야 돼요... 자격시험화가 최우선입니다... 오탈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을 해야 됩니다. 원래 취지대로.” (P1)

“일단은 합격률을 높여주셔야 되고. 이제 더 (응시제한자)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합격률이 근데 지금 계속 그 정도더라고요...” (P24)

응시제한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인 응시제한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러한 지원방안이 응시제한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응시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응시제한자들의 취업 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먼저 지원 방안의 실행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았다.

“그 애들이 이제 오탈 돼가지고 취업 지원을 해준다, 어디 취업을 다닌다 해도 평생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낙으로, 다른 동료들 무슨 변호사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오탈자 낙인 이마에 찍혀가지고. 그게 뭐니까 그게? 그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그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자격시험이 최우선입니다...” (P1)

“일단 로스쿨에서 응시제한자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탈제 폐지를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탈제가 존재하는 한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스쿨에서 뭔가 도와주시려는 이렇게 선의는 당연히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가 그냥 굳어지는 효과만 있을 것 같습니다.” (P11)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의 응시제한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제도를 제한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단 응시제한자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좀 많고 그분들이 그러면은 사실 로스쿨에 나오면 빛이 진 상태로 나오게 사회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뭔가 일

단 그런 빛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스쿨 마통 같은 경우는 이제 n시가 되면서 계속 갇으라고 이런 게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정부 차원에서 유예 제도를 둔다거나 이런 게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법조계에 계속 뜻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우회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해가지고 7조를 아예 없애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막 제정 과정에서 소급되지 않는 식으로 또 되면은 기존 응시제한자들은 또 제외되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응시제한자들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 석사 경력을 좀 사회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채용 형태나 직업군이 마련이 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이런 거 생기는데 수사관이나 이런 거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비법률가들도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학석사 경력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좀 유인을 한다든지 해서 좀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P6)

“응시제한을 푸는 게 원론적으로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로스쿨 졸업했는데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꼭 낭인이나 탈락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가 좀 합의를 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지가 좀 사회적으로 공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P8)

“이 분들을 다 패배자 웃음거리로 몰아가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쟁이다 보니까 낙오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다 같이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등수가 갈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분위기를 좀 없앨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P24)

(2)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의견

응시제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다만 응시제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취업 기회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다. 블라인드 채용 등 보편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 대한 특별로 보여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법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법학 석사의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다른 공공기관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당연히 형평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분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P4)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채용 지원을 받는다면 솔직히 응시제한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다른 채용 절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되면은 또 서로 평등권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드네요... 경감 특채 같은 거에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좀 뭔가 이렇게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채용 절차나 형식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미 지금 경감 특채에서 사회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못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될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P6)

“(법무부의 경력채용은) 법무부가 면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으로 들어갔으면 뭐 이 경력을 아예 없애고 살았겠죠. 제가 굳이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나 어떤 공공에서 오탁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오탁이 존재한다는 전체하에 뭔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도 그거는 좀 약간 싫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탁제를 공고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아예 모른 척해주시고 차라리 오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11)

“그것도 오히려 낙인인 것 같아요. 애는 오탁자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하게 해줄게 막 이런 것... 시험은 떨어졌으니까 구제해줄게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입니다.” (P20)

“그때 한창 변호사 안 된 사람들한테 경찰 특채인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욕을 먹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변호사 안 된 사람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경찰 조직한테도 상처가 되고 수험생들한테도 상처가 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입장이 다 다른데... 경찰 수험생들한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시험도 안 되는데 왜 나는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뭐야 이렇게 하고...” (P26)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역의 경우에는 법학전문석사가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한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사무장 같은 중간 포지션을 없애겠다고 만든 건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제도적으로는 모순이죠... 그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다른 직군을 모욕하면서 이 제도 합격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그게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합격률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같이 이제 응시금지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욕만 먹으니까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오답입니다. 아예 오답이고, 이 제도 전체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 접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P5)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오퍼는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사무원 이 정도인데 과연 법학 석사들이, 법학 전문 석사들이 그 자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로스쿨에서 오탁자를 경사로 채용하겠다는 글 나왔을 때 반응이 한편에서는 아니 왜 오탁한 게 자랑이라고 경사 자리를 주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도 있었던 반면에, 반면에 오탁하신 분들 자체는 경사나 하고 살란 말이나 이런 반응이 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너의 한계는 그거다, 그거나 하고 살아라 이런 거,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P7)

“사실 저도 생각은 해봤거든요. 오타자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냥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변호사 안 됐으니 로펌 가서 서면 쓰는 실장이나 해라 약간 이렇게 취급하는 분위기라 잘 모르겠어요.” (P16)

경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턴 제도나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 제도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이가... 로스쿨 3년 군대 2년 학부 4년 응시제한 4년 하면은 적어도 35살은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매력적인 경력이 있는 구직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매력적인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조... 지금 생각나는 건데... 인턴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P9)

“그러니까 취업 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변호사가 안 됐지만 취업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던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이트가 사이트에 예를 들자면 법전협 사이트에 그런 섹션이 하나 생긴다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고 조금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P15)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력 공백 기간이 너무 길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되게 기피하는 구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기업에 연결을 시켜주는 알선이라거나 아니면은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소기업 법무팀이나 이런 데 이제 알선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P19)

“저는 그런 게 되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은 부산대 출신들 중에도 한 번 부산대 출신만 모인 건 아니고 한 번 그냥 다 몇 명에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오타이 돼서 다른 중소기업 이런 데 취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오타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공기업이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찾아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P24)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구직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제도가 좀 갖춰져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P27)

“일반적으로 취업 지원자들에게 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취업 지원금을 줘요.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P19)

(3)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

응시제한자는 변호사자격은 없지만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위를 기반으로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응시제한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응답이 있었고, 응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건 접근 방식이 잘못됐네요...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률 문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는 대전제하에 그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P5)

“그 사람들에게 시험 기회를 다시 돌려주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솔직히 한 명의 변호사라도 더 많이 배출이 돼야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로스쿨 처음에 입학할 때도 그런 쪽으로는 저는 되게 동감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러라고 생긴 제도와 그래갖고 저는 입장에서 처음 입학했을 때 적어도 막 돈 없어서 억울한 일 겪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학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오탈자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저는 그들에게 다시 시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 한 명의 변호사라도 늘리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29)

다른 한편 응시제한 제도가 있는 한 법학전문석사가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회적 낙인 효과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답변이다.

“석사는 낙인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기회를 허비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채용해서 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낙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착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응시제한을 폐지한다거나 그래서 라이선스 없는 법학전문석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한은 이제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없을 것 같고. 그 때문에 딱히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딱 기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P7)

“일단 법학전문석사를 반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느니만 못한 석사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취급도 그렇고요.” (P11)

“(사회적 낙인) 이게 없으면은 충분히 졸업생도 우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방 차라리 그냥 취업을 해버리고 오히려 번시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응시를 못하니까 취업의 길로밖에 못 온 사람이 되니까.” (P21)

“글쎄요. 저는 시험을 못 붙은 전문석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낙인이자 이게 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전문석사 뽑을 거면 요즘 변호사들 많다는데 변호사 뽑으면 변호

사를 뽑으면 되지... 전문 석사를 뽑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굳이 전문석사가 없더라도 공기업 가고 이러신 분들 보면 굳이 전문석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게 만약에 두세 번 더 보고 안 됐으면 석사급 이걸로 그냥 취업이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외부에서도 이 친구는 그냥 변호사가 이 뜻이 없어가지고 각 지옥으로 돌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5년을 붙잡아놓고 나중에 나이는 나이대로 먹게 하고..." (P30)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과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방안은 법학전문석사학위를 활용하는 가능한 경로지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저는 당장 제 경우를 대입해서 보자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해외 로스쿨 노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변호사시험을 봐서 해외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다시 역수입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넓혀 놓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 안은 그렇습니다.” (P12)

“박사학위도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가요. 한 4~5년 동안 밟으면. 그래서 좀 학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인생을 조금 사는 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석사까지 밟은 전공을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제가 동기들 전공 경력을 살리는 사람들 보니까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 변호사랑 박사학위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 컴퓨터 공대 박사학위도 아니고 문과 쪽 박사학위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TO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길은 딱 하나예요. 미국 변호사 시험밖에 없어요.” (P23)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대학원의 연구 인력이 이렇게 모자르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회에서는 자격증의 유무로 판단을 하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28)

10

소결

(1) 연구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반대 논의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어져왔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이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면, 시험 준비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생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낭인’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응시제한 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응시제한자 3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원론적인 찬반 양론을 넘어서서 응시제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응시제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는 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와 배경, ②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경험, ③ 변호사시험 준비 및 응시의 경험, ④ 변호사시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의 심리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 ⑥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경험, ⑦ 직장 생활 경험, ⑧ 대안 경로 및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⑨ 응시제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이 부분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다음과 같다.

1)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동기와 배경

응시제한자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전 경로는 사법시험·행정고시·언론고시 등 타 시험 준비, 직장생활, 취업 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은 각자의 이전 경력과 진로 전망 속에서 선택되었다.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법학을 전공한 응답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인 선발제도 변화 속에서 기존 법조 진로를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 경로로 인식되었고, 직장생활이나 사회경험을 거친 응답자들에게는 기존 업무 경험에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통해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학 동기로는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 공익적 활동 가능성, 가족과 주변의 권유, 개인적 사건이나 특정 법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진학 당시 희망 진로는 대체로 변호사 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기업 법무팀·로펌 등 민간 영역, 개업, 공익 변호사, 공공기관·행정부 진출, 검사·군법무관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한편 진학 당시 경제적 조건은 가족 지원, 학자금 대출, 장학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경제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등 여러 자원이 결합된 형태였으며, 가족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채무 부담, 가족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진 응답자들에게는 장학금과 특별전형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경험

응시제한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본래 표방한 사례·토론 중심의 전문직 양성 모델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시험 대비에 종속되어 운영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강의 중에는 법리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평가는 판례 암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평가 방식 간 괴리를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 출신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 경험자와 곧바로 상대평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유급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학비·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적지 않은 부채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적 중심의 경쟁 구조가 동료 관계의 긴장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학교의 진로지도와 상담 지원은 합격률 제고에 편중되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다만 실무 과목과 법학 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3) 변호사시험 준비 및 응시의 경험

응시제한자들은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후로 응시제한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초기 기수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대부분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재학 당시에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강·학원 강의 등 사교육 자원을 병행하였고, 일부는 스터디보다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이후 정보 부족이나 연습 부족, 시간 배분 실패, 사법시험식 공부 방법의 고착 등을 초시 불합격의 원인으로 회고하였다. 졸업 이후 학교의 열람실·모의고사·특강 등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원은 학교별로 불균등했고, 불합격 이후 학교에 다시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교육 비용, 공부 장소의 이동, n수생의 고립과 피드백 부족이 수험 지속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수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근로가 늘어나 공부 시간과 학습의 연속성이 훼손되었고, 출산·

육아, 자녀와 부모의 돌봄, 질병과 사고, 심리적 압박 등으로 특정 회차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5일 간 장시간 진행되는 시험 일정, 시험장 배정과 숙박·식사 문제, 수면과 체력 관리의 어려움도 주요한 부담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변호사시험 응시가 응시자의 학습능력 만이 아니라 경제적·제도적·신체적·정서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4) 변호사시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5일에 걸친 시험 일정과 과도한 답안 분량, 채점 기준의 비공개와 합격자 발표의 지연 등을 비합리적 요소로 지적하였다. 상대평가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탈락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탈락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자격시험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나 합격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기능이 변호사 수의 통제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응시 횟수와 기간을 결합한 방식이 질병·임신·출산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지닌다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개선 방향으로서는 응시기간의 우선적 폐지, 질병·임신·출산 등 예외사유의 확대, 일정한 실무 경력이나 추가 교육을 거친 후의 재응시 허용 등이 제시되었으나, 예외사유 확대의 형평성과 실효성, 폐지 시의 소급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5)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후의 심리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단순한 시험 실패를 넘어 정체성과 미래 계획이 흔들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합격한 로스쿨 동료들과의 비교, 가족의 실망, 경제적 어려움의 누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자존감을 잃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기 쉽다. 응답자들은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우울감, 불안 등을 경험했으며, 심각한 경우 정신과 치료의 경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 직후 좌절감에 빠져있기보다는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도 나타난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볼 때 시험 불합격이 반복될수록 로스쿨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격한 동기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반면, 불합격자는 이들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연락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응시제한자들은 대학교 동문이나 로스쿨 동문 모임과 같이 공식적이고 규모가 큰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소수의 친구들과 약한 연결 수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합격자들의 소통공간(온라인 커뮤니티)이 존재하지만 정보교환이나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6) 응시제한 이후의 구직 경험

응답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최소 3~4년의 로스쿨 과정과 약 5년에 가까운 수험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나이가 최소한 3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채용 시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이 취업을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법학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무에 지원하기, 둘째, 학부 때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로스쿨 입학 전부터 종사했던 분야의 일자리로 복귀하기, 셋째, 분야·직무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채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며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유사한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스터디·학회를 운영하거나, 인턴십을 경험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응답자들은 철저히 혼자 알아보고 지원을 하는데, 이는 정보추구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지금까지 개별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진로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이슈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향후 법률직무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생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7) 직장 생활 경험

직장이 있는 응시제한자들은 사기업의 법무팀 직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 직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으로 직업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직업적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이 많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학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경력의 불안정성과 승진 및 소득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8) 대안 경로 및 장래 진로에 대한 인식

응답자 중 상당수는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응시제한으로 인한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발전적인 장래의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9) 응시제한자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과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매년 일정 수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응시제한 제도가 5년의 응시기간 동안 오로지 수험생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다른 경로 탐색의 기회를 차단하는 봉쇄효과를 가진다는 점, 응시제한자에 대해 가해지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비법률이 법학전문석사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2)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과 개선 방안 논의의 필요성

1)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

변호사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자격시험으로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응시자 대비 50%를 겨우 넘기는 합격률의 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극심한 경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응시자들의 절대적인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200여명의 응시제한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고,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유일한 목표로 두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자들은 5년의 응시기간 동안 수험생으로 살면서 일종의 유예된 삶을 살게 되고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거나 계속 수험생으로 사는 기간을 갖게 된다. 아울러 또한 '5년 내 5회'라는 경직된 제한 규정은 경제적 취약성, 갑작스러운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은 합격이라는 성공과 응시제한이라는 실패,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응시제한자들은 응시기간이 그대로 경력의 공백으로 남겨져 새로운 진로의 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변호사시험 탈락과 응시제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심리적 고통 역시 개인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응시제한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심리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응시제한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부여하고 다양한 경로의 사회진출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라는 부정적 인식은 단순한 수험 실패 혹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응시 중단과 달리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되어 구직 현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2) 개선 방안의 모색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제도와 응시제한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학생들의 진로, 변호사시험 탈락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이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응시제한 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일부 응답자들은 우선적이고 과도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예외사유의 확장, 응시기간의 우선적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응시제한 제도 전면 폐지

② 응시기간 제한의 폐지

(예시) 응시 횟수 제한은 남기되 5년 기간 제한을 폐지

③ 응시제한자 재교육 후 응시기회 부여

(예시) 응시제한이 된 경우, 1년 재교육 후 다시 2회 응시기회 부여

④ 임신·출산 등 예외 사유의 확대

(예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추가

다만 예외사유에 임신·출산, 중대 질환 등 일정한 경우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입법기술적으로 모든 예외적 상황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어떤 사유를 추가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형평성 있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해당 예외 조항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응시기간 폐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집중 육아 기간이 지난 후, 또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고, 응시횟수를 남기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응시를 중단한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는 여러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응시제한이라는 굴레 속에

서 비법률가 법학전문석사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열린 시각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아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과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첨부 ■ 응시제한자 면접 대상자 기본정보 (30명)

코딩	성별	입학	직장 및 직업
P1	남	4기	무직
P2	남	6기	무직
P3	남	7기	외국계 기업
P4	남	4기	무직
P5	남	7기	개인사업자
P6	여	9기	변호사사무소
P7	남	6기	공무원
P8	여	3기	프리랜서
P9	남	6기	프리랜서
P10	남	7기	사기업 법무팀
P11	여	6기	공무원
P12	남	4기	민간협회
P13	남	7기	무직
P14	남	7기	공무원
P15	여	4기	금융기관
P16	여	9기	사기업 법무팀
P17	남	4기	공무원
P18	남	3기	공공기관
P19	남	9기	공기업
P20	여	5기	공무원
P21	여	1기	공공기관
P22	여	2기	교사
P23	남	3기	개인사업자
P24	여	2기	무직
P25	여	8기	공무원
P26	남	7기	변호사사무소
P27	여	4기	시민단체
P28	남	6기	학원강사
P29	남	6기	무직
P30	남	2기	공공기관

제5장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

1 서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력, 특히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응시제한자에 대한 설문과 면접을 넘어서서 실제 인력 수요자의 관점에서 비법률가 JD 인력에 대한 평가와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기관, 로펌 및 IT·벤처기업 등 법률수요자 1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응시제한자 채용 경험과 평가는 어떠하며, 비법률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포괄적 법률수요는 존재하는가?

둘째,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응시제한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 경로는 어떠하며, 법전문 교육에서의 재정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은 무엇인가?

2 응시제한자 채용 경험 및 평가

(1) 제한적인 채용 경험

면접 결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특히 응시제한자를 실제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은 응시제한자를 별도의 인력 범주로 인식하거나 채용 대상으로 검토한 경험이 없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응시제한자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이 사실상 변호사 자격과 강하게 결합되어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자체에서 획득한 지식과 역량보다는 변호사 자격의 취득 여부가 노동시장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독립적인 전문인력 범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자들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와 역량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채용 경험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채용 경험이 없는 이유

면접을 통해 확인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중심의 직무구조

법률수요자 면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현재 응시제한자들이 경험하는 취업의 어려움이 단순히 변호사시험 불합격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비법률가 법률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존의 경력 경로가 상당 부분 소멸하였다는 점이었다.

과거 학부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 법무,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로펌의 비법률가 연구직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였다. 당시 법대 졸업생들은 반드시 사법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법학 교육 자체가 다양한 직업 경로로 연결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정착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사실상 “예비 변호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경력 형성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경력 탐색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압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로 하여금 다른 경력 경로를 조기에 탐색하기보다 장기간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응시제한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법대 나온다고 반드시 고시를 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시를 봐야 되는 프레스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전원 나오면 무조건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된다는 프레스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커리어 패스를 좁히고 결과적으로 이탈자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두 번 시험 보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끝까지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대형로펌 변호사, #2)

또한 과거에는 로펌이나 기업 법무 부서에서 비법률가 연구원, 패러리걸, 법률조사 담당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법률가 법률인력 수요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직무들이 점차 변호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와 리걸테크의 발전은 반복적 법률조사나 문서 검토 업무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어, 전통적인 비법률가 법률보조직의 축소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에는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리걸 AI 및 법률기술 관리 인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일부 기업에는 아직도 사법시험 보지 않은 법대출신들이 남아있는 곳이 남아 있고, 그런 자리가 빌 때는 외부에서 충원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밑에서 승진한 케이스도 아직은 좀 작지만 있긴 있고 뭐 그게 과도기 같아요.

삼성은 애초에 2천년대 중반에 다 변호사 중심으로 되어버렸어요. 삼성전자 그룹의 법무 사장이 위에서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식으로 했었죠.

워낙에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법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하는 영역이 지금은 로스쿨 졸업생으로 차버렸다는 거죠.

그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대우 조건이라든지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변시 합격 못하고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영역이 대기업 사내 법무실에는 이제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형로펌 변호사, #8)

한편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구조는 대부분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변호사 트랙”과 일반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일반직 트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독립적인 인력 범주로 인정하는 별도의 채용 경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변호사 트랙에도 진입할 수 없고, 일반직 채용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부족한 직무경험으로 인해 구조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서 어느 범주에도 명확히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인력(marginalized professional)”으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 학부 법과대학 졸업생들보다 취업 경로가 좁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교육의 질과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현저히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진로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 원인으로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소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확대 여부와는 별개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경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과거 학부 법대보다 학생들이 3년을 더 공부하고, 교육과정도 더 나아졌고, 실무가들도 많이 투입되었고, 시스템도 10년, 20년 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웃풋에 있어서는 더 결과가 나쁘게 나와요.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 파이프라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류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그냥 변호사 수 증원을 통해 넓히는 것은 좀 어렵지요. 다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형로펌 변호사, #2)

면접 결과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요인은 현재 법무 관련 직무가 사실상 변호사 자격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법무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계약 검토, 소송 대응,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이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었다. 그 결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직무 영역이 제도적으로나 조직문화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력 경로 자체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경우 JD Advantage 직군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으며, 학생과 고용주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 경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제외한 경력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스스로도 비법률가 경력 경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이나 경험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원자의 역량은 학력, 자격증, 경력,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성의 경우, 비법조인 채용 담당자나 현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는 개발자나 마케터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나 성과 지표를 통해 역량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법무 역량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거나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지적하였다.

“개발자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다, 마케터면 어떤 서비스를 홍보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봤다 하는 것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든 이력서든 입증할 자료가 되는데, 법무를 잘한다는 것은, 특히나 비법조인 입장에서는 법무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나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1)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증명을 넘어, 다양한 역량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고 있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변호사 자격이 존재할 경우 지원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법조계 내부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까지도 함께 추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변호사 자격은 개별 역량을 하나하나 검증하지 않더라도 지원자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신뢰의 표지(trust marker)”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호효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지원자는 자신이 보유한 법적 사고력, 분석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규제 이해 능력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실제 역량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과 평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스킬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법조계 내에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트워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건 편하지요.”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1)

2) JD 학위의 낮은 신호효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채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시장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 자체가 독립적인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면접 결과는 법학전문석사 학위(JD)가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독립적인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전문성을 증명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신호로 기능하는 반면, 법학전문석사 학위 자체는 어떠한 역량과 전문성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실제로 보유한 역량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는 현재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학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떠한 전이가능한 역량(transferable skills)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회가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단순히 특정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규범적 판단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학교육은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법학교육이 생산하는 다양한 역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원 졸업생들은 변호사 자격을 따는 거 외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법전원 교육이 일반 기업이나 정부 혹은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민형사법을 이해하는 게 어떤 트랜스퍼러블한 스킬을 주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거나 혹은 사회에 홍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1)

한 면접 참여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들의 교육 목표를 “변호사 자격자의 양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유한 전문역량의 형성”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

다. 그는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습득 가능한 전문적 역량과 그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역량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낙인과 평판 리스크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로스쿨에서도 우리는 변호사 자격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로스쿨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트랜스퍼러블한 로스쿨만의 고유의 스킬을 생산하는 거라고 하면, 응시제한자들도 ‘내가 변호사 자격은 못 땔지만 이거는 얻었다’는 데에서 프라이드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게 홍보만 잘 되면은 평판 리스크도 줄어든 거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쌓이면 사실 이 스킬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진로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간의 매몰 비용에 대한 것도 로스쿨에서 자격증이 아니라 스킬을 구매하는 거라고 조금 관점을 전환하면 매몰 비용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1)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MBA 교육을 비교하면서, 두 교육과정의 사회적 브랜딩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MBA 과정은 특정한 국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 리더십, 의사결정,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회적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제로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변호사 양성기관’이라는 협소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MBA야말로 브랜딩의 파워의 산실이 아닌가 해요. 졸업할 때 자격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직은 알아서 하는 거고, 네트워킹도 스스로 쌓아야 하고 학비는 엄청 비싸지만 그래도 브랜드 파워는 인정되잖아요. 제가 다녔던 경영대학원의 MBA 과목 중에도 변호사들이 배우는 게 나올 것 같은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 관리라든가 리더십 훈련 같은 것은 변호사들한테도 유용한 스킬이지요. MBA에서 법학을 배우기도 했던 것처럼 역으로 법대에서도 수요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같이 가르쳐 주셨더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사내변호사, #1)

즉,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학전문석사 학위 자체는 충분한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변호사 자격의 부재는 오히려 부정적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법학교육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의 문제를 단순히 특정 시험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성과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만으로 평가해 온 한국 법학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응시제한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학교육이 생산하는 전문성과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경력 공백과 조직 적응 문제

면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제한자가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구조적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장애는 법률적 전문성의 부족보다는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공백과 연령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금융기관 법무팀장은 과거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조직 내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사고력과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학위 취득 과정 역시 일정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기업에서 전에 법전원 출신을 별도로 공고하여 채용해 보자고 인사부랑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도 법무실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일반직원이기 때문에 공채의 틀에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법전원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금융기관 법무팀장, #7)

그러나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일반 공개채용 시장에서 대학 졸업 직후부터 취업 준비를 해온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 경험과 조직 적응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응시제한자들의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로 인해 수년간의 추가적인 경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불이익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채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취업 준비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면접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 법무실장, #6)

위 면접 참여자는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직후 곧바로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급으로 입사하는 동기들과의 연령 격차가 커지고 조직 내 사회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법전원 졸업해서 바로 취업한다면 이분들 나름 괜찮아요. 어차피 호봉도 다 인정받고 하니까 급여에서 사실 뭐 그렇게 차이 날 것도 없고, 오히려 법전원 출신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인맥들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3년이든 5년이든 중간에 공백이 확 생겨버린다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공채를 하는 조직에서는 동기들과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버려요. 그러면 조직 생활에 융화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 법무팀장, #7)

이러한 결과는 응시제한자의 취업 어려움이 단순히 법률지식이나 업무 역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응시제한 제도가 경력 형성과 직업 탐색을 장기간 유예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응시제한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실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고 경력 형성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구조적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응시제한자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유예된 삶(suspended life)”의 경험을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응시제한자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력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연령, 경력, 조직문화의 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응시제한자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준비와 경력 형성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 설계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JD Disadvantage의 구조

본 연구의 법률수요자 면접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JD Advantage보다 오히려 “JD Disadvantage”가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과 역량은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인 가치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부정적인 사회적 신호로 기능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취업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적 활용 경로를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 제도적·사회적 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면접 결과를 종합하면, 이러한 한국형 JD Disadvantage의 형성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변호사 자격 중심의 사회적 신호체계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가치는 대부분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성과 역량은 독립적인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 조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역량은 법률지식뿐 아니라 조직 적응력, 네트워킹 능력,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수행하던 역할 역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동일한 학부 출신자라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사내 변호사는 사실 법률 문서를 잘 작성하고 의견서 잘 쓰는 것보다 네트워킹이나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나중에는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해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을 안 보거나 불합격해 회사에 취직했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보다도 상황이 나이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로지 낙인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로스쿨 서울대를 나와서 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 또는 경영학과를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나 삼성에 취직을 했는데, 로스쿨을 안 갔더라면 더 잘 되었을텐데 로스쿨을 나와서 번시가 안 되거나 뭐 이래 가지고 가면 3년 더 공부했는데도 낙인 효과 때문에 더 마이너스야 JD 디스어드밴티지만 있는 거지요.” (대형로펌 변호사, #2)

둘째,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의 부재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기업과 조직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상당한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요즈음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서 취직할 수밖에 없을텐데, 중소기업의 오너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은 일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 때문에 그분들은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로펌 변호사, #9)

셋째,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경력 경로의 부재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크게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변호사 트랙과 일반 공개채용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독립적인 채용 경로나 경력 모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은 일반 공개채용 시장에서 학부 졸업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 준비와 경력 형성을 해온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 금융기관 법무팀장은 응시제한자들이 실제로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반 공개채용 시장에서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해온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응시제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험은 단순한 자격 취득 실패를 넘어,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응시제한자는 일반적인 취업 실패 경험과 달리, 장기간의 수험생활과 사회적 낙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낙인은 취업 시장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인식과 진로 탐색 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면접 참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사회적 편견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력 양성 체계 자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국가가 입학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 역시 사실상 변호사 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다양한 경력 경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미국식 JD Advantage보다 한국형 JD Disadvantage가 더욱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원제이고 또 국가가 엄격하게 합격률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 합격률 정원과 합격률에 따라서 합격자가 정해지지요. 사실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통제를 엄격하게 받고 또 인가도 사실 25개 대학만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 하에서는 사실 JD 어드벤처보다는 약간 디스 어드벤처 형태로 작용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달라지기가 쉽

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로펌 변호사, #5)

종합하면, 현재 한국에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중심의 사회적 신호체계, 비법률가 JD에 대한 정보 부족, 독립적인 경력 경로의 부재, 그리고 응시제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실패나 취업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조적 문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비법률가 JD에 대한 수요 가능성

(1) 비법률가 JD에 대한 잠재적 수요

흥미로운 점은 실제 채용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수요 자체는 일부 면접 참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채용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와 직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법적 사고력, 규제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전통적인 법무 업무를 넘어 기업 경영과 공공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대 기업 활동은 노동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법, 금융규제 등 다양한 법적·규제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사고와 비즈니스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력은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 실무적인 능력이 같이 요구되고, 그 외에도 그냥 평범하게 인사 재무 투자 이런 전통적인 스텝 직군에서도 사실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에 걸리면 이 모든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면서 인사 재무투자 면에서도 활동할 수 있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1)

또한 과거 로펌과 기업에서는 비법률가 연구원이나 패러리걸이 특정 분야의 법률지식을 축적하여 전문성을 형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관리, 노동법, 금

용규제 등 특정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축적한 비법률가 법률인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비록 최근에는 이러한 직군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규제 산업, 컴플라이언스, 대관업무, 공공정책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결합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옛날에 패러리걸 리서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의견서를 못 쓰지만 리서치해서 리서치 메모 쓰는 걸 했죠. 그것도 전문화되어 어떤 사람은 그냥 외국환 관리법만 그냥 5년씩 10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환 관리법에 관한 한은 다른 어떤 변호사보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어졌지요. 그 외에도 이제 법률 업무가 간접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가 있죠. 예를 들면 노무라든가 노동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대관 업무하는 데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또는 그 감독 기관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라든가 그 부처에 따라서 그런 업무영역에 어드벤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형로펌 변호사, #2)

특히 법률수요자들은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 대관 업무, ESG, 내부통제, 금융 및 산업 규제 분야를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JD Advantage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변호사 자격 자체보다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정책 및 제도 분석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점점 더 내부 통제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 비즈니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부서 안에도 직원들을 데일리로 모니터링하고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근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브랜치 지점에도 지점의 대부분은 뭔가 텔러를 하든 뒤에서 뭘 하든 상품을 파는 업무를 하는데, 뒤쪽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서류를 법에 맞춰 해야지요.” (전 금융기관 사내 변호사, #4)

금융기관의 사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금융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자체를 조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교육으로 평가하여, 일반 대학원 학위보다 높은 수준의 경력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일부 조직에서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독자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행에서는 2년짜리 일반대학원을 수료했다면 근무 경력으로 1년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호봉을 한 호봉 더 주게 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저희 은행 업무랑 관계가 깊다 라고 봐서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게 되면 호봉을 3개를 다 맞춰줍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공채로 들어오는 다른 동기들보다 아래 법전원에서 공부를 했던 그 기간만큼의 호봉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 법무팀장, #7)

또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역시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일반 공채를 통해 입사하여 법률 및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은 특히 인권, 정책, 규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가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3년 정도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때에도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변호사가 안 된 사람들이 그냥 일반 공개 채용 6급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이제 뭐 변호사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으니, 오히려 인권과 법률과 관련된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는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중소로펌 변호사, #5)

다만 이러한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자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경로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를 가시화하고 제도화하는 채용 모델과 경력 경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률수요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력이 보유한 법적 사고력, 규제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요가 아직 제도화·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법률수요자들이 높게 평가한 역량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제시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기업 활동이 점차 복잡한 법률·규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한 법률지식의 보유 여부보다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수요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강점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적 쟁점으로 구조화하는 능력, ▲리서치 및 규제 분석 능력, ▲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능

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등이었다. 이러한 역량은 전통적인 법무 업무뿐 아니라 기업의 기획, 인사, 재무, 컴플라이언스, 대관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중견기업 법무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이 소송 업무뿐 아니라 기업 내 다양한 관리직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법무 이외에도 기획, 인사·노무, 재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법적 사고력과 규범적 판단 능력이 특정 직무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적 전문성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송 외 나머지 직무나 영역에서는 전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 중 법무의 영역 뿐만 아니라 기획, 인사노무, 재무업무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중견기업 법무실장, #3)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지식 자체보다 금융산업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법률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한 금융기관 법무팀장은 은행 업무의 특성상 법률지식만으로는 실무 수행이 어렵고, 실제 영업 현장과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오히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보다 은행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직원이 법률적 조언을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규제산업 분야에서 법률 전문성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실무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실무를 잘 모르세요. 반면에 법학과 출신인 우리 직원들이 영업점 창구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일반 부서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송무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이나 로펌에 맡기면 일이 안 됩니다. 실제로 창구에서 근무를 해보고 업무를 해본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해가지고 서면을 완성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무에서의 금융에 대한 감각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변호사님들도 그걸 좀 익히려면은 솔직히 수 년 이상 걸립니다.” (금융기관 법무팀장, #7)

또한 면접 참여자들은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기업 법무 영역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소송대리나 수사기관 대응과 같이 법률상 자격이 요구되는 영역을 제외하면, 계약 관리, 규제 대응,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법률 검토 등의 업무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오히려 실무 경험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

춘 인력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였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위임장 내고 나가야 되는 부분, 즉 수사기관에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실무도 많이 알고 적당히 알면 오히려 저희 업무는 더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 법무실장, #6)

다만 이러한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를 변호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직무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는 법률 업무뿐 아니라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자신의 전문성을 특정 법률 직무에만 한정할 경우 오히려 조직 내 활용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필요한 사람은 은행 업무도 알고 법학 지식도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법전문 나와서 은행에 입사했는데 나는 법학 법률 업무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약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 법무실장, #6)

또한 일부 면접 참여자들은 과거 MBA나 공인회계사 채용 트랙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것처럼, 향후 기업 차원에서도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기존의 일반직 채용시장과 변호사 채용시장 사이에 위치한 독립적인 전문인력 범주로 인정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응시제한자들이 일반 부서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예전에 MBA나 회계사를 따로 뽑았듯이 비법률가 법전문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법무팀장, #7)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변호사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자체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 중견기업 법무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과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실제 채용에서는 서비스 정신, 성실성, 협업 능력 등 다른 직무 역량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전원 나왔으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번시에 떨어지긴 했지만 실력에 있어서는 합격한 변호사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요소들, 즉 서비스 정신이나 성실함 이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분들이라면 좀 가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견기업 법무실장, #3)

또한 기업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의 실제 수행 방식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영역별로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담당 계열사나 사업부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소송 관리나 계약 업무 역시 반드시 변호사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군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업 법무 영역에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가 현재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회사 그룹 내에는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법무팀 업무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각자가 맡은 회사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호사만 소송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견기업 법무실장, #3)

“법전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몰라서, 그리고 숫자가 소수일 것 같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자가 좀더 늘어난다면 별도 채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중견기업 법무실장, #3)

종합하면,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가장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JD Advantage 영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법적 사고력, 분석 능력, 문서작성 능력, 이해관계 조정 능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직무 영역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고, 기업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연결하는 제도적 경력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형 JD Advantage의 형성 가능성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 사회 전체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산업과 직무 영역에서는 이미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식 JD Advantage 체계가 한국에서도 일정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는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비용 효율성과 조직 충성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러 면접 참여자들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실무 역량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장기 근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장기간 조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조직 운영 측면에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전통적인 법무 업무뿐 아니라 인사·노무, 기획,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 ESG, 대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스타트업, IT·플랫폼 산업, 금융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직면한 산업 분야에서는 법률지식과 사업적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면접 참여자는 변호사의 이직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장기 재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변호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내변호사들의 이직은 다른 직군에 비해 좀 잦은 편이라 오래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로열티도 있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변호사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법무실장, #3)

공공부문 역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과 정부 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되면서, 자격증 중심의 채용 관행이 점차 약화되고 역량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은 정책 분석, 규제 대응, 이해관계 조정, 대국민 소통 및 협력과 같은 영역에서는 변호사 자격 자체보다 법적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부 면접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단순한 법률 정보 검색이나 반복적 분석 업무는 AI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지만, 사람 간의 협상, 이해관계 조정, 네트워크 형성,

정책적 판단과 같은 업무는 여전히 인간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문과 정책 분야는 향후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AI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는 살아남기 힘들고, 결국 사람을 대하고 경험을 쌓고 네트워킹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퍼블릭 쪽이 비법률가 JD에게 취업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정부 고위공무원, #12)

종합하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전체가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송 비중이 낮고, 조직 지원과 규제 대응 기능이 중요한 업무,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조직, 그리고 과거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경험을 보유한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JD Advantage와 유사한 직역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 채용에만 의존하기보다, 법전문협회의회를 중심으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과 역량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응시제한자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민간 부문의 JD Advantage 직역 확대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는 현재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이미 민간 부문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업 법무, 금융,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 대관 업무, ESG, 정책기획 등에서는 법률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는 실제 채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자체의 부족이라기보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경력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변호사 채용과 일반직 공개채용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독립적인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채용모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기업은 이러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졸업생 역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금융기관 법무팀장은 과거 기업들이 MBA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경로를 운영하였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활용 필요성이 공유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채용모델 역시 충분히 제도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기업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JD Advantage 직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직무명, 요구 역량, 채용 사례 및 경력 발전 모델을 정리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수요자에게도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채용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즉,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활용이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공공 부문 활용 확대와 법전원협의회의 역할

면접 결과는 공공부문 역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입법 지원, 법제 검토, 규제 분석, 정책 리서치,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업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형성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26년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채용공고는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일정한 관련 경력 또는 법학 학위와 실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전문성을 반드시 변호사 자격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실무경험을 하나의 전문성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모델은 향후 다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면접 참여자들은 현재 응시제한자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법전원협의회가 일정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는 개별 로스쿨에서 그 프로그램 만들기는 참 쉽지 않고 법전원협의회 혹은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격률을 통제하고 입학 정원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그런 대안도 안 마련해 놓고 오탈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의 협조 내지 지원을 받아서 취업 안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로스쿨 협의회 차원에서 좀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로펌 변호사, #5)

이와 관련하여 면접 참여자들은 법전원협의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취업 안내 프로그램, 경력 설계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응시제한자들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 실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업 안내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순히 그냥 너네가 공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개인한테 책임 묻는 것은 지금 구조에서는 굉장히 가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로펌 변호사, #5)

또한 응시제한자들이 장기간의 수험생활과 반복된 실패 경험을 통해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취업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진로 상담, 멘토링 등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자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본인의 처한 상황이나 고려하면 본인 스스로가 패배자가 되고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된 것처럼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심리치료 같은 것도 좀 법무부에서 여력이 된다면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분들이 문과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그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같은 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그분들을 채용은 못하더라도 채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중소로펌 변호사, #5)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의 문제를 단순히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응시제한자의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경력 경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전문협의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관계 부처,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로스쿨 교육의 방향전환 및 진로지원 개편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과 학생지원 체계가 사실상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입학 초기부터 자신의 진로를 변호사라는 하나의 경로로만 인식하게 되고, 다른 직업적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원의 교육 과정이 그냥 그냥 JD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뭐 하는 과정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변호사 시험을 합격자 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사실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다 그냥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여유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JD 마치고 나는 변호사 안 하고 다른 직역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법학 전문 석사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소로펌 변호사, #5)

실제로 면접 참여자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JD 학위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석사(JD)의 사회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방향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즘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부활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로스쿨이 그냥 변시를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라 로스쿨을 나오게 되면 법학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금융기관 법무팀장, #7)

또한 면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불합격이 곧 개인의 실패로 인식되는 현재의 교육문화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한 면접 참여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양성기관 이전에 법적 사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이러한 인식이 학생과 사회 모두에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진로지원 체계 역시 변호사시험 준비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경력 경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법률가 JD를 위한 별도의 career track을 구축하고,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업 법무, 금융,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 국제기구, 스타트업 등 다양한 JD Advantage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련 인턴십과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도 법률지식 중심의 교육을 넘어 비즈니스와 정책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능력, 조직관리 및 리더십, AI 시대에 요구되는 공감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 법학교육의 전이가능한 역량(transferable skills)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법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에서는 학생들의 인식 전환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학전문대학원이 먼저 다양한 진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로스쿨생들의 오리엔테이션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로스쿨 들어온 사람들이면 무조건 100% 나는 변시를 해야 되고 변시를 안 하면 낙인 효과가 생기고 그럼 내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특히 저는 이제 서울대가 그 어떤 사명이 크다고 봐요. 말하자면 그런 걸 선도했을 때 사회에서 approve를 해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법전원을 나와서 자기는 변시를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길을 갔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제 이게 자신이 없거나 변시가 안 돼서 갔다고 그런 낙인 효과가 좀 덜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그 루트가 개척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거든.” (대형로펌 변호사, #2)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도 학생들이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 정책 분야 등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금융, 정책, 공공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꼭 변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면 법전원 다니면서 행정고시 하면 돼요,

외무고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짜주면 돼요. 협의회 같은 데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전문대학원에서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위한 스타트업 회사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대형로펌 변호사, #2)

특히 주목할 만한 제안은 동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해당 분야의 진출을 지원하고, 일정 부분 ‘품질 보증’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과 재학생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경력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대는 선배들이 적극 인게이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선배들이 개런티를 해주는 거야. 나와서 경제부처에서 오든지 외교부나 뭐 이런 데서 오든지 간에 너희들 번시 그런 거 하지 말고 외시 해서 들어오면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어떤 품질 보증을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컴포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는 일이야. 그 사람들에게도 프로보노 봉사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 자기 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고, 실제로 그 기관의 capacity building이거든.” (대형로펌 변호사, #2)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체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졸업생이 동일한 변호사 경로에 집중되어 있어 동문 네트워크 역시 단조롭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한 졸업생이 늘어나면 산업,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는 동문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

“요즘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전문 동기회가 없어요. 동기회가 없으니까 전체 동창회도 안 나와요. 그거 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력이 너무나 단색화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에 나갈 인센티브 중의 하나가요. 예를 들면 포텐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자기 일하는 데 어떤 카운터 파트가 되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해. 비유하자면 처녀가 있어야 총각이 나와, 총각이 있어야 처녀가 나오고. 그런데 총각만 모아놓으면 그거 뭐 노총각들만 모아놓으면 거기 갈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단색이 돼서 그래요. 네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이제 총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선배를 만나서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은 단색이면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지.” (대형로펌 변호사, #2)

본 연구는 법학교육의 성과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적 사고력과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응시제한자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개인의 실패가 아닌 법학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구조적 과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진로지원 체계의 개편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력 경로를 확대하는 것은 응시제한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법학교육의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고 JD 학위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률수요자와의 면접은 법학교육의 미래는 더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소결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는 비법률가 JD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JD Advantage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한다.

법률수요자와의 면접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요와 인력을 연결하는 제도적·사회적 경로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응시제한자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취업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고급 전문인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의 방향은 응시제한자를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 경로와 제도적 연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에 대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실증연구로서, 응시제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응시제한 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응시제한 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의 합헌성, 변호사 수급 정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작 응시제한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가 이들의 삶과 경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도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법률수요자 면접을 결합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approach)을 통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발견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도적 현주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응시 제한은 역량의 부족이 아닌 경제적·환경적 불평등의 결과이다. 응시제한자 집단은 학업 성취도나 입학 당시 역량 측면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적 배경, 가족의 지원 가능성, 경력 형성 기회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합격자 집단과 응시제한자 집단 간의 학부 학점(0.09점 차이) 및 LEET 점수(약 5점 차이) 등 정량적 역량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 반면 재학 중 가구 소득 차이, 학비 대출 잔액, 시험 직전 생계형 근로 비율(응시제한자 29.1% vs 합격자 5.1%) 등 경제제적 기반의 격차가 응시 제한을 결정짓는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특별전형 등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수험 과정에서는 이들을 경제적 압박과 학업 고립으로 몰아넣어 탈락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둘째, 응시제한자 심층면접 결과는 응시제한 제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단순히 응시기회의 제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기회의 제한 방식이 응시제한자로 하여금 다른 경력과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5년 이내 5회’라는 일률적인 기한·횟수 병행 제한은 임신·출산, 중증 질병, 가족 돌봄, 생계형 근로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생애 주기적 사건들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합격자들은 다른 진로를 탐색하거나 경력을 쌓을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채 5년간 수험에만 매몰되는 ‘유예된 삶’을 강요받고 있으며, 제도 도과 후에는 심각한 경력 공백과 부채, 사회적 낙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시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배제와 경력 단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법률수요자 면접 결과는 우리 사회에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업 법무, 컴플라이언스, 규제 대응, 공공정책, 입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은 인력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법적 사고력, 규제 대응 능력, 분석 및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제도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으며,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수 있는 경력 경로 또한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수요의 부재(demand shortage)가 아니라, 수요와 인력을 연결하는 제도적·사회적 경로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매칭 실패(matching failure)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JD Advantage와는 다른 형태의 “JD Disadvantage”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법학전문석사 학위 자체는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인 가치와 신호효과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부정적 신호로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법학교육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손실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인적자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응시제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지 응시제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법학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를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응시제한 제도 자체의 완화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응시기회 제한 자체

보다 응시기간 제한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응시기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재교육을 전제로 한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법률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력 경로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의 성과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 경로와 제도적 연결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JD Advantage 직군을 발굴·체계화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정책 방향이 상호 대체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목표라는 점이다. 응시제한 제도의 완화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적 활용 확대는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응시제한자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법률수요자 조사를 결합하여 응시제한자의 경험과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응시제한자 문제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고급 전문인력을 사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응시제한자의 경험은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어떠한 전문성을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전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응시제한자 문제는 법조인력 양성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법학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의 활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응시제한자와 법률수요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장기 추적조사와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응시제한자의 경력 형성과 사회적 이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보고서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법원행정처, 2005.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선발제도의 비교연구」, 2011.

2. 논문

김은경,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2호, 2018.

김창록,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법과사회』 제24호, 2003.

박종현,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법과사회』 제61호, 2019.

양만식, “일본에서의 법조양성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법조양성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2015.

이노우에 마세히토, “‘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이안진, “서울 4년제 대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 경험과 계층 불평등”, 『교육사회학연구』 제35권 제2호, 2025.

정형근,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2019.

정형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2019.

Kinsler, Jeffrey S., “Is Bar Exam Failure a Harbinger of Professional Discipline?”, 『St. John’s Law Review』, Vol. 91, No. 4.

Yakowitz, Jane, “Marooned: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aw School Graduates Who Fail the Bar Exam”,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60, No. 1, 2010.

3.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

국종환, “日,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폐지”, 뉴스1, 2014. 5. 28.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1697324>〉

박도하, “여성변회 ‘변호사시험 응시유예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법조신문, 2023. 8. 30.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6>〉

법률저널, “‘변시법 공청회’ 다양한 의견 수렴?”, 2008. 6. 20.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3>〉

법률저널, “변호사시험법, 왜 부결됐을까?”, 2009. 2. 13.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1>〉

신하영, “로스쿨 출신·5년내 3회 제한은 위헌”, 한국대학신문, 2008. 5. 3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63>〉

연합뉴스,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없애야’”, 2008. 11. 3.,

〈<https://www.yna.co.kr/view/AKR20081103100600004>〉

오경진, “다섯 번 떨어지면 끝… 로스쿨 나와 ‘오탈자’ 낙인만 남았네요”, 서울신문, 2019. 7. 10.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0020001>〉

이성진, “새변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 법률저널, 2023. 9. 7.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100>〉

이장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사유에 ‘임신·출산 등’ 추가하라”, 법률신문, 2018. 7. 1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68>〉

황온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2008. 6. 2.

〈<https://www.segye.com/newsView/20080602002670>〉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NCBE Comprehensive Guide to Bar Admission Requirements (online)」

〈<https://reports.ncbex.org>〉

American Bar Association, 「2025 ABA Profile of the Legal Profession」

〈<https://www.americanbar.org/news/profile-legal-profession>〉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 학위자의
사회진출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